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Ⅱ 유관기관(금융기관)



중소·벤처, 소상공인의
수호천사, 세일즈맨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1부 중소기업진흥공단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2
1-1-①. 창업기업지원자금	9
1-1-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2
1-1-③. 신성장기반자금	15
1-1-④. 재도약지원자금	18
1-1-⑤. 긴급경영안정자금	23
1-1-⑥.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6
1-2.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29
1-3.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31
1-4. 수출성공패키지	34
1-5.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37
1-6. 아시아 하이웨이 사업	40
1-7. GMD(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사업	43
1-8.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44
1-9. 후속마케팅지원사업	46
1-10. 중기제품간접광고지원	48
1-11. 글로벌협력지원	50
1-12. 연수사업	52
1-13. 기술사관 육성사업	55
1-14.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58
1-15.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62
1-16.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65
1-17.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68
1-18. 창업성공패키지	70
1-19.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73
1-20.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77
1-21.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80
1-22.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84
참고 청년내일채움공제	87

제2부 신용보증기금

2-1 신용보증	89
2-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93
2-3 보증연계투자	95
2-4 투자유선부 보증	97



2-5	유동화회사보증	99
2-6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103
2-7	매출채권보험	106
2-8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Start-up NEST)	111
2-9	잡매칭(Job Matching)	114
2-10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115
2-11	컨설팅	119

제3부 기술보증기금

3-1	2018년 보증지원계획(총괄)	122
3-2	기술보증	123
3-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126
3-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129
3-5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제도	132
3-6	신성장산업 지원 제도	135
3-7	R&D 보증	138
3-8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141
3-9	지식재산(IP) 보증	144
3-10	기후기술보증	147
3-11	문화산업완성보증	150
3-12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154
3-13	기술평가	158
3-14	벤처확인평가	161
3-15	이노비즈 인증평가	164
3-16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166
3-17	보증연계투자	169
3-18	투자옵션부보증	171
3-19	재창업재기지원보증제도	174

제4부 기업은행

4-1.	2017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178
4-2.	IP보유기업 보증부대출	180
4-3.	IP사업화자금대출	181
4-4.	IBK차세대강소기업대출	183
4-5.	기술평가기반 무보증 신용대출	185
4-6.	IBK강소기업대출	186
4-7.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187

4-8. IBK문화콘텐츠대출	188
4-9.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190
4-10. IBK시설투자대출	191
4-11. IBK토지분양협약대출	193

제5부 한국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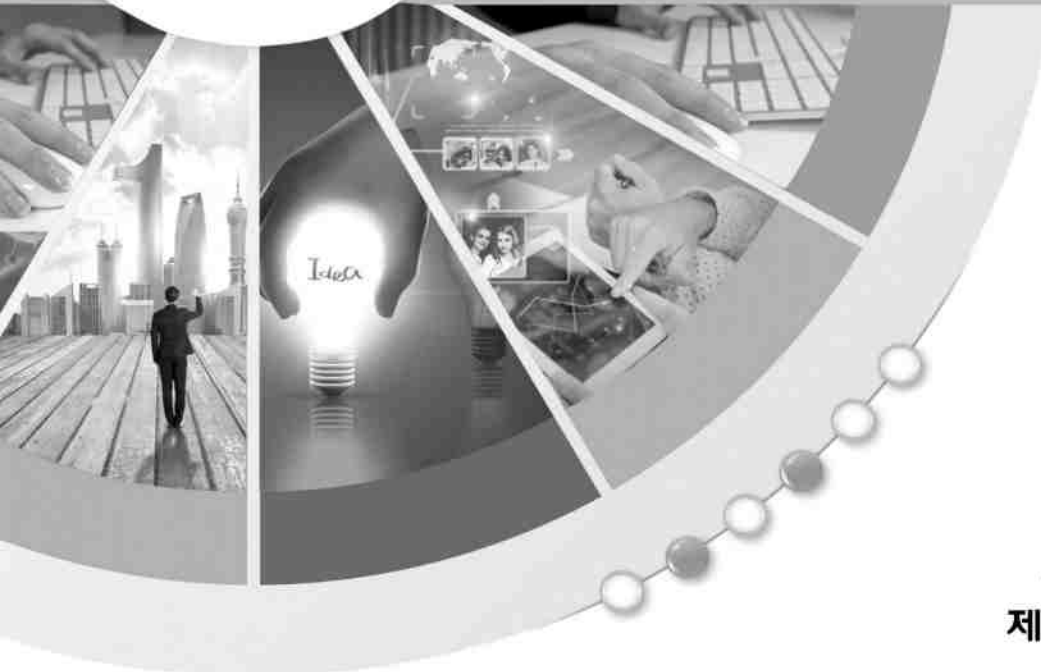
5-1.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지원	195
5-2. 온렌딩대출	219

제6부 한국수출입은행

6-1. 2018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222
6-2.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223
6-3.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225
6-4. 기술금융 프로그램	227
6-5.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229
6-6.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231
6-7.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233
6-8.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235
6-9.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237
6-10.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240
6-11.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242
6-12. 해외사업금융	244
6-13. 수입금융(수입자금)	247
6-14. 이행성보증	249
6-15. 무역금융(수출관련)	251
6-16. 해외온렌딩	253

제7부 한국무역보험공사

7-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258
7-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260
7-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262
7-4 단기수출보험	263
7-5 중소중견Plus+보험	267
7-6 환변동보험	268
7-7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271
7-8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273



제 1 부

중소기업진흥공단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2
1-1-①. 창업기업지원자금	9
1-1-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2
1-1-③. 신성장기반자금	15
1-1-④. 재도약지원자금	18
1-1-⑤. 긴급경영안정자금	23
1-1-⑥.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6
1-2.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29
1-3.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31
1-4. 수출성공패키지	34
1-5.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37
1-6. 아시아 하이웨이 사업	40
1-7. GMD(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사업	43
1-8.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44
1-9. 후속마케팅지원사업	46

1-10. 중기제품간접광고지원	48
1-11. 글로벌협력지원	50
1-12. 연수사업	52
1-13. 기술사관 육성사업	55
1-14.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58
1-15.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62
1-16.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65
1-17.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68
1-18. 창업성공패키지	70
1-19.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73
1-20.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77
1-21.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80
1-22.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84
참고 청년내일채움공제	87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I 자금지원 공통사항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용자대상 및 절차, 용자제한 기업, 용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 3조 8,050억원

- * 창업기업지원자금(1조 8,66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1,8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4,9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9,4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2,29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다음의 전략산업 영역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 전략산업 : 미래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전략·연구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 용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용자 범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용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용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용자 한도

- 개별기업당 용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용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 금리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신성장유망(인재육성형)자금 대출월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에 추가 가입시 가입 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요건 유지 확인)
-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각 0.2%p(수출성공), 0.4%p(수출향상) 금리 우대
-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
-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금리우대(고용, 수출 및 내일채움공제 합산)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최대 5천만원, 2%p 이내
-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 및 대출 후 1년 이내 전액 조기상환 기업은 적용 제외

용자 방식

중진공에서 용자신청·접수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용자 절차

용자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용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 (자가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사전상담)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고용창출, 수출 및 시설투자 기업 등은 우선 지원)

-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용자신청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표준진단, 종합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용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용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용자약정 체결 후 대출

-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연대보증 입보 면제, 단, 업력 7년 이상인 기업 중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입보 면제 가능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 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용자제한기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용자대상에 포함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③ 정책자금 브로커 부당 개입 등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용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 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 제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700억원 초과 기업
-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 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단, 제조업 또는 전략산업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⑨ 융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제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제도약지원자금(사업 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금융,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은 신청가능)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글로벌진출지원), 신성장기반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제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⑫ 다음에 해당하는 대출금 조기상환 기업

- 당해년도 대출자금을 당해연도에 전액 상환한 기업(단,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신청가능)
- 대출만기가 1년이상 남은 대출 건의 대출잔액 전부를 일시 상환하고, 상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시설자금 조기상환 중 지원시설 매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 2018.1 ~ 자금 소진시까지(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일 조정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융자잔액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중소기업창업및진흥자금 :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자금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대위변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대지급 :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확의 :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것

기업회생신청 :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청산절차 :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융자제한 부채비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서 최근년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기중 평균한 2~3배의 값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직접대출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정법) 등임

수출향상기업 :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한 기업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 무역보험공사가 선정한 기업

1-1-①

창업기업지원자금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 규모

1조 8,660억원

- * 2016년 신청기업 13,799개사 중 10,668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6억원
- * 2017년 10월말 신청기업 14,944개사 중 11,01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6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일반창업기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용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용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지방소재기업 50억원) 이내, 매출액의 150%이내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 전용창업자금 제외)
-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용자 방식

○ 일반창업기업지원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용자상환금 조정형)
- * 용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용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신청·접수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청년창업창업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접수 시기

2018.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Ⅰ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

지원 규모 1,800억원

○ 이익공유형 대출

* 2016년 신청기업 765개사 중 679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7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

* 2016년 신청기업 55개사 중 4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8.3억원

지원 대상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 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용자 조건

○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금리 :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로 구성.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성과배분 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 * 고정이자 : 0.5%, 성과이자 : 3개년 영업이익 합계액의 4%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 대출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
-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 대출기간 내에 기업의 상장(IPO)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주식전환 여부를 중진공이 결정
-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의 운전자금 한도는 연간 20억원 이내

용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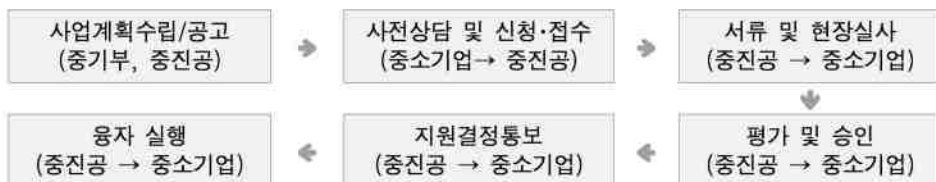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전상담 필수)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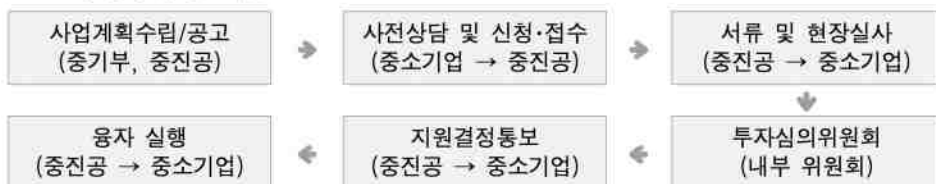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 신청(동시 업로드)

처리 절차

○ 이익공유형 대출



○ 성장공유형 대출



문 의 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Q 성장공유형 대출의 표면금리와 만기보장금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표면금리는 대출기간 중 이자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금리이며, 만기보장금리는 중진공이 “주식으로 전환을 하지 아니하고 원금을 상환받을 경우” 추가로 받게되는 이자(상환 할증금, 기 수령한 표면금리는 차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용어설명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1-1-③

신성장기반자금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지원 규모 9,400억원

- * 2016년 신청기업 5,174개사 중 4,41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3.2억원
- * 2017년 10월말 신청기업 2,365개사 중 2,082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5.0억원

지원 대상 신성장유망자금,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으로 구분 지원

- (신성장유망)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중진공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정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 선정 기업, ② 스마트공장 구축 추진, 제조업 4.0 추진 기업, ③ IT 연계 공정개선, 자동화 기반 생산성 향상 추진 기업 등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스마트공장, 공정혁신 및 자동화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 중소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용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 단,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45억원(지방소재기업 50억원) 이내, 매출액의 150%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 산업경쟁력강화자금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연간 10억원 이내
 -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산업경쟁력강화 자금은 제외)

용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의 시설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방식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시운전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 및 신용)방식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신청·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2018.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④

재도약지원자금

| 사업전환·무역조정,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 규모 2,290억원

* 사업전환자금 1,000억원, 재창업자금 1,000억원, 구조개선자금 290억원

지원 대상 사업전환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으로 구분 지원

(사업전환자금)

-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현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 또는 업종 추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이상이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창업자금)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 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 가능
- * 융자제한기업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체납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①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실패 기업의 영업실적 보유 요건 예외)하거나 과거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의 경우,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 이하 기업이 신청대상임
- 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 성실경영 평가: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상기 5가지 요건 충족 및 다음 5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 ①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 ②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기업)
-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 ④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 ⑤ 미래신성장분야 영위 기업

(구조개선전용자금)

○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 융자제한기업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체납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 기업
 -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인가 기업
(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 ⑥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용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1%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단, 재창업자금은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단, 재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지방소재 5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매출액 150% 이내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70억원 이내
 -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기업당 10억원 이내(기업회생인가기업의 회생채무 상환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용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 재창업자금은 용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직접대출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수시 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 제도약자지원자금(재창업자금, 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 사업계획 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대출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는 사전 상담 필수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055-751-9622, 963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⑤

긴급경영안정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 규모

- 1,000억원
 - * 2016년 신청기업 2,675개사 중 2,599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5억원
 - * 2017년 10월말 신청기업 2,314개사 중 1,959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5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

용자 범위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 피해 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 피해, 불공정 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한·중 FTA 피해,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등 또는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 (비교시점)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 동반기, 직전 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용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1.05%p 가산
 - * 단, AI 피해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용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단, 재해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접수 시기

2018.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⑥

신시장진출지원자금

I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및 수출 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산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 규모

4,900억원

- 2016년 신청기업 2,003개사 중 1,745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0억원 (개발기술사업화)
- 2017년 10월말 신청기업 2,843개사 중 2,637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1억원

지원 대상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글로벌진출지원자금으로 구분 지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 최근 3년 이내 신시장진출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 (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용자 범위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시설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 (수출금융지원)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 운전자금
- (수출사업화) 해외마케팅 등 해외 인증획득, 판로개척, 수출품 개발 등 수출사업화에 소요 되는 운전자금

용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 단, 글로벌진출지원(수출금융지원) 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중 수출금융 : 1년 이내(일시상환)
- * 수출계약기준의 경우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한 어음 매입 시 정산

○ 대출한도 : 기업 당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운전자금,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중 수출사업화자금은 5억원 이내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 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 직매입 계약을 체결한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및 GMD 매칭 중소기업, 차이나이웨이브 선정 중소기업, 수출향상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유망소비재산업 관련 제품 수출기업,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천만불 이상인 수출선도기업은 40억원 이내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수출금융 용자 한도
 - * (수출계약기준)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 (수출실적기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용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2018.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2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해외전시회(25회), 무역사절단(134회), 수출상담회(4회), 지역특화사업(15회) 등
- * '17년 기준이며, 지자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가능

지원 대상

각 지자체 관내 소재 수출중소기업 및 수출희망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 폐업 중인 기업 등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해외전시회	• 세계 유명 전시회 참가 및 단독 전시회 개최 지원 • 전시회 참가비용 및 편도 항공료 등 지원
무역사절단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 구성 및 파견 •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지원
수출상담회	• 해외바이어 방한을 유치하여 국내 업체와 수출상담 기회 제공 •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수출상담회 참가비용 무료)
지역특화해외마케팅	• 지역의 산업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토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각 사업에 따라 추진비용 일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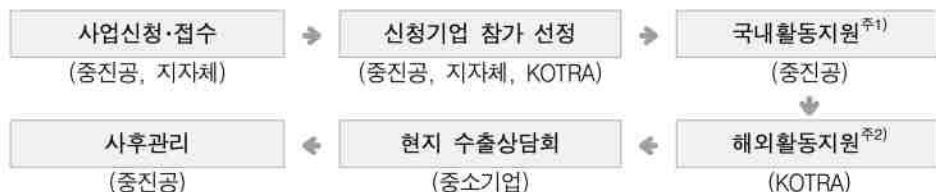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사업별 신청서 및 기타 수출 관련 증빙자료

처리 절차



주1) 카탈로그 수집·송부, 항공예약, 출장자확정, 사전간담회, 인솔출장 등

주2) 바이어 발굴, 상담장 임차, 통역원 배정 등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처 : 055-751-9714, 9753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사업 신청 및 일정 관련)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s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해외전시회 및 무역사절단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해외전시회의 경우, 부스임차료, 통역비, 편도 운송비, 편도 항공료(1인) 등이 지원되며, 무역사절단은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해외바이어 발굴비, 통역비, 편도 항공료(1인) 등이 지원됩니다.

용어설명

사후관리 해외마케팅지원사업(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한 중소기업 직접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진공이 수행하는 타사업(정책자금, 컨설팅, 연수 등)으로 연계함으로써 해외마케팅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1-3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 임차료의 80% (2차년도는 50%) 지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조기 정착 및 수출 경쟁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교역 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합니다.

지원 규모

세계 14개국 22개 지역 302개 입주실 및 수출사랑방 운영

지원 대상

제조업(전업률 30%),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실질적 기업주 포함)

지원 내용

-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 수출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신청·접수

연중 수시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hp.sbc.or.kr>)상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우편 접수

* 제출처 : (우)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수출인큐베이터 담당자 앞

심사·평가 주요내용

- 경영평가, 제품시장성, 현지 인프라, 지원효과, 고용영향 평가* 등
 - * 고용영향 평가지표(20점) 반영 : 성과공유 10점, 일자리 창출 10점
- (우대사항) 첫걸음 도입¹,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업(우선 선정)
 - * 대상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에 수출지원 이력이 없는 기업

신청·접수

-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파견자 재직증명서, 파견자 이력서, 파견자 고용보험가입내역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 055-751-9673, 9682, 9678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 : <http://hp.sbc.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이 아니라도 수출사랑방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수출사랑방은 중소기업인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임시 사무공간, 상담실, PC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Q 입주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A 입주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입주활동실적에 따라 1년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1년 입주 후 입주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연장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활동의 적극성, 입주 후 수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주연장승인여부를 검토합니다.

용어설명

수출사랑방 중소기업자가 수출상담이나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지역 내에 단기간 출장하는 경우, 세계 14개국 22개소 수출인큐베이터 내 공동 사무공간을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

1-4

수출성공패키지

| 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에 따라 수출기업화, 수출고도화로 구분하여 수출 전 과정에 이르는 준비·마케팅 활동을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000여개사(전체 예산 499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단계에 3회 이상 참여한 기업
- ✓ 신청 마감일 현재 수출바우처 활용사업(아시아하이웨이,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등)에 참여중인 기업
- ✓ 수출성공패키지 참여제한 업체 등

지원 내용

- 수출준비활동,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온라인마케팅 등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있는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하며, 서비스 비용의 최대 70% 지원 (VAT 별도,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구 분	정부 지원금	지 원 비 율
수출기업화	최대 2,000만원	· 매출액 100억원 미만 : 70%
수출고도화	최대 3,000만원	· 매출액 100~300억원 미만 : 60%
		· 매출액 300억원 이상 : 50%

○ 수출바우처 메뉴

지원영역	지 원 항 목
수출준비 인프라	수출브랜드개발, 디자인개발(카달로그, 제품 및 포장디자인, 모바일 웹·앱, 홈페이지, 외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등), 제품매뉴얼 제작, 상품페이지 제작, 외국어자료 통번역, 정품인증,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용인증서비스 등
전략 컨설팅	경영멘토링, 목표시장 수출전략(로드맵) 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투자 유치 컨설팅,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해외진출전략컨설팅,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관세환급 컨설팅, 해외투자유치 관련 세무·회계 관련 컨설팅, 영문제안서 분석 컨설팅 등
수출역량강화 교육	무역교육(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비즈니스회화 등), 해외마케팅역량강화 교육,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교육 등
홍보/광고/마케팅	TV·신문·잡지·PPL 홍보, 홍보동영상 제작, SNS·검색엔진마케팅, 홈쇼핑 /온·오프라인 쇼핑몰 마케팅 (입점대행, 판촉전, 해외독립몰 구축) 등
조사·정보	해외시장조사, 소비자리서치, 바이어발굴조사, 바이어DB 타깃 마케팅, 경쟁 제품 동향 조사, 국외기업(바이어) 신용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해외 시장산업설명회 등
전시(상담)회, 바이어매칭	해외전시회 참가(개별),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매칭 상담회/ 세미나/제품시연회, 외국바이어 국내초청 연결/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마케팅, 세일즈랩,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등
수출관련서류 대행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필요 서류, 결제관련 서류, 수출물류, 무역자동화(전자무역서비스), 사후관리(관세환급신청서 등) 대행, FTA 원산지 관련 서류 등
해외진출지원	해외투자진출자문, 해외투자환경조사 출장지원, 현지법인 설립, 지식재산권 등록, 현지 시험·인허가, 해외현지 클레임 및 지재권 분쟁지원,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신청·접수

'18.1월(수출바우처 활용사업과 통합 공고)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현장평가(글로벌 역량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글로벌 역량평가 : 수출기반, 수출기획, 수출실행, 지속성장, 공통역량 등 5개 분야로, 업종에 상관 없이 33개 지표로 구성 (www.exportvoucher.com에서 확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 운영지침 게시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수출마케팅 활동

문 의 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홈페이지 문의 : 코트라 02-3460-3426~8
- 사업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지원처 : 055-751-9722, 9726, 9497



Q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를 받았던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나요?

A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1-5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I 고성장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고용 또는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580개 업체내외(예산 290억원)

* '17년 지원현황 : 738개업체(예산 335억원)

지원 대상

-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으로서, 최근 4개년간('14~'17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 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중소기업(단, 지방소재 기업은 연평균 15%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18년 현재 수출바우처사업(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 등)에 참여중인 기업
- ✓ 과거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지원 내용

- 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수출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70%~50% 차등지원(최대 1억원)
- * 기업 매출액에 따른 지원 비율 : (100억 미만) 70%, (100억~300억 미만) 60%, (300억 이상) 50%

분 야		지 원 내 용 (예시)
수출준비	수출 준비	경영멘토링, 수출브랜드개발, 영문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카다로그, 상품페이지 제작, 시제품/샘플(발송)/앱/사은품 제작, 외국어자료 통번역, 지재산 등록, 해외규격인증획득, 정품인증
	현지화 컨설팅	인증·시험 컨설팅, 디자인·매뉴얼제작 등 현지화 컨설팅 지원
거래선 발굴	홍보·광고/ 온라인 마케팅	TV·신문·잡지·SNS 홍보, 기업홍보 동영상, 광고제작, 홈쇼핑, 오프라인매장 입점대행, 온라인쇼핑몰 구축운영, 검색엔진, PPL
	조사 ·컨설팅	시장동향조사, 소비자리서치, 바이어발굴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해외 진출전략컨설팅, 바이어 신용조사
	전시회, 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개별), 현지 바이어매칭 상담회, 바이어초청설명회/제품시연, 체험단이벤트, 런칭행사, 세미나
계약체결	계약 체결전	보험료/보증료 할인, 단체보험, 환변동보험, 공익관세사, 계약서 작성 (지불조건 포함) 지원
	계약 체결후	통관/선적필요서류, 결제관련서류, 수출물류, 사후관리필요서류(관세 환급신청서 등), 사후관리(민간네트워크, 등)
해외진출	해외 진출	현지법인 설립, 지재산 등록, 현지 시험·인허가 등

신청·접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확인 및 수출역량평가) 서류심사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 고성장기업 요건 서류심사, 수출역량 현장평가, 해외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발표평가의 3단계 평가
- (최종선정) 현장평가(50%) 및 발표평가(5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 선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72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8년 지원시책」 참조



Q 동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내용을 어떻게 활용가능한가요?

A 동 사업 선정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전략컨설팅,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외국어자료 통번역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서비스를 수행기관을 통해 활용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여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내용 내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Q 우리 기업이 고성장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공고 내 첨부된 고성장기업 판정산식 엑셀파일에 우리 기업의 매출액, 종업원 수 등 현황을 입력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1-6

아시아 하이웨이 사업

중국 및 아세안지역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이 중국 및 아세안지역에 성공적으로 시장개척을 할 수 있도록 수출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300개 업체내외(예산 150억원)

* '17년 지원현황 : 269개업체(예산 150억원)

지원 대상

- 중국 또는 아세안지역에 既 수출중이거나 신규 시장개척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18년 현재 수출바우처사업(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 등)에 참여중인 기업
- ✓ 아시아 하이웨이 사업(前차이나 하이웨이 사업)을 2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지원 내용

- 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수출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70%~50% 차등지원(최대 1억원)

* 기업 매출액에 따른 지원 비율 : (100억 미만) 70%, (100억~300억 미만) 60%, (300억 이상) 50%

분 야		지 원 내 용 (예시)
수출준비	수출 준비	경영멘토링, 수출브랜드개발, 영문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카다로그, 상품페이지 제작, 시제품/샘플(발송)/앱/사은품 제작, 외국어자료 통번역, 지재산 등록, 해외규격인증획득, 정품인증
	현지화 컨설팅	인증·시험 컨설팅, 디자인·매뉴얼제작 등 현지화 컨설팅 지원
거래선 발굴	홍보·광고 /온라인 마케팅	TV·신문·잡지·SNS 홍보, 기업홍보 동영상, 광고제작, 홈쇼핑, 오프라인 매장 입점대행, 온라인쇼핑몰 구축운영, 검색엔진, PPL
	조사 ·컨설팅	시장동향조사, 소비자리서치, 바이어발굴조사, 바이어DB 타깃 마케팅, 해외진출전략컨설팅, 바이어 신용조사
	전시회, 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개별), 현지 바이어매칭 상담회, 바이어초청설명회/제품시연, 체험단이벤트, 런칭행사, 세미나
계약체결	계약 체결전	보험료/보증료 할인, 단체보험, 환변동보험, 공익관세사,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지원
	계약 체결후	통관/선적필요서류, 결제관련서류, 수출물류, 사후관리필요서류 (관세환급신청서 등), 사후관리(민간네트워크, 등)
해외진출	해외진출	현지법인 설립, 지재산 등록, 현지 시험·인허가 등

신청·접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확인 및 수출역량평가) 서류심사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 요건 서류심사, 수출역량 현장평가, 해외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발표평가의 3단계 평가
- (최종선정) 현장평가(50%) 및 발표평가(5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 선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수출마케팅 활동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71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8년 지원시책」 참조



Q 아시아하이웨이 사업에서 중국, ASEAN 10개국 외 다른 아시아 지역 진출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아시아하이웨이는 중국 및 ASEAN 10개국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국가 진출지원은 불가합니다.

Q 수출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진행할 때,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외에 참여기업에서 원하는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해외전시회와 해외규격인증을 제외하고는 개별진행이 불가하며, 반드시 지정된 수행기관 중에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용어설명

아세안지역 :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1-7

GMD(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사업

| 민간 수출전문기업(GMD)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수출 전문기업(GMD)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수출 성공률을 제고하는 사업

지원 규모

중소기업 최대 200개사(예산 34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세금(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 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 휴·폐업중인 경우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원 내용

제품 수출을 위한 라벨·스펙 변경, 카타로그·샘플 제작, 허가·인증, 홍보·프로모션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활동 제공

신청·접수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처리 절차

①사업공고

중기부

②신청접수

중소기업

③기업선정
및 매칭활동

중진공 GMD

④사업수행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중진공

⑤사후관리
(성과조사)

중소기업, 중진공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처 : 055-751-9725, 9717, 9494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8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기반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마케팅비용 및 노하우 부족으로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제품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부터 홍보마케팅, 해외 구매오퍼 발굴까지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도와 드립니다.

지원 규모

1,400여개사 내외

- * '17년 지원현황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100개사, 검색엔진마케팅 80개사, 글로벌 홍보마케팅 및 온라인수출관 1,000개사

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가능성이 높거나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받은 기업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채무불이행자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실질적인 기업주 포함)

지원 내용

구 분 (지원비율)	내 용
글로벌 홍보마케팅	• 영문 e-상품페이지 제작 및 바이어 타겟마케팅 등 제품 해외홍보 지원, •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대응, 무역상담 등 후속관리 지원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택일)
검색엔진마케팅	• 지원기업의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글, 야후 등 해외유명 포털사이트에 검색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사이트 최적화 및 홍보 지원
온라인수출관 (8개권역)	• 운영권역 :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아랍어, 프랑스어, 페르시아어 • 현지어 기반의 상품페이지, 거래제의서 제작 등 해외 구매오퍼 발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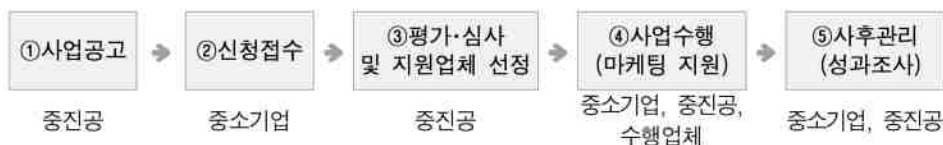
신청·접수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접수

사업 참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출관련 활동 증빙서류 등

* 사업 참여계획서 양식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신청 게시판 참조

처리 절차**문의처**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고객지원센터 : 1588-6234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 kr.gobizkorea.com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별도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A 기업부담금은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40만원, 검색엔진마케팅 100만원이며, 글로벌 홍보마케팅 지원, 온라인수출관 지원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용어설명

검색엔진마케팅 : 중소기업의 외국어 홈페이지가 해외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Google, Yahoo 등 글로벌포털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일정기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업체별 사이트 분석, 키워드 선정 등 검색엔진 최적화(SEO)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

1-9

후속마케팅지원사업

I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바이어 알선 및 수출지원

중진공 해외수출마케팅 참여기업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최적의 해외바이어를 발굴·알선하고 방한바이어 지원 등 사후관리로 중소기업의 수출 성사율을 제고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800건 내외

* '17년 지원현황 : 해외바이어알선지원 2,091건, 방한바이어 지원 134건(17.10월말 기준)

지원 대상 국내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바이어 알선(BMS) 및 방한바이어 지원(VAP)

분 야	내 용	신 청
바이어알선 지원 (BMS)	- 국내 중소기업 신청, 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 접수 및 검수 - 최적의 해외바이어 발굴 및 매칭	국내 중소기업
방한바이어 지원 (VAP)	- 업체 동방방문 및 미팅 스케줄 조정, 미팅지원 - PT 대행 및 통역지원, 무역상담 등 정보제공	국내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신청·접수 고비즈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연중 수시)

신청 서류 사업 참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출관련 활동 증빙서류 등

* 사업 참여계획서 양식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www.gobizkorea.or.kr) 신청 게시판 참조

처리 절차

신청 접수	국내 중소기업 신청 접수	• 국내 중소기업 바이어 알선의뢰 접수 • 바이어 의뢰 신청 건 검토(무역 전문가) - 바이어 유효성여부 파악(이메일, 유선확인, 신용조회 실시)
발굴 매칭	해외바이어 발굴 및 알선 (BMS)	• 무역전문가 및 지역본(지)부 활용, 최적의 해외 바이어 발굴·알선 • 중소기업에겐 해외바이어를, 해외바이어에겐 최적의 중소기업을 알선
부가 지원	방한 바이어 지원 (VAP)	• 방한 바이어 대상, 국내업체 동반 방문, 미팅지원 및 통역 등 현장 밀착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 055-751-975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방한바이어 지원(VAP)을 받는 것에 대한 기업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A** 방한바이어 지원(VAP)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바이어 항공료, 체재비 등은 지원사항이 아닙니다.
- Q** 방한바이어 지원(VAP)을 받은 후 그 이후 발생하게 되는 바이어와의 거래 진행사항에 대한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 A** 방한바이어 지원(VAP)사업은 바이어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만 지원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는 순간에서부터 방한 이후 수출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계속 해드립니다.
- Q** 지원자격이 있나요?
- A** 해외바이어를 개별적으로 국내에 초청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영어통역이나 무역상담지원만 필요한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해외바이어 알선(BMS : Business Matching Service) : 국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최적의 해외 바이어를 발굴·알선

방한바이어 지원(VAP : Visitor Assistance Program) : 해외바이어가 중소기업 업체방문을 위하여 방한하는 경우 업체동반방문, 통역 등을 지원하여 사후관리 지원

1-10

중기제품간접광고지원

|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제품 노출 효과가 높은 방송 프로그램 간접광고를 통해 중기제품 판로확대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40개 제품 내외 (전체 예산 14억원)

* '17년 지원실적 : 160건 간접광고 마케팅 지원

지원 대상

소비재 생산·판매 중인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지원 내용

지상파·케이블 TV 및 웹 프로그램 간접광고 매칭 및 비용 보조(50%~60%) 및 다양한 후속 마케팅 지원 연계

신청·접수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 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온라인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 및 매칭



PPL 및 후속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 055-751-9765, 976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PPL 광고단가 및 노출장면의 활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프로그램별, 방송사별로 상이하므로 고비즈코리아에서 광고문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별로 금액 및 범위를 확인해주세요.

용어설명

간접광고(PPL, Product Placement)란? :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제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1-11

글로벌협력지원

| 산업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외국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

분 야	내 용
국제협력지원	• 외국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 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기반 구축 - 해외 협력파트너 알선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및 기술협력 등) - 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지진출 및 현지정착 지원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운영	• APEC 역내 회원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 역내 진출지원 - APEC 역내 중소기업 현장에 경영·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우리 중소기업과 APEC 역내 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 지원

신청·접수

- 사절단, 세미나, 상담회 등 개별행사는 일정 확정시 '홈페이지(www.sbc.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접수
- 산업협력관, 코리아데스크 등 현지 지원사업은 국제협력처로 문의

지원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 055-751-9672, 967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용어설명

APEC중소기업혁신센터 : APEC 역내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역내 진출지원을 위한 센터로서,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참석, 컨퍼런스 및 매칭상담회 개최, 회원국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을 추진하고 있음

1-12

연수사업

Ⅰ 중소기업 CEO 및 재직자 대상 전문역량 향상연수

중소기업 CEO 및 기술·경영인력의 전문역량 향상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기술, 관리기법 습득 및 현장실무능력 배양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연간 40,000명(직무역량향상연수·온라인·정책연수인원), 400개사(맞춤연수 지원업체수)

* '17년 지원현황 : 34,900명, 맞춤연수 418개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중소기업 취업대상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지원 내용

- 9,400여명의 풍부한 강사진과 총 400여개의 다양한 직무역량향상연수 운영
- 기업의 교육훈련 니즈에 따라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을 설계·운영(맞춤연수)
-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부 정책과 연계된 연수과정 운영(정책연수)
 - * 정책자금, R&D, 인력, 수출마케팅 등 중기 지원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수과정
 -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식 실무연수과정 및 취업연계 과정
 -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연수 등
- 생산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해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연수 실시(현장맞춤형연수)
- 수요자 접근성 개선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인터넷·모바일연수, MOOC(온라인 무료공개수업) 제공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스마트공장, 스마트융합 연수 중점 추진

신청·접수

연중 상시 신청 가능(별도 심사, 평가 절차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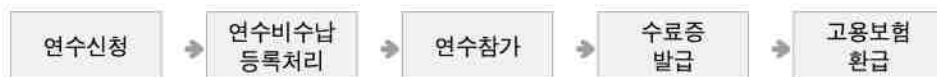
- * 직무역량향상연수, 온라인연수 : 과정 개설 전 신청 필요
- * 과정별로 신청 기업의 연수비 부담 필요

제출 서류

연수신청서(훈련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소기업확인서 : 매출액 기준은 최근 3년 재무제표 제출,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 등
- * 연수원 환급과정의 경우 훈련비 환급 지급을 위한 사업주 통장사본 제출

처리 절차



연수 과정

연 수 분 야				주 요 연 수 내 용
Off line	직 무 역 량 향 상 연 수	기 술 연 수	○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공장운영시스템, 러닝팩토리실습, 제조자동화, 설계기술·가공기술, 스마트공장관리
			○ 스마트융합	전기전자·PLC·ICT융합, CAD, 정보기술·IT
			○ 생산기술	기계설계·기계가공, 정밀측정·도면해독, 자동화·유공압, 플라스틱·고무
			○ 뿌리기술	주조·소성가공·용접, 표면처리·열처리·금형
		○ 생 산 품 질		제품·공정개발, 생산관리, 품질관리(국제인증포함), 현장혁신
			○ 창의인재	계층역량강화, 직무역량향상(문제해결형 코칭연수)
			○ 최고경영자	중소기업 CEO 명품아카데미
	맞 춤 연 수	○ 문 제 해 결 형		개별기업의 니즈를 반영, 연수과정을 설계하여 실시하는 연수
			○ 현장맞춤형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연수
		○ 조 직 활 성 화		조직분위기 쇄신으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도모
On line	온라인 연수	○ 정 책 연 수		중기지원정책연수, 취업연계연수, 협업·산학협력
		○ 인 터 넷 연 수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하는 연수, MOOC(온라인무료공개수업), 오프라인 연수와 결합한 혼합형(Blended) 연수
			○ 모 바 일 연 수	

연수비

소기업, 신규연수과정 등 연수비 20~50% 감면 실시

- 신규연수과정은 2018년 신규로 개설된 연수과정(온라인연수를 제외한 **NEW** 표시 과정)
- 교육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연수비의 약 40% 고용보험 환급 가능
- * 연수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 환급여부 및 처리절차가 과정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연수신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연수비 감면제도 >

연수과정	적용 대상 및 절차	할인율
직무역량향상연수 (공개집합연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20%
	지방소재(수도권이외지역) 소기업	50%
	신규과정	30%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정의
- * 매출액 :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 충족
다만, 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기업규모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원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 중소기업연수원(안산) : 031-490-1472, <http://sbti.sbc.or.kr>
- 중소기업호남연수원(광주) : 062-250-3000, <http://giti.sbc.or.kr>
- 중소기업대구경북연수원(경산) : 053-819-5001, <http://gsti.sbc.or.kr>
- 중소기업부산경남연수원(창원) : 055-548-8045, <http://jhti.sbc.or.kr>
- 글로벌리더십연수원(태백) : 033-550-5000, <http://global.s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주세요!



Q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노동부 고용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카드로 결제시 노동부 고용환급을 받으실 수가 없으므로 기업카드 또는 현금(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1-13

기술사관 육성사업

|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4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혁신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기술사관 육성 13개 사업단(18년 예산 38.5억원)

* '17년 지원현황 : 15개 사업단(15개 전문대, 24개 특성화고) 2,324명 교육

지원 대상

- 사 업 단 :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연계 사업단
- 중소기업 : 부동산업 등 일부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대상
- 학 생 : 사업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및 전문대 학생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캐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학 교	· 교육연수비, 교육과정 개발비, 강사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
학 생	· 직업교육, 연계대학 진학, 졸업 후 협약기업 취업 등
기 업	· 우수 기술인력 확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등

기업 참여 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사관육성사업사업 참여 사업단('17년 기준 15개 전문대) 중 채용희망 분야가 일치하는 사업단과 3자협약을 진행
- * 사업단 현황 :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sanhakin.mss.go.kr)에서 확인 가능
-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기술사관육성사업 사업단 정보

참여기업 혜택

- 기술사관육성사업사업 참여학생과 채용조건 3자협약을 맺은 후 참여기업 근무시 병역지정업체 우선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1순위 배정
 - *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신청은 매년 6월 실시
- 인력채용 이후 추가 교육 없이 바로 현장업무가 가능한 우수 기술인력 확보 가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 : 042-481-4369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72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주세요!



Q 기술사관육성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어떠한 정부 지원 혜택이 있나요?

A 기술사관육성사업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 혜택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1순위 배정 혜택이 있습니다.

Q 중소기업에서 기술사관육성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술사관육성사업단을 운영중인 전국의 15개 사업단의 집중 양성 분야를 확인하고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단과 채용조건 3자협약을 한 후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맞춤교육,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협약 대학으로 진학해야 되나요?

A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협약되어 있는 대학 및 해당 학과로 진학해야 합니다.

Q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기술사관 육성사업 졸업자가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협약기업으로 취업할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보충역은 산업기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음)

<기술사관 개설 현황(17.11월 기준)>

구분	전문대학		특성화고
	대학명	양성분야	
서울	삼육보건대학교	의료정보시스템	은평메디텍고, 염광여자메디텍고
부산울산	울산과학대학교	환경화학공업	울산공고
	동의과학대학교	컴퓨터응용기계	해운대공고, 부산공고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전자통신	대양전자정보고, 부일전자디자인고
	경남정보대학교	전자정보	-
대구경북	영남이공대학교	기계	경북공고, 대구서부공고
광주전남	청암대학교	신재생전자제어	-
	순천제일대학교	자동차기계	광양하이텍고
경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금형디자인	평촌공고, 산본공고
	두원공과대학교	기계	두원공고, 삼일공고, 시화공고, 김포제일고, 이천제일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이동통신	서울도시과학기술고, 리라아트고, 서울디지털고, 상일미디어고
충남대전	대덕대학교	정밀기계공학	충남기계공고
	백석문화대학교	비즈니스콘텐츠	천안상업고
경남	창원문성대학	기계	-
제주	제주관광대학교	메카트로닉스	한림공고

기술사관육성 15개 사업단(전문대 15개 + 특성화고 24개)

1-14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 선취업-후진학 기반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근로자(학생)-중소기업-대학 간 3자 협약으로 운영되는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근로자(학생)의 장기재직을 유도합니다.

지원 규모

전국 50개 주관대학 69개 계약학과 및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운영비 및 등록금 등 지원 ('17년 사업비 102.79억원)

* '17년 지원현황 : 학생(근로자) 1,760명

지원 대상

- (재교육형) 해당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 (재교육형 동시채용) 입학당시 해당기업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함
 - 단, 학기개시일 기준 해당 기업에 취업해야 함
- (채용조건형) 해당기업에 재직할 경력이 없어야 함
 - 단, 졸업일 기준 취업해야 함

지원 내용

- (재교육형)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위하여 주말, 야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학비 일부를 지원(중소기업 기준, 등록금의 65% 이내에서 지원)
 - 재교육형 동시채용 : 재교육형 근로자가 최초 학기 개시와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로 학비 전액 지원
- (채용조건형) 핵심인재 유입을 위해 기업이 '학위지원 계약 체결'을 전제로 인재를 채용하고, 대학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해당학위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의무 근무하는 경우로 학비 전액지원

신청 자격

-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캠블링 및 베틱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학생) 현 근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또는 중소·중견기업 채용예정자(채용조건형)

추진 절차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사업공고	• 신규 주관 대학 모집공고 (http://sanhakin.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별도공지)
↓		
신청·접수	• 신규 주관대학의 참여 신청서 제출 및 접수	대학 → 관리기관 (별도공지)
↓		
현장실태조사	•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대학 현장실사	관리기관 → 대학 (별도공지)
↓		
대면평가	• 전문위원회를 통해 신청대학에 대한 대면평가 실시	중진공 → 대학 (별도공지)
↓		
주관대학 선정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관대학 최종선정	중소벤처기업부 (별도공지)
↓		
협약	• 주관대학-관리기관 간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	당사자 (별도공지)
↓		
학생/기업 모집	• (재교육형)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입학할 희망하는 대학에 추천 • (채용조건형·재교육형의 동시채용)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기업이 각각 대학에 참여 신청	주관대학 (봄학기 : 11~2월) (가을학기 : 6~8월)
↓		
3자 계약	• (재교육형) 학생 선발이 완료되면, 기업대표-근로자-대학 간 3자 계약 체결 • (채용조건형·재교육형의 동시채용) 학생과 기업을 대학이 선발한 후, 상호 매칭이 완료되면 3자 계약 체결	계약 당사자 (학기개시 전)
↓		
학과운영	• 계약학과 학위과정 운영	주관대학

신청·접수

- (대학) 신규 주관대학 모집공고 기간 내에 관할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학생 및 기업) 봄 학기 모집기간 11~2월, 가을학기 모집기간 6~8월에 전국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주관대학에 참가신청서 제출
 - 세부 학사일정은 학교별(학과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학과로 문의 요망

문의처

- 담당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개발과(042-481-4493)
- 수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055-751-9876, 987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전국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2017년 가을학기 기준 전국 50개 대학 69개 학과)
 - <https://sanhakin.mss.go.kr> → 정보마당 → 참여학과현황 → 계약학과

알려줘요!



Q 중소기업 대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나요?

A 현행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3조 2항에서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표자의 계약학과 입학은 불가능합니다.

Q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록금은 얼마인가요?

A 중진공은 매년 1월, 전국 대학 등록금 평균의 약 60% 수준으로 책정된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준등록금을 공시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등록금은 전문학사 과정 1,726,600원, 학사 과정 2,268,600원, 석·박사 과정 2,927,500원입니다.

Q 졸업 후 기업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하나요?

A 네, 그 기간을 의무 근무기간이라 하는데 이는 학위과정을 이수한 참여학생이 해당 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참여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재교육형은 졸업 후 1년, 재교육형 동시채용과 채용조건형은 졸업 후 2년을 의무 근무해야 합니다.

Q 재학 중에 근무 중인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재학 중 근무 중인 참여기업이 폐업,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 정부에서 지원된 등록금은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 퇴직하거나 취업을 포기한 경우 또는 학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1-15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산학협력 지원 인프라 조성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기업과 대학을 연계하여 맞춤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중소기업 인력애로 해소와 청년취업을 촉진

지원 규모

전국 14개 대학(예산 28억원, 대학당 2억원 내외)

* '17년 지원현황 : 전국 14개 대학(전문대 12, 일반대2), 693개 협약기업, 790명 교육

지원 대상

- 대 학 :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한 산학협력 역량을 갖추고 산학맞춤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
- 기 업 : 산학협력에 적극적인 우수 중소기업 및 관련 협회·단체 회원사
- 학 생 : 참여대학의 차년도 졸업예정자로 군복무를 완료한 학생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캐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내용

- 참여대학은 수요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
- 참여학생은 졸업대상자를 선발하여 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중심의 맞춤교육 이수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
- 중소기업은 참여대학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맞춤교육, 현장실습, 팀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술인력을 채용

구 분	지 원 내 용
대 학	• 학생연수비, 실습재료비, 학생활동지원비, 훈련지원금, 운영비등
학 생	• 협약업체 직무 맞춤교육 및 협약기업 취업 연계
기 업	• 산학협력프로그램 참여, 전문·고급기술인력 확보

신청·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www.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anhakin.mss.go.kr)에서 다운로드

기업 참여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참여대학과 산학협력 유형을 선택하여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참여 및 참여학생 취업조건부 채용협약 가능

구 분	협회·단체형	중소기업형	복합형
특화기능	• 대학과 협회·단체간 산학 협력 체결 • 회원사 인력 수요, 공동 채용 등 관리	• 대학과 중소기업간 산학 협력체결 • 중소기업별 맞춤 산학협력 체제 구축	• 협회·단체형 및 중소기업형 병행 • 참여기업의 50%이상이 회원사로 구성
공통기능	•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맞춤교육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 대학은 산학맞춤 기술인력 공급, 중소기업은 우수인력 채용		

참여기업 혜택

- 인력채용 이후 추가 교육 없이 바로 현장업무가 가능한 우수 전문기술인력 확보

심사·평가

- 서류점검 : 사업계획서 충실성, 사업비 적정성 등 검토
- 현장평가(20%) : 교육환경 및 사업계획서 확인
- 발표평가(80%) :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대상 대학 선별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 : 042-481-6875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72
-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www.sanhakin.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8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주세요!



Q 산학맞춤 기술인력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참여학생은 전공수업과 별개로 산학맞춤교육,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화된 심화교육 이수 후에 대학과 협약된 우수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양성된 전문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에 기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의 참여신청은 대학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동 사업은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은 양성된 필요한 기술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대학과 사전에 산학협력 운영협약 체결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6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중심교육을 통한 기술·기능인력 양성

산업 각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연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200개 특성화고, 338.5억원

* '17년 지원현황 : 181개 특성화고, 306.4억원

지원 대상

중소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분야의 차별화된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 (교육지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형 수업,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을 Module별로 지원
- (취업지원) 중소기업 채용 협약 「취업맞춤반」 지원
- (산학연계지원) 기업체 CEO, 해당분야 기능장 등 외부 전문강사 및 산학점임교사 채용 연계지원

신청·접수

'18년 1월 예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평가항목) 사업목표의 명확성, 추진계획 및 체계의 합리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 * 평가세부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은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별도 확인

추진 절차

절차	내용	일정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공고 - 사전설명회 개최	1월
↓		
사업신청 (학교→중진공)	(신규학교) 당해연도 신규 참여학교 서류 신청·접수 (기존학교) 완료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1월
↓		
선정 및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신규학교) 사업계획서 검토 후 발표 평가 및 선정 (기존학교) 완료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발표 평가 및 선정	2~3월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착수 (참여학교↔중진공)	학교별 사업비 확정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4~5월
↓		
사업비교부 (중진공)	학교별 총 사업비 교부	4~5월
↓		
중간점검 (지방중기청→참여학교)	참여학교 사업 운영현황 중간점검 실시(지방중소벤처기업청)	9월
↓		
사업비 정산 (중진공)	위탁정산기관 선정 및 참여학교 사업비 정산 실시	차년도 3월
↓		
결과보고 (중진공→중기부)	당해연도 특성화고인력양성 사업 결과보고	차년도 4월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042-481-4467)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055-751-9862~5, 9824)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참고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취업 예정기업의 맞춤 교육을 수행하고 취업을 약속하는 취업맞춤반, 기업의 애로과제를 학생의 과제 능력 향상에 중심을 둔 1팀-1기업 프로젝트, 산학 연계 전공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Q 취업맞춤반에 참여할 시 중소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A 채용 이후 추가 교육비용 없이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 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시 우선선정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 선정평가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존재합니다.

1-17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 전국민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인력유입 촉진

1. 중소기업 체험 및 특강, 토크콘서트,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중학생, 특성화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
2. 성과공유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방송으로 소개하여 전국민의 중소기업 인식을 개선합니다.

지원 규모

지원업체수·과제수·인원수 등(전체 예산)

* '17년 지원현황 : 중학교 310개교, 특성화고 95개교, 교사 125명, 중소기업 10개사

지원 대상

- 중학생 : 자유학기제 중학교 재학 중인 중학생
- 고등학생 : 특성화고등학생 및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사 : 중학교 3학년 진로교사 및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 국민 : 전국민

지원 내용

- 중학생 : 자유학기제 시행 중학교 대상 3시간, 1일, 2일 프로그램 중 선택 (특성화고 견학, 인식개선 강사특강, 중소기업체험, 문화 콘텐츠 활용 특강, 창작극 공연, UCC 제작 등)
- 고등학생 : 전국 특성화고 대상 연극(전문극단과 함께 인식개선 스토리 연극 연습 및 발표) 및 토크콘서트(중소기업 CEO·인사담당자 등과 취업 관련 상담 및 입사 비법 공유)
- 교사 : 중학교 3학년 진로교사 및 특성화고 교사를 대상 중소기업 바로알기 연수
- 국민 : 존경받는 기업인(성과공유 실천하는 우수 중소기업 CEO)을 선정하여 미디어를 통해 홍보
 - * 중소기업 나눔경영쇼 - 사장님이 멋졌어요 '18년 1월 ~ '18년 3월 방영(KBS1)
- CEO : 성과공유 확산교육 등 기업문화 혁신관련 교육 실시(16백명)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중학생 프로그램 중 일부과정(2주, 6주과정) 폐지 및 신설(2일과정)

신청·접수

- 중학교 : 전국 중학교에 공문 발송 후 선착순 접수
- 특성화고교 : 전국 특성화고에 공문 발송 후 선착순 접수
- 교사 : 전국 중학교, 특성화고에 공문 발송 후 선착순 접수
- 존경받는기업인 : 인재육성형 지정사업 신청 기업 중 평가를 통해 10개사 선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존경받는기업인 선정)
 -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도입 여부, 교육인프라 현황, 복지제도 등

제출 서류

인식개선프로그램 : 참여신청서(학교장 직인 필)
 존경받는기업인 신청 : 신청서 및 우수사례내용 제출

처리 절차

- 중학교, 특성화고교, 교사 대상 중소기업바로알기

사업안내 공문 발송 → 신청접수 → 선정 → 프로그램 운영

- 존경받는 기업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신청업체에 안내 → 실태조사 → 선정평가 → 방송제작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25, 9829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산학인.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 성과공유 확산 CEO 교육 접수 ☎02-2230-2155

1-18

창업성공패키지

| 청년CEO의 창업 쏠단계 패키지화 지원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청년CEO들의 원활한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업화과정 및 단계별 후속연계 프로그램 등 창업 쏠단계를 일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525명(팀) 내외, 예산 525억원

* '17년 지원현황 : 500명(팀) 내외, 예산 500억원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기업의 대표자 (18.1.1기준)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업종 영위(예정) 기업

* 단, 신청과제와 관련된 기술경력 보유자는 정원의 10%내외 만 49세 이하까지 지원 가능

- ①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②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③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④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⑤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박사, 기술사, 기능장 등)

지원 내용

- 프리스쿨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전 (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 강화 교육
 - 기본과정 :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창업기초교육 프로그램
 - 심화과정 : 창업기간 창업역량 격차 해소 및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 청년창업사관학교 :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
 - (공간)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공간(개별·공동) 제공
 - (코칭)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및 창업全过程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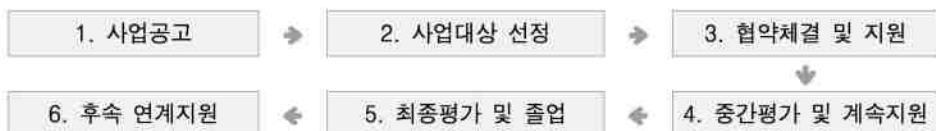
- (교육) 기술사업화 및 전문지식 등 단계별 교육 실시
- (기술) 제품설계(CAE·역설계 등),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관련 기술 및 장비 지원
- (사업비) 1년간 최대 100백만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 단, 기술개발이 장시간 소요되는 고급기술의 경우, 2년간 최대 200백만원 이내 지원
 -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지재산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지원
- 후속연계 : 사관학교 졸업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성장촉진프로그램* 지원
 - * 정책자금, 투·융자, R&D연계, 마케팅·수출, 투자유치 등

신청·접수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및 접수(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http://start.sbc.or.kr>)

제출 서류

사업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문의처**

○ 주요 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주 소
청년창업사관학교 (본원)	031-490-127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중소기업연수원 내
충청 청년창업사관학교 (충남 천안)	041-589-083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내 정보영상융합센터 연구동 6층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광주)	062-250-3030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 호남연수원 내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북 경산)	053-819-5099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86 대구경북연수원 내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남 창원)	055-548-8020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 22 부산경남연수원 내
중진공 창업기술처 (경남 진주)	055-751-9886 055-751-9838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sbc.or.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대학생, 재직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대학생 또는 직장인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업창업을 전제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으므로 학업 또는 직장생활을 병행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 팀으로 신청할 경우, 팀원들 모두가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팀원 모두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19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지원

R&D 성공 후 사장된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기획, 시장검증 및 추가 R&D 지원 등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예산 45.77억원

- 기술사업화 진단 지원: 250개사
- 사업화 기획 지원 : 60개사
- 시장검증 지원 : 32개사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 20개사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 및 기업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17년 지원현황 : 기술사업화 진단 312개, 사업화 기획 60개, 시장검증 지원 35개,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30개사

지원 대상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사업화 성과(양산, 매출발생)가 없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사업화(양산, 매출발생)가 진행된 경우
-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유의사항 등

- R&D 성공판정 기술 관련 신청기업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에서 정부 지원 과제임을 확인한 후 신청

- 특허등록 기술 관련 신청기업은 특허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권리가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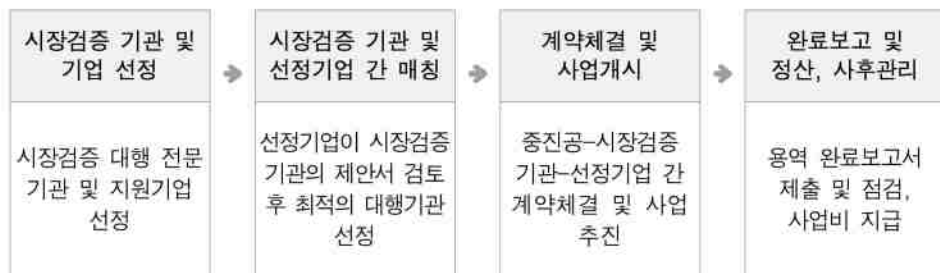
지원 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보유 기업 선발 후, 사업화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및 추가 연계지원 사업 추천
- 기술사업화 진단 : 기술완성도와 시장성 및 기업의 사업화 역량에 대하여 현장조사, 면담,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기술의 사업화 추진 유형을 분류하고 맞춤형 연계지원 방향 제시
- 사업화 기획 : 기술사업화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기술·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화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질적 연계지원 성과 창출을 위한 단기 코칭을 제공
- 시장검증 : 양산단계 투자 의사결정 전에 시장에 대한 검증을 지원(시제품 제작 포함)

* 5천만원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한도 결정, 민간부담 25%)

지원항목	주요내용
성능 테스트 (Performance test)	• (적용대상) 지원 기업중에서 잠재 고객사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성능테스트 분야 • 고객 사양에 맞는 품질평가, 작동 모형 평가, 신뢰성 평가 등
시장테스트 (Market test)	• (적용대상) 지원 기업중에서 고객검증이 필요한 분야 • 시장 시뮬레이션, 추적조사, 고객패널조사, 마케팅전략수립 등
시제품제작 (Prototyping)	• (적용대상) 제품의 작동성과 양산성, 금형 제작시의 오차 등을 검토하고 테스트 하기 위한 분야 • 제품의 기능성 및 내구성 등을 점검하기위한 시제품 제작

○ 지원절차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개발제품의 완성도 제고 및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시장 수요에 맞추어 기능개선 및 성능향상 지원

* 1억원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한도 결정, 민간부담 35%)

지남해와 달라진 내용

- 시장검증 지원에 시제품제작 지원 포함 및 지원한도 상향조정(지원한도 27백만원 → 50백만원)

신청·접수

- 접수기간 : '18. 1월 중 사업공고 예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통한 온라인 신청(또는 우편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평가) 기술의 우위성, 차별성, 완성도, 기술의 시장 경쟁력, 구현 용이성, 성장성, 사업수행 역량, 재무역량 등
 - * 서류평가에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진단 지원
- (발표평가) 사업화 기획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화 추진 방향 및 성과창출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평가
 - * 발표평가에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검증 지원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신용조회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2개년 재무제표, 정부 R&D 성공판정 공문 또는 특허등록 원부

처리 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사업신청서류 접수		신청업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			
서면평가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술사업화진단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사업화 기획 업체 선정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대상업체 추천	(사업화 기획)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중진공 → 기정원
↓			
시장검증 대면평가	사업공고, 신청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평가위원회)	기정원
↓			
시장검증 업체 선정	대면평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정원 (평가위원회)
↓			
협약 및 위탁계약 체결	과제선정, 협약, 자금지원	중진공↔선정기업 ↔위탁기관	기정원↔선정기업
↓			
과제관리, 최종점검	과제관리, 최종점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정원
↓			
자금지원	최종평가, 사후관리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정원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055-751-9853, 9852, 985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20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 레저장비산업 국산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 소재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전체 예산 21.76억원(제속과제 포함)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핵심부품소재 국산화와 제품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분야	해양레저장비 분야
전기자전거 및 관련 부품·소재	해양레저장비 전 분야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17년 지원현황 : 전체예산 25.24억원[기술개발 8개 과제 (신규 4개사, 계속 4개사), 기술사업화 8개 과제, 비즈니스모델 개발 1개 과제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 기술개발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기술개발과제
 - * 제조업 기준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제조매출 발생 실적 보유기업에 한함
- 기술사업화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관련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사업화 성과(양산, 매출발생)가 없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접수기간 내 서류제출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부도 또는 세금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중복과제 지원 불가)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內 '18년도 레저장비산업개발 지원 사업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 부품소재전문기업,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디자인상품(GD)인증 보유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기술개발 : 자전거·해양레저 산업 관련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기술사업화 : R&D성공기술 및 특허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 후 맞춤형 사업화 비용 지원

구분 (지원비율)	항목	내용	비고
기술개발 (75%)	자전거 분야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한도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참여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단독기술개발은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지원
	해양레저 분야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지원한도 : 연 3억원 이내(과제당 총 8억원 이내)	
기술사업화 (70%)	기술사업화 진단	• 기술완성도, 시장성 및 역량 조사를 통한 사업화 성공 가능성과 사업화 추진 유형 분석 지원	* 세부내용은 사업공고 확인
	사업화 기획	• 사업화 추진 로드맵과 세부 연계지원 계획 수립 지원	
	맞춤형 사업화	• 사업화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 시장검증,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술개발 과제 신청대상 기업” 제조매출이 발생한 제조업 영위기업에 한함

신청·접수

’18. 2월 중 사업공고 예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통해 선정이 이루어지며, 필요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
- 기술성, 경제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
- 선정 관련 세부내용은 ’18년 사업공고문 참조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자세한 사항은 ’18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 절차

사업공고 및
양식교부
(’18.2월)



신청·접수
(’18.3월)



선정위원회
개최
(’18.4월)



지원기업선정
(’18.5월)



협약체결 및
사업개시
(’18.5월)

- * 선정위원회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 기술사업화 과제는 기술사업화 진단 → 사업화 기획 → 맞춤형 사업화 지원 단계로 진행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055-751-9855(9858)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21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진입 및 성장기·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규모

500개사(전체예산 70.27억원)

○ 경영·기술·특화형(420개사), 원스톱창업지원(80개사)

- 지원기업 수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17년 지원현황(선정기준) : 경영·기술·특화형(477개사), 원스톱창업지원(99개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구 분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경영·기술	• 업력 제한 없음	• 경영·기술 전 분야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영업, 재무/회계, 고객만족, 글로벌경영전략(FTA), 생산혁신, 품질, 정보기술, 에너지/녹색경영, R&D, 사업전환 등)
특화형	• 업력 제한 없음	• 스마트공장 구축, 제조업 서비스화, 신서비스업분야, 미래성장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업체 등
원스톱 창업지원	• 제조업 영위 기업 중 - 예비 창업,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재창업자 단, 재창업자는 재창업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중진공 정책 자금)	• 창업공장 설립(변경) 승인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별표1]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업종
- ✓ 사업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 ✓ 신청하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
- ✓ 신청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화의·법정관리종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지원 내용

과제 및 업력에 따라 전체 컨설팅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

구 분		정부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
경영·기술	업력 7년 미만	65%	최대 20백만원
	업력 7년 이상	30 ~ 50%	최대 30백만원
특화형		90%	최대 10백만원
원스톱 창업지원		65%	최대 5백만원

신청·접수

'18년 3월부터 분기별 접수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홈페이지(www.smbacon.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타당성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
 - 기업선정평가 : 컨설팅 신청기업에 대해 컨설팅 목적 및 타당성, 수행방안, 컨설팅 기대효과, 추진의지 등을 통해 지원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제출 서류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혁신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제출방법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홈페이지(www.smbacon.go.kr) 온라인 제출

처리 절차

○ 경영·기술·특화형 컨설팅



○ 원스톱창업지원 컨설팅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055-751-9845, 9844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 www.smbacon.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주세요!



Q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를 받았던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나요?

A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Q 협약 이후 회사 경영사정으로 컨설팅과제 추진 일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를 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중진공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단, 컨설팅 기간은 1회에 한해서 2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Q 현재 '17년 컨설팅 과제를 수행중인데, '18년도 경영·기술 과제에 추가 신청가능한가요?

A '17년 과제 진행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7년 사업 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Q 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컨설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A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www.smbacon.go.kr)의 컨설팅 길라잡이 코너를 통해 다양한 컨설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별표 1] 지원제외 업종

코 드	해 당 업 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51	자동차 판매업 중 소매업
46102중	주류, 담배중개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55~56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5821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FIN-TECH) 기업은 지원)
68	부동산업
7152	비금융 지주회사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51 ~ 854	교육서비스업
86	보건업
731	수익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113	경주장운영업
9124	갬블링 및 배팅업
9129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97~98	가구내 고용 및 자가서비스 생산활동
99	국제 및 외국기관

1-22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
- ✓ 휴·폐업, 세금(국세) 체납 기업

가입 요건

- 가입 기간 :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가능)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 (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최소 가입금액 : 5년간 2,000구좌이상 (1구좌=1만원)
- 공제 금리 : 1.58% (2017년 지급이자율 기준, 분기별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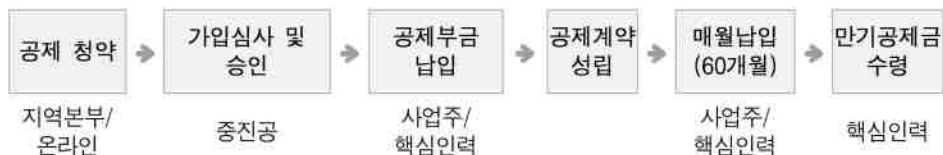
가입 혜택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세액공제(납입금액의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분의 50%)
- 핵심인력
 - 5년 만기금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가입 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 : 042-481-4465, 4424
-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6-3162, 3170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알려주세요!



Q 중소(견)기업의 대표자도 핵심인력의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까?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인센티브)이므로 개인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는 핵심인력의 자격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가입기업의 1) 대표이사, 2) 최대주주, 3) 실질경영주에 해당되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Q 공제 가입인원의 제한이 있습니까?

A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인원 제한이 없으며, 중소(견)기업 재직 근로자 중 사업주가 지정하는 핵심인력은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Q 기업납입금은 핵심인력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중소(견)기업 기여금은 근로제공 이외에 '5년 이상 재직'의 추가적인 조건(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공제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공제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해지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① 중소(견)기업 귀책에 따른 해지 : 중소(견)기업 납입금 및 해지이자, 핵심인력 납입금 및 해지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지급
- ② 핵심인력 귀책에 따른 해지 : 중소(견)기업 납입금 및 해지이자 는 중소(견)기업에, 핵심인력 납입금 및 해지이자 는 핵심인력에게 지급
다만, 핵심인력의 사망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지일 경우에는 전액 핵심인력에게 지급

[참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근로자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청년근로자 납입금, 중소기업 기여금) 및 취업지원금을 적립하여, 2년 만기 시 적립한 공제금 전액 "1,600만원 + 이자"를 핵심인력에 지급하는 공제

가입 대상

-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上 5인 이상 지원업종 영위 중소·중견기업
 - 벤처지원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청년근로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

사업 내용

- (가입기간) 2년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재가입(3~5년) 가능)
- (가입금액) 청년근로자 납입금(300만원) + 기업기여금(기업, 400만원) + 취업지원금(정부, 900만원) ⇨ 2년 근속(청년근로자, 1,600만원+이자)
- (가입혜택)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우대 및 연계지원

[공제부금 및 취업지원금 적립 구조]



문의처

- 정부 통합콜센터 : ☎ 1350 / 1357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www.work.go.kr/youngtomorrow
www.sbcplan.or.kr



제2부 신용보증기금

2-1 신용보증	89
2-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93
2-3 보증연계투자	95
2-4 투자유선부 보증	97
2-5 유동화회사보증	99
2-6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103
2-7 매출채권보험	106
2-8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Start-up NEST)	111
2-9 잡매칭(Job Matching)	114
2-10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115
2-11 컨설팅	119

2-1 신용보증

| 기업의 미래성장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기업의 미래성장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보증잔액 45,0조원으로 운용

* '17년 지원규모(10월말) : 44.6조원

지원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 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 대출보증, 상거래 담보보증, 이행보증 등
- 보증한도
 - ▷ 30억원
 -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00억원까지 보증지원 가능

자 금 종 류	보증한도
■ 시설자금	100억원
■ 구매자금용,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70억원*

*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30억원 ~ 70억원까지 차등화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매출액한도 :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신청·접수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영업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의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구 분	수집(제출)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객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 시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수집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납세실시증명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수집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 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 동의 시 전산으로 수집
	• 임대차계약서 • 주주명부 • 기업개요표	고객이 FAX 또는 현장조사시 제출

처리 절차

단 계 별	처 리 내 용
신청 및 상담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	
자료수집 및 조사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신보 직접 수집하며, 일부자료는 기업 제출)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약정 및 보증서발급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문의 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주세요!



Q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보증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에 맞춤형 보증 지원
	유망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창업기업에 대해 유형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고용창출기업 보증	· 고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
	유망서비스기업 보증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시설자금특례보증	· 자가사업장 신축 또는 매입, 공정자동화 및 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지식재산보증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위한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SMART융합보증	· ICT, 과학기술 기반의 H/W, S/W 도입, 산업융합 신제품, 첨단융합품목 생산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사회적경제기업에 특화된 보증 상품 지원**
	기타	· 신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뿌리산업 영위기업, 경영 혁신형 인증기업 등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 종류 : 고용창출 특례보증,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보증, 고용의질 우수기업 우대보증 등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종류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협동조합 희망보증, 마을기업 두레보증, 자활기업 초록보증

Q 보증료는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보증료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납하며, 보증료율은 보증심사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운용합니다.

2-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 경영혁신형기업 발굴

전통제조업, 서비스업, 문화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중 경영혁신활동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경영혁신기업 선정기업에 대하여 연간 보증 6.5조원 지원

* '17년 10월말 현재 3,322개 기업 신규 선정 및 보증 6.5조원 공급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3년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내용

금융지원

- 보증료율 및 신용보험료율 우대
-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 중소기업은행에서 보증부대출 시 선정 평가 수수료 지원 등
-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신청·접수

메인비즈 홈페이지 (www.mainbiz.go.kr)에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정, 마케팅, 조직 부문에 있어 경영혁신 활동 여부 및 성과를 평가

제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자료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전화상담 ☎ 1588-6565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홈페이지(www.mainbiz.go.kr), 전화상담 ☎ 1666-5001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여 혁신 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

2-3

보증연계투자

I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지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증과 투자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복합금융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400억원 이내(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17년 10월말 기준 지원현황 : 321억원

지원 대상 기술력 및 경영진의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사업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 단, 창업기업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투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지원 내용

- 개별기업 당 투자한도 : 30억원으로 신보의 보증금액 2배 이내로 운용하되, 신용등급별로 차등적용

보증심사등급	인수한도
K5 이상	30억원
K6~K8, SB1~SB2	15억원
K9 이하, 무등급, 기타등급, SB3 이하	10억원

- 투자종류 : 주식(보통주, 우선주) 또는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투자기간 : 주식 3년~10년, 사채 3년

신청·접수

신용보증기금 창업성장지점 및 영업점에 신청 및 접수

심사·평가 내용

- 투자대상기업 대표자의 경영능력, 사업성·기술성 및 재무건전도 등 투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 단, 기수집된 자료 중 투자심사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 생략 가능

처리 절차

업무절차	세 부 내 용	담당조직
투자상담	기보증이용기업 또는 신규기업 중 투자대상기업 발굴	영업점 창업성장지점
투자조사	현장조사 및 표준신용조사서 작성후 담당부서로 추천	영업점 창업성장지점
투자심사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투자심사 진행	투자금융센터 창업성장지점
투자결정	투자심의위원회 또는 보증사업심사위원회 의결	투자금융센터 창업성장지점
투자집행	투자승인기업과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 집행	투자금융센터 창업성장지점
사후관리	투자기업 사후관리 및 Value-up 서비스 제공	투자금융센터
투자금 회수(EXIT)	IPO, 상환·매수청구, M&A 등을 통한 투자금 회수	투자금융센터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4

투자옵션부 보증

| 미래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지원

미래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전환이 가능한 옵션권이 부여된 보증을 Seed Money로 지원한 후,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직접투자전환을 결정하는 투·융자 복합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600억원 이내(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17년 10월말 기준 지원현황 : 211억원('17년 계획 300억원)

지원 대상

설립 후 5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상법상 주식회사) 미래 신성장분야 사업영위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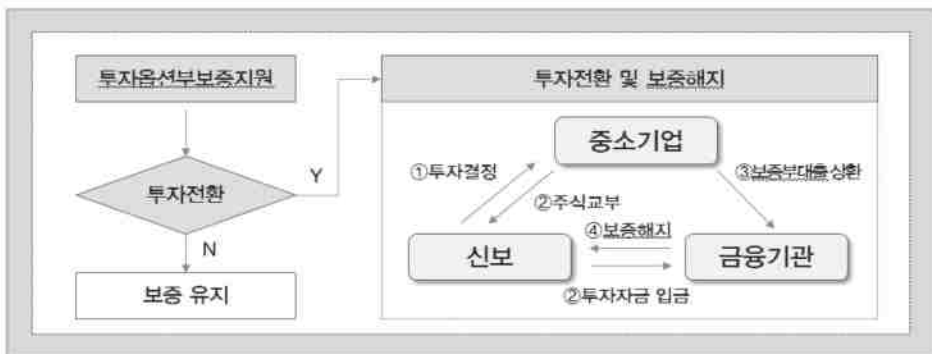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제도개요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옵션권이 부여된 보증 공급 후, 기업 경영성과, 후속투자 등에 따라 투자전환

< 투자옵션부보증 구조 >



지원 내용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보증기한	• 5년으로 운용
보 증 료	• 0.5% 고정 보증료를
보증비율	• 100%
투자옵션	• 행사기간 내 보증부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보가 납입하고 기업이 발행하는 신주(전환상환우선주)를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인수하는 권한 부여
계약조건	• (행사기간) 보증취급 후 1년 경과시점부터 4년간 • (행사가격) 기업가치 감안하여 결정

신청·접수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및 창업성장지점에 신청 및 접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처리 절차

업무절차	세 부 내 용	담당조직
상담·접수	기보증기업 또는 신규보증이용기업 보증상담 및 접수 (영업점 상담기업은 창업성장지점으로 추천)	영업점 창업성장지점
	↓	
신용조사·심사	현장조사, 신용조사서 작성 및 보증심사	창업성장지점
	↓	
보증서 발급	영업점 및 창업성장지점에서 보증서 발급	영업점 창업성장지점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5

유동화회사보증

I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17년(10월말 기준) 중 1,753개 기업에 1.9조원의 회사채 발행 지원

지원 대상

다음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 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10 이상 ■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9 이상
중견기업	■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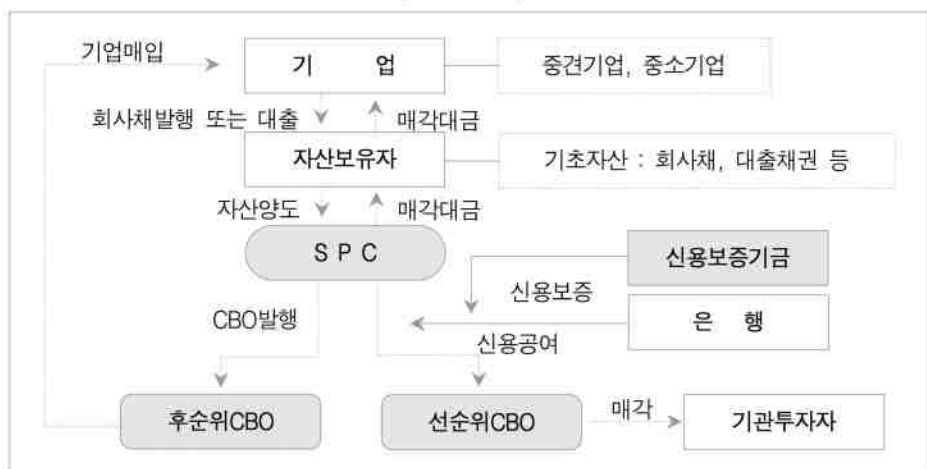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채무불이행 기업 및 신용상태 취약기업	■ 보증금지, 보증제한, 구조조정절차 진행 기업 ■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기업 ■ 당기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인 기업 ■ EBITDA 이자보상배율이 최근 2년 연속 "1" 미만인 기업 ■ 신보의 기업가치평가시스템에 의한 기업가치가 "0" 이하인 기업 또는 기업가치평가등급이 "FV-10" 인 기업
재무구조 개선 대상 기업	■ 기축법, 회생절차, 워크아웃 졸업 후 2년 미경과 기업 ■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지원타당성이 낮은 업종 및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제도 개요

-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구분 발행
 - 선순위증권에 대하여 신보가 원리금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
- 신보의 보증으로 AAA등급으로 상향된 선순위증권은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증권은 회사채 발행 기업이 매입

<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



지원 한도

아래의 각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 이내

○ 신용등급별 최고한도

(단위: 억원)

구 분	K4이상 (BBB이상)	K5 (BBB-)	K6 (BB+)	K7 (BB)	K8 (BB-)	K9 (B+)	K10 -
중소기업	150	120	100	70	50	40	30
중견기업	250	200	150	100	70	50	-

(주1) 신·기보의 일반보증+재단보증+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주2)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매출액, 자기자본 및 차입금 한도

매출액	- 제조업 및 유망·특화서비스기업 : 추정 매출액의 1/3~1/4 이내 - 기타업종 (도소매, 건설업 등) : 추정 매출액의 1/4~1/6 이내
자기자본	미래성장기업군 III·IV군인 기업(또는 회사채등급 BB이하)에 한해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차입금	총차입금(본건 포함)이 당기매출액(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이내

(주) 매출액 및 자기자본한도는 신보와 기보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이행보증은 이행지급보증만 포함), 투자금액,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을 포함

발행 금리

○ 신용등급별로 3.14(K1등급, A등급) ~ 4.74%(K9등급, B+등급) 수준

- ▷ 상기 금리수준은 2017.10.11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무보증공모사채 3년물 민평수익률 기준으로 발행 시점의 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후순위채 연율 1~1.5% 범위 내에서 별도 인수

신청·접수 연중 상시 발행

○ 중소기업은 신보 영업점, 중견기업은 거래증권사를 통해 편입 신청

심사·평가 내용

- 최저신용등급 충족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 미래성장성, 기업가치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입 결정

제출 서류 편입신청서류는 「신용보증 제출서류」 참조

처리 절차

구 분	상담·신청	→	편입심사	→	보증심사	→	보증승인
중 소 기 업	영 업 점		영업점 보증심사등급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보증사업 심사위원회
중 견 기 업	주관증권사		전문심사센터 회사채 등급 (신용평가회사)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특수목적의 법인

후순위채권 : 채무변제순위가 선순위채권에 비해 뒤지는 채권으로, 선순위채권의 상환이 완료 되고 잉여현금이 남아있을 경우 채권의 원리금이 지급

2-6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I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지원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보증공급계획(연간) 2.0조원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 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

○ 대상시설 (철도, 도로, 항만 등 53가지 시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규정된 시설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회생,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실기업

지원 한도 같은 사업당 최고 4,000억원 보증

- 토지선보상을 위한 보증은 3,000억원을 한도로 별도 운용

지원 내용 보증지원 누계 : 199개 사업, 총 23조 5,403억원 (17.10월말 기준)

- 도로 : 봉담-송산 고속도로 등 36개 사업 11조 3,877억원
- 철도 : 신분당선 등 8개 사업 3조 6,052억원
- 항만 : 부산신항만 등 15개 사업 1조 8,121억원

- 터널 : 용마터널 등 8개 사업 1조 279억원
- 환경 : 순천에코그린 등 25개 사업 9,528억원
- 문화 : 국립해양박물관 등 15개 사업 5,196억원
- 학교 : 서울신도초교 등 41개 사업 1조 5,525억원

신청 · 접수

- 보증상대처의 확인을 받은 보증신청서를 서면 제출
- 현장진단 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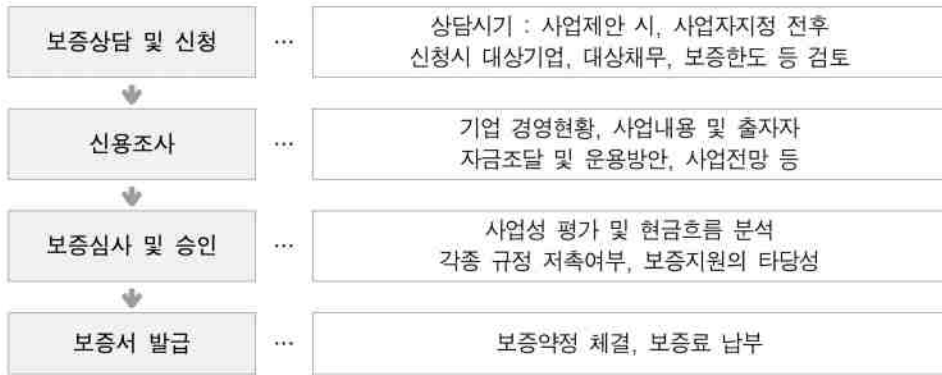
- 사업타당성, 출자자 자금조달능력, 주무관청의 보장내용 및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출 서류

자 료 명	비 고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주주명부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실제경영자 포함
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거주주택
⑥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및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금융거래확인서	본건기관, 주채권기관, 당좌거래은행
⑧ 재무제표(최근 2기분)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기업 포함
⑨ 사업계획 관련 서류 사본	실시협약, 실시계획서 등
⑩ 금융약정 관련 서류 사본	대출약정서 등
⑪ 세무조정계산서상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보증료 중소기업 우대부분 적용 확인용

(주)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등 행정정보공유시스템 및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신보에서 직접 수집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SOC보증부 : 053-430-447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7

매출채권보험

| 납품대금 매일 염려 없는 거래안전망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중소기업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

보험인수 20조원으로 운용

지원 대상

구 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 모	업 력	업 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인수 부적합업종 제외)
어음보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 ✓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원 내용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폐업, 이행 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 가입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 자금유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보험 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50억원(어음보험 포함)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 험 료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최저 0.1% ~ 최고 5.0%

상품 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 험 대 상
매출채권보험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다사랑보험	15일	모든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일석e조보험	15일	개별 또는 모든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 판매위험 보장과 동시에 보험청구권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포괄어음보험	15일	포괄한도 설정 후 개별 구매처에서 수취할 어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보험한도확대 및 인수조건 완화 등

기 존		변 경	
구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① 창업보험 보험한도	최대 2억원	창업보험 보험한도	최대 5억원
② 구매자 등급* (한사랑보험)	AR9, UR5 이상	구매자 등급 (한사랑보험)	AR11, UR6 이상 (등급완화)

* 자체 신용평가등급

신청·접수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심사·평가내용

- 신용보증기금은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인수금액, 보험인수 구매자 등 결정

제출 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근보험), 세금계산서 사본(개별보험),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처리 절차

보험가입절차	세 부 내 용
보험상담	보험가입요건, 금액 등에 대해 상담
↓	
청약접수	보험가입 청약서 접수
↓	
신용조사	신청기업 및 구매자 신용조사
↓	
보험심사	인수의 적정성 심사, 구매자별 가입금액 사정
↓	
보험료납부	보험료 납부 (일시납 또는 분납)
↓	
보험증권발급	보험증권 발급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 전국 단일전화 1588-656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매출채권보험과 신용보증의 차이점은?

구 분	매출채권보험(신용보험)	신용보증
특 징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금융안전망	신용보증을 통한 추가적 신용창출
계약성격	자기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체결	채권자를 위한 피보증인이 체결
수수료성격	예상손실에 대한 본담금	보증에 따른 대가

Q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와 시기는?

- A** 구매자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당좌부도(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구매자가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한 때
보험금 청구시기
 - 상기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 지급청구 시 필요서류는?

- A** 보험금 지급청구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지급 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및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인수증 또는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어음 사본
(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용어설명

매출채권 :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보험가입 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용(보험가입비용)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2-8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I 유망창업기업 융복합 패키지 지원

성장잠재력을 갖춘 Start-up이 본격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할 때까지 4단계 지원체계를 통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융·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우수 Start-up을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160개사 내외 선발

* '17년 지원현황 : 100개 기업 선발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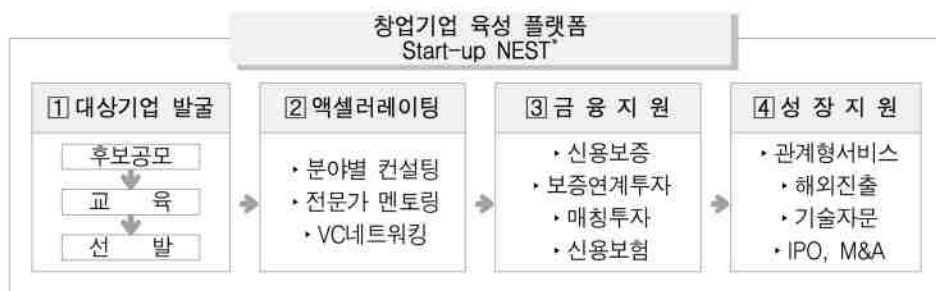
- 미래신성장 산업*을 영위하는 3년 이내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받지 않은 기업

* 첨단제조, 에너지, 환경,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문화·콘텐츠, 전기·자율차, IoT가전, 항공·드론, 로봇, 바이오헬스, AR·VR, 첨단신소재, 인공지능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한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 「보증심사방법 운용기준」에서 정한 보증제한업종, 보증취급유의업종 영위기업
 - ✓ 타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 수료자 또는 수행중인 자 및 중도 탈락·포기자
- * 유사 지원사업 예시 : 창업진흥원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TIPS 연계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성공패키지')

제도 개요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New)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성(Expandable)과 미래 성장성(Star)을 갖춘 Start-up의 성장을 지원하는 육성(promoTion) 플랫폼

지원 내용

○ Pre-NEST 교육

- NEST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기본교육,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업계획서 Level-up 등 창업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 엑셀러레이팅

- 초기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복합 지원 (사업계획 진단, 성장전략 코디네이팅, 시장 포지셔닝, IR스토리텔링 역량 강화, VC라운드테이블 등)

○ 금융지원

- NEST기업 엑셀러레이팅 수행 평가등급에 따라 신용보증 지원, 투자 지원(신보 직접 투자, 민간 엑셀러레이터 Seed 투자, 협업기관 공동투자) 및 신용보험 가입시 보험료할인 등 우대

○ 성장지원

- 거래소시장별 맞춤형 IPO 지원, M&A컨설팅 및 M&A보증을 통한 사업확장 및 회수전략 지원,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기술자문 전문 컨설팅 지원

신청·접수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odit.co.kr) 대상기업 공모시
신청·접수 (상·하반기 연 2회 공모)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가정신, 기술성 및 개발능력, 지속성장가능성, 제품·서비스 경쟁력, 사업화가능성 등

제출 서류

지원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4.0창업부 : 053-430-4364
- 신용보증기금 1588-6565(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9

잡매칭(Job Matching)

|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신보 거래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자리지원 서비스입니다.

- 신보거래 중소기업 분류 : 좋은 일자리, 신보 스타, 유망창업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등
- 일자리지원 및 구직자pool 확보를 위해 다수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대학(희망사다리 장학생 포함), 특성화고 인력이 연계되도록 온라인 채용사이트(잡클라우드)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구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 신보 선정 좋은일자리, 신보 스타, 유망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혁신형기업 등 중소기업의 채용 정보를 상시 제공

지원 내용

- 신보가 운영하는 채용지원사이트인 잡클라우드(Job Cloud)에 채용 정보 등록 시 '워크넷' (고용노동부 채용사이트) 자동 연계
- Job Cloud를 통해 인력 채용 시 고용창출특례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용 및 보증료 할인
- 1년중 특정기간 동안 진행되는 채용 박람회 참가 시 참가비 등 전액 무료
 - 온라인 채용박람회 : 민간 포털사(예: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에 채용광고 게시 및 배너 홍보 등
 - 오프라인 채용박람회 : 면접절차 진행을 위한 부스 설치 비용 및 참가비 등 무료
- 신보 기업연수 대상기업으로 우선 선발 및 채용직원에 대한 직무 연수 제공

신청·접수

신보 홈페이지 (www.kodit.co.kr) 접속 후 '잡클라우드' 클릭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기업컨설팅부 : 053-430-4688~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10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창업단계별 맞춤형 창업교육

유망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유형 및 창업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약 6조원

* '16년 지원현황(공급) : 16,817개 업체, 5조 7,312억원 지원

지원 대상 창업 후 7년이내인 유망창업기업

* 전문자격 창업, 아이디어 창업, 기술·지식창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지원 내용 창업기업의 업력에 따라 차등 지원

- 예비창업보증 : 창업前 6개월부터 → 보증한도 10억원
- 신생기업보증 : 창업後 3년이내 → 보증한도 10~20억원
- 창업초기보증 : 창업後 3~5년이내 → 보증한도 30억원
- 창업성장보증 : 창업後 5~7년이내 → 보증한도 30억원
- 퍼스트펍권보증 : 창업後 3년이내 → 보증한도 30억원

신청·접수

- 신청기간 및 방법 : 연중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

제출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의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구 분	수집(제출)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주민등록등·초본 등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
	사업자등록증명 등	Home-Tax 서비스(국세청)
	재무제표 등	Metagate System(세무사)
	금융거래확인서	채권은행 전산연계
고객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 절차

단 계 별	처 리 내 용
신청 및 상담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자료수집 및 조사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신보 직접 수집(일부자료는 기업이 제출)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약정 및 보증서발급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퍼스트펍권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 중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핵심 창업기업을 별도로 발굴·선정하여 최대 3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각종 우대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는 제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업 력			• 창업 후 3년 이내		
대상기업			• 제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 또는 유망서비스 부문 대상 업종 영위기업 중 신보의 "창업경쟁력 평가"결과 80점 이상		
보증 한도	총한도		• 총지원 가능한도 30억원		
	Credit Line	신규설정	• 3년간 지원한도 → Min(30억원, 3년차 추정매출액×1/2)		
		연차별 한도*	Min(1년차 추정매출액, Credit Line의 4/6)	Min(2년차 추정매출액, Credit Line의 5/6)	Min(3년차 추정매출액의 1/2, Credit Line)
보증료율			0.5%p 차감	0.5%p 차감	0.5%p 차감
보증비율			100%	95%	90%
비금융지원			• 투자옵션부보증, 보증연계투자 요청시 우선 지원 • 유동화회사보증 취급시 편입·금리 우대		

* 경영목표 달성 점검 결과 '양호'시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주세요!



Q 지원대상 요건은?

A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종 류	대 상
전문자격 창업	· 전문자격증(산업인력공단 등) 보유 · 교수, 박사, 연구원(3년이상) · 제조업, 프로그램제작업 등 생산직, 전문직, 기술직 경력 10년 이상
아이디어 창업	· 창업경진대회 수상 · 지식재산권 보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추천기업
기술·지식 창업	· 기술력 높은 기업 · 지식기반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유망서비스 부문 대상 업종 영위 기업, 녹색성장산업 등

Q 유망창업기업 단계별 우대내용?

A

구 분	예비창업보증	신생기업보증	창업초기보증	창업성장보증
업 력	창업前 6개월	창업後 3년내	창업後 3~5년	창업後 5~7년
보증한도	10억원	10~20억원	30억원	30억원
보증료율	0.7%p 차감	0.4%p 차감	0.3%p 차감	0.3%p 차감
보증비율	100%	95~100%	95%	90%

2-11

컨설팅

I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분야에 대한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거나,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20억원 내외(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 '17년 지원규모(10월말) : 경영·특화·신용관리컨설팅 총 1,372건

지원 대상

- 신보의 보증·투자·보험기업 및 경영지도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연간 컨설팅 비용 지원금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기업
- ✓ 각종 인증, 투자유치, 사업계획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

지원 내용

- 경영컨설팅
 -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재무·회계, 생산관리, 정보화(IT) 분야에 대한 컨설팅
- 특화컨설팅
 - 주식상장(PO), M&A, 해외진출, 기술개발, 기업승계, 지식재산(IP) 등 분야에 대한 컨설팅
- 관계형컨설팅
 - 신용관리컨설팅(CRC 컨설팅), 거래처위험관리컨설팅(CRM 컨설팅), BIR서비스 등
 - * CRC(Credit Risk Control) 컨설팅 : 기업의 신용위험관리 능력을 배양

- * CRM(Customer Risk Management) 컨설팅 : 기업의 거래처 위험관리 능력을 배양
- * BIR(Business Insight Report)서비스 : 영업현장에서 지속적인 고객 접촉을 통해 파악한 계량·비계량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진단 및 애로해결 지원

구 분	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
경영·특화컨설팅	60 ~ 100%	최대 10백만원
관계형컨설팅	100%	최대 1백만원

신청·접수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에서 다운받은 컨설팅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컨설팅 분야, 지원 필요성 등 검토
 - 신청순서, 신청사유, 애로사항,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 순서 결정

제출 서류

컨설팅 신청서 및 고객정보 활용동의서 등

처리 절차**문의처**

-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 전국 단일전화 1588-656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3부 기술보증기금

3-1 2018년 보증지원계획(총괄)	122
3-2 기술보증	123
3-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126
3-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129
3-5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제도	132
3-6 신성장산업 지원 제도	135
3-7 R&D 보증	138
3-8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141
3-9 지식재산(IP) 보증	144
3-10 기후기술보증	147
3-11 문화산업완성보증	150
3-12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154
3-13 기술평가	158
3-14 벤처확인평가	161
3-15 이노비즈 인증평가	164
3-16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166
3-17 보증연계투자	169
3-18 투자옵션부보증	171
3-19 재창업재기지원보증제도	174

3-1

2018년 보증지원계획(총괄)

|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증지원

'18년도 총보증 규모는 21.1조원으로, 신규보증 5조원을 포함하여 총 20.2조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규모 2018년 21.1조원

* '17년 10월말 현재 보증잔액 : 22.1조

○ 전체 보증규모 및 보증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0월)		
보증잔액	208,000	220,527	211,000	3,000
기술보증	202,000	214,789	206,000	4,000
유동화회사보증	6,000	5,738	5,000	△1,000
보증지원	200,000	188,633	202,000	2,000
기술보증	197,000	186,900	200,000	3,000
신규지원	50,000	46,164	50,000	0
유동화회사보증	3,000	1,733	2,000	△1,000

○ 중점지원분야(창업·R&D·일자리창출 보증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0월)		
기술창업기업 보증	75,000	75,026	77,000	2,000
R&D보증	40,000	42,148	48,000	8,000
신성장산업보증	-	-	35,000	신설
일자리창출기업보증	43,000	53,531	47,000	4,000

문 의 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051-606-7472

3-2

기술보증

| 기술력 보유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지원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2018년 기술보증 잔액 20.6조원으로 운용(유동화회사보증 0.5조원 별도)

* '17년 10월말 현재 기술보증 잔액 : 21.5조원 (유동화회사보증 0.6조원 제외)

지원 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대출보증 : 금융기관 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 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주세요!



Q 기금에서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A 기금에서 직접 수집하는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3-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미래 성장기반 육성 및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 우대지원

우수기술 보유 예비창업자의 창업자금 조달 가능성을 창업준비단계에서 예측가능토록 하여 “준비된 창업”을 통한 성공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2018년 1,300억원

* '17년 지원 계획 : 1,200억원

지원 대상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전문가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거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예비창업자 등

지원 내용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 창업전 보유 기술·아이디어를 평가하여 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결정 및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창업멘토링을 지원해주고, 창업즉시 창업자금 지원, 보증지원 후 사후관리 멘토링을 통해 사업성과, 애로사항 등 점검 ▶ 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보증비율 우대(전액보증) • 보증료 0.7% 감면 • 1억원 이하 기술 평가료 면제 등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제출 서류

구 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기초로 아이디어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창업자금 지원 규모 결정
↓		
창업멘토링	영업점 평가담당자	→ 창업자금 지원이 결정된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절차 등 창업정보 제공
↓		
창업	예비창업자	
↓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 창업기업의 업종, 기술사업계획 등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지원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으로 창업자금 지원 결정후 언제까지 창업해야 당초 결정한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창업자금 지원 결정후 6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만 당초 결정된 창업자금을 보증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3-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 미래 성장기반 육성 및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 우대지원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유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2018년 7조 7,000억원

* '17년 지원 계획 : 7조 5,000억원

지원 대상

분 야	대 상 기 업
맞춤형 창업기업보증	창업후 7년 이내인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맞춤형 창업 성장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창업후 5년 이내로 실제경영자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맞춤형 창업기업보증	▶ 특성별로 구분된 4대 창업육성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채력저창업,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 보증비율 우대(90%~100%) • 보증료 0.3%~0.4%p 감면 (1억원이내 1.0%고정) • 지식재산권 건당 운전자금 추가한도가산(2억원 이내) - 특히 30백만원 등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우대지원	• 보증비율 우대(95%~100%) • 보증료 0.3% 고정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E제공행정정보·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맞춤형창업성장의 4대 창업육성분야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지식문화창업	혁신형 지식서비스업,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챌린저 창업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전문가 포함)인 제조업 영위기업
	기술경력·뿌리창업	대표자가 만40~59세 이하로서 동업계 중사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영위기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첨단산업) 첨단기술, 제품 확인기업,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기업,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유관기관 선정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및 선정기업

3-5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제도

|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지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신성장 산업 등에 중점 보증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제도

지원 규모

2018년 일자리창출기업보증 4.7조원

* '17년 지원 계획 : 4조 3,000억원

지원 대상

고용유형별로 특화 지원

구 분	분 야	대 상 기 업
고용창출 (Track1)	점핑잡 (Jumping-Job)	▶ 1년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1년전 대비 고용인원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
	쉐어링잡 (Sharing-Job)	▶ (정규직전환) 최근 1년 이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2명 이상 전환한 기업 ▶ (여성고용)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 ▶ (장애인고용)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한 기업 ▶ (마이스터고 등 고용)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추가로 고용한 기업 ▶ (지방고용) 주사업장이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에 소재하고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고용유지 (Track2)	베스트잡 (Best-Job)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다만, 1년전 대비 고용인원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대사항
고용창출 (Track1)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고용창출 한도가산방식) ▶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과 공장신축, 설비도입 등 시설자금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4%p 감면
고용유지 (Track2)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 인건비 증가금액에 대해 운전자금 3억원까지 지원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주세요!



Q 고용창출 한도가산의 경우 신규고용인력 1인당 지원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운전자금 한도가산은 최고 5억원 이내로 하며, 신규 고용인력의 나이,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결정됩니다.

구분	1인당 지원금액
만 39세 이하 중급기술인력 이상	50백만원
만 30세 이하 초급기술인력	40백만원
그 밖의 인력	30백만원

3-6

신성장산업 지원 제도

|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 신성장산업 중점 육성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기업 육성을 위해 신성장 산업혁명 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을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2018년 3조 5,000억원

지원 대상

분 야	대 상 기 업
인더스트리4.0 퍼스트보증	▶ IoT, AI,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 • (핵심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 (일반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4.0스마트팩토리 보증	▶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 및 공급기업 •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신청기업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에 납품이력 보유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인더스트리4.0 퍼스트보증	▶ 기존 상품 대비 지원조건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핵심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	• 보증비율 : 핵심기업 95%, 일반기업 90% • 보증료 : 핵심기업 0.3%p, 일반기업 0.2%p 감면
4.0스마트팩토리 보증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전과정(신청 및 선정단계)에서 '공급기업'과 '참여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	• 보증비율 우대(90%) • 보증료 0.2%p 감면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가터제공행정정보·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주세요!



Q 신성장산업의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신성장산업'이란 정부에서 육성하고자 발표하거나, 시장수요와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선정한 것으로, '신성장 공동기준'에서 정하는 '9대 테마, 45개 분야, 275개 품목'을 말합니다.

* 9대 테마 : 첨단제조·자동화,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문화·콘텐츠 테마

3-7 R&D 보증

I 중소기업 R&D 투자 활성화

정부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자체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R&D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R&D를 개발·사업화준비·사업화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과 소요자금 사정기준을 적용하여 R&D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44,000억원

* '17. 10월 현재 지원현황 : 42,148억원

지원 대상 R&D 개발 및 개발된 과제에 사업화를 추진중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R&D과제의 개발, 사업화 준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개발단계 및 사업화준비단계자금

▷ R&D 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발 단계	• (대상과제) 신청일 현재 2년 이내에 개발이 종료되는 과제 • 대상자금 - (창업자금) 개업비, 창업비, 신주발행비, 법인설립비용 등 - (기술개발자금) 인건비 등 자체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용 기자재 구입비, 기술도입비, 시험생산시설 건설·운전비 등
사업화 준비 단계	• (대상과제) 신청기술이 개발완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과제 • 대상자금 - 디자인, 금형(목형), 재료비, 성능인증 등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화단계자금

▷ 개발성공과제의 KTRS(KTRS-SM)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등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화 단계	- 대상과제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자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지원 R&D성공과제, 기업이 자체수행한 과제로서 'R&D과제성공판정표'에 의해 성공판정 받은 과제 또는 최근 5년 이내 공공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과제 - 대상자금 개발완료 과제의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신청·접수

'18.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 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대출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A 금융거래확인서를 대상으로 동 확인서의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용어설명

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평가표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으로, 기술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 경영환경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R&D평가표 : R&D개발과제기술의 개발성공가능성, 사업화성공가능성, 부실가능성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3-8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 특허권의 사업화 촉진보증지원

특허청과의 「우수특허기술 사업화지원 협약」에 의해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금융을 지원 합니다.

지원 규모

특허권의 기술평가금액 이내(업체당 10억원)

* '17. 10월 현재 지원현황 : 923건, 1,894억원

지원 대상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이상인 기업

* 특허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기업은 법인이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포함)인 경우에 한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 지원

- 특허청의 기술평가수수료 지원결정시 5백만원 지원
- 신청 특허기술의 사업화와 관련된 다음 운전자금
 - ▷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기술개발자금)
 - ▷ 시제품 제작, 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자금(시장개척자금)
 - ▷ 제품양산 또는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제품양산 및 판매자금)
- 창업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기술형창업기업)에 포함되어 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 활용 가능

신청·접수

'18.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주세요!



Q 특허출원중인 경우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등록된 특허권만 보증 대상이며, 이는 보증취급과 동시에 반드시 담보(근질권) 취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9

지식재산(IP) 보증

| 지식재산(IP)의 사업화지원

우수 지식재산(IP)의 창업·인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로, 등록된 지식재산(IP) 및 미등록 지식재산(IP)에 대해 기술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가치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가치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화 또는 인수자금을 보증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6,500억원

* '17. 10월 현재 지원현황 : 6,437억원

지원 대상

지식재산(IP) 기반 창업·인수·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 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 등록된 지식재산(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및 미등록 지식재산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 지원

○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전용실시권자 포함)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 *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완료', '양산준비', '양산' 단계에 있는 지식재산
- ▷ 보증비율 (90%~95%), 보증료(0.3%p~0.5%p 감면) 등 우대 지원
- ▷ 금융기관(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평가료 지원

○ 지식재산(IP) 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하는 기업에 지식재산(IP) 인수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지원범위 :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 보증비율 (95%), 보증료(0.3%p 감면) 등 우대 지원

○ 창업후 7년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기술형창업기업)에 포함되어 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 활용 가능

신청·접수

'18.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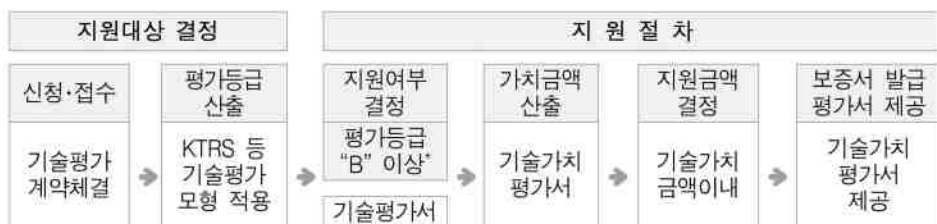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지식재산(IP) 평가보증의 지원대상인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개발 진척도가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나요?

A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 완료', '양산준비' 또는 '양산' 단계에 있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용어설명

지식재산(IP) 보증 대상기술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저작권	저작권	문학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인접권	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 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신상표권 등	프랜차이즈, 캐릭터, 인터넷도메인네임, 새로운상표(색채상표, 입체상표, 소리, 냄새상표)
- 그 밖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한 미등록 지식재산(IP)		

3-10

기후기술보증

I 기후기술기업 중점지원

파리협약에 의한 신기후체제 발효('16.11)에 따라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등 관련 국가전략에 부합하고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기여할 기후기술 중소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2018년 3,000억원

* '17. 10월 현재 지원현황 : 676억원 ('17.07.13 신규시행)

지원 대상

기후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신청기술이 기후기술이어야 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R&D과제의 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개발 및 사업화 준비자금은 R&D보증 지원내용과 동일하게 지원
 - ▷ R&D보증제도와 동일하게 R&D 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이면, 같은 기업당 기금 보증금액 5억 원 이하, 본건 보증신청 금액 2억원 이하의 경우 경제성 분석 생략
- 사업화 자금
 - ▷ R&D 개발성공과제 사업화의 경우 CTRS(Climate Technology Rating System) 평가표, 기타 기후기술 사업화의 경우 KTRS 평가표 등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등

구 분	주 요 내 용
R&D 사업화 단계	- 대상과제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자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지원 기술품 R&D 성공과제, 기업이 자체수행한 과제로서 'R&D과제성공판정표'에 의해 성공판정 받은 과제 또는 최근 5년 이내 공공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과제 - 대상자금 개발완료 과제의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기타 사업화	- 대상기술 기후기술 :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기후변화 적응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 대상자금 기후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신청·접수

'18.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 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후기술판별 및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주세요!



Q 기후기술은 무엇인가요?

A 신에너지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과 같이 온실가스 발생이나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과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회수·처리·자원 활용하는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제반 기술과 기법으로서, 기후변화 감시, 관측, 리스크 평가, 피해 저감 기술 등 '기후변화 적응기술'을 말합니다.

용어설명

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평가표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으로, 기술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 경영환경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R&D평가표 : R&D개발과제기술의 개발성공가능성, 사업화성공가능성, 부실가능성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CTRS평가표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기후기술(제품)분야 중소벤처 기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로 구성된 평가표

3-11

문화산업완성보증

|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2018년 1,000억원

* '17년 10월말 현재 지원현황 : 129개 콘텐츠에 730억원 보증 지원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 문화상품은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에 한함
- 대상기업 신청요건 : 선판매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화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선판매금액 이내	•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금액 초과	•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
1억원 이하	•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 * 자금조달 확정 :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등
- * 선판매금액 :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프로젝트당 최대 지원한도 3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제작비의 50%이상(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 이상) 자금조달 확정된 경우에는 ① ~ ③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 금액 결정

- ① 보증신청금액
- ② 제작비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반영)
- ③ 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 ④ 선판매금액 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세액 제외)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최저 20% ~ 최고 70%)

기술사업평가등급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A 이상	60% 이내	- 고부가서비스관련 문화콘텐츠, 한류 콘텐츠 : +10% - 채권양수도계약 제3자 대항요건 충족 : -10%
BBB	50% 이내	
BB	40% 이내	
B	30% 이내	

* 고부가콘텐츠 :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융합콘텐츠

* 한류콘텐츠 : 수출계약서 등에 의거 수출을 전제로 하는 문화콘텐츠

- (대출취급 금융기관)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신청·접수

연중 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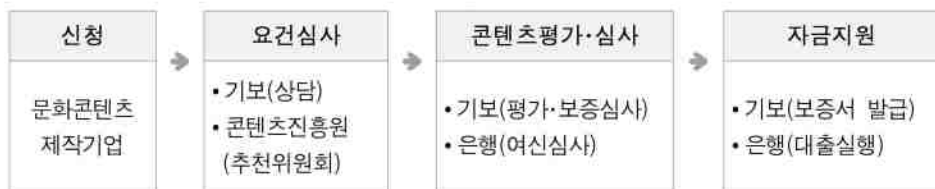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콘텐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 우수성, 제작완료 및 판매가능성, 보증해지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제작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

제출 서류

- 완성보증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신용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법인, 대표자, 실제경영자)
- 평가대상 콘텐츠 기획서(시나리오, 제작계획서 등)
- 총제작비 조달계획서 등
- 선판매계약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처리 절차



* 추천위원회 생략 대상의 경우 기보에 직접 신청 가능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02-3215-5993)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031-725-7852)
- 한국콘텐츠진흥원 금융투자지원팀(02-6441-3051)

아래주세요!



Q 완성보증제도의 시행근거와 보증재원의 조달방법은 무엇인가요?

A 완성보증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문화관광부와 금융기관이 재원을 출연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지원하고 있습니다.

Q 선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A 문화콘텐츠의 판매계약 체결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선판매계약이 없더라도 완성보증 신청·접수하여 보증심사하고, 판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보증취급 가능합니다.

→ 용어설명

선판매계약서 : 제작사와 구매자(배급사, 퍼블리셔 등)간 제작완성후 인도 예정인 문화콘텐츠에 대한 판매조건 등이 명시된 문서로서, 문화콘텐츠 특성에 따라 구체적 명칭은 달리 운용
(ex) 배급계약서, 퍼블리싱계약서, 티켓판매대행계약서, 방송물납품계약서 등

3-12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 프로젝트성 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 용역 수행 기업이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공급을 완료하도록 필요자금에 대해 보증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2018년 1,000억원

* '17년 10월말 현재 지원현황 : 165개 업체에 668억원 보증 지원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를 제작코자 하는 지식·문화산업 영위기업

○ 대상자금

-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성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획·제작·마케팅 비용 등
- * 용역공급계약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 보증지원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같은 기업당 최고 70억원 이내(유통공급계약 체결 이전에는 최대 1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총제작비의 60%이내에서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적용

- ① 보증신청금액
- ② 총제작비 지원비율을 적용한 운전자금 보증지원가능금액
- ③ 총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 ④ 용역공급계약금액 중 선수금등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율

기술사업 평가등급	유통공급계약前 지원		유통계약後 지원
	총제작비 지원비율	보증지원 가능금액	총제작비 지원비율
A 이상	20% 이내	10억원	60% 이내
BBB		8억원	50% 이내
BB		6억원	40% 이내
B 이하		2억원	30% 이내

- (대출취급 금융기관) 제1금융권

신청·접수 연중 수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콘텐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 우수성, 제작완료 및 판매가능성, 보증해지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제작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 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서식
	준비 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콘텐츠제작기획서 (시나리오, 제작계획서 등)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 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 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 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 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보증진행절차 안내
기술사업 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고객 준비서류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 보증심사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프로젝트 수행능력,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보증서발급	영업점 평가담당자	▶ 보증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Q 제3자와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획단계에서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용역공급계약 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지식서비스산업 :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한 산업

(ex)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디자인업, 광고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문화콘텐츠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통계청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등에 의한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영위 산업

(ex)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공연기획업 등

3-13

기술평가

| 무형의 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로써,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으로 분류하며 평가목적,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 기술을 보유한자(승계인 또는 전용실시권자 포함)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평가 대상

-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
- 신기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등

평가신청 제한기업

- ✓ 기술의 권리 등에 관하여 분쟁중에 있는 경우 등

지원 내용

종 류	주 요 내 용
기술가치평가	•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 기술의 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 • 기술관련 사업의 이전, 양수도 등을 위한 평가 • 기타 기술 또는 기술사업 관련 가치평가

종 류	주 요 내 용
기술사업타당성 평가	•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기업 선정 평가 • 발명의 사업성 평가 • 금융기관 등의 여신심사용 기술평가 • 기술이전·거래 등을 위한 타당성 평가 • R&D 평가 • 보증지원을 위한 평가
종합기술평가	•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용 평가 • 기술신용등급 산출을 위한 평가(TCB) •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평가 • 주식가치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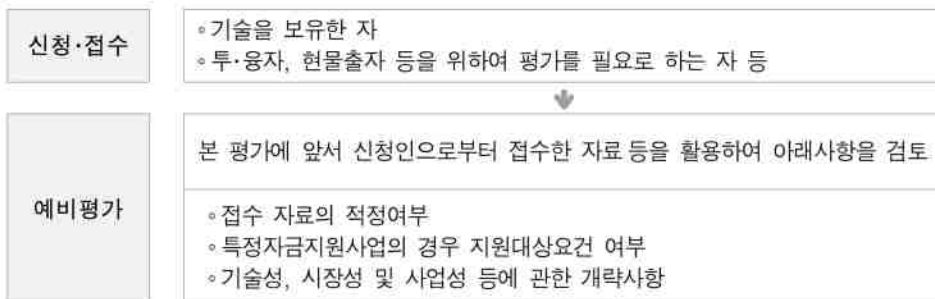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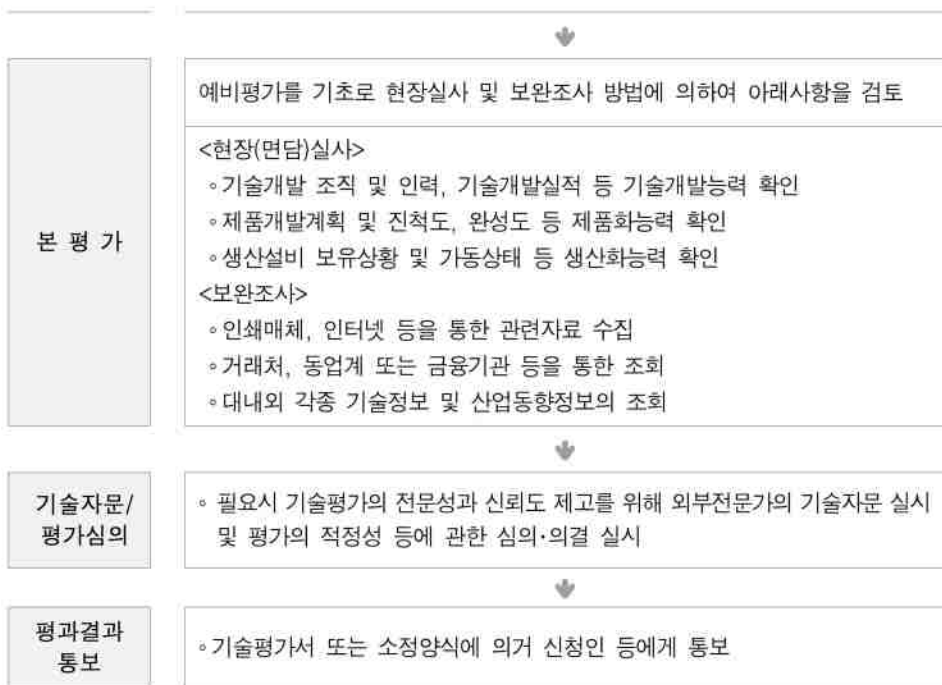
'18.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신청 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 기술사업계획서(기술가치평가용, R&D평가용, 기타목적용)
- 기타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기술가치평가 :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

종합기술평가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의 기술성과 사업타당성을 평가

3-14

벤처확인평가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평가

기술보증기금은 국내 기술평가 선도기관으로서 벤처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06.6월부터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 대상

벤처확인평가유형 및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현재 벤처확인제도 개편 중으로 유형 및 평가기관 등이 변동될 수 있음(시행시기 미정)

벤처유형 및 요건

벤처유형	벤 처 요 건
기술평가 보증기업	▷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 보증·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창업후 1년미만은 4천만원 이상) ▷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일 것 (창업후 1년미만 기업과 보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 보증이 불필요한 기업은 보증지원이 가능한 보증승인금액만으로도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음.
연구개발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 신청일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일 것 (창업후 3년 미경과 기업과 매출액이 없는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기술성,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 벤처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평가신청 제한기업

✓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별표1)

평가료 및 수수료

구 분	벤처확인 평가료	벤처확인 수수료
기술평가보증기업	20만원	10만원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		

* 부가가치세 별도, 기술평가보증 신규취급후 6개월내 신청시에는 확인평가료 면제

신청·접수

'18. 1. 1 ~ 12. 31 상시 접수

-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기술사업계획서, 연구개발비 산정표 등

* 신청양식은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벤처인(www.venturein.or.kr) : 1577-027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주세요!



Q

기존 벤처기업이 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시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실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 익일 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별표 1]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55909	그외 기타 숙박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68121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골프장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게임블링 및 배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96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3-15 이노비즈 인증평가

기술혁신형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에 의한 평가(중기부 공고)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이노비즈 기업에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자가진단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신청 제한기업

- ✓ 이노비즈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별표2)
-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설립후 3년이상이고 정상 가동중인 기업
선정절차	▶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시스템에 의거 평가 실시
선정기준	▶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평가료 및 수수료

- 신규신청 70만원, 유효기간 연장 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Inno-Biz 인증평가와 Inno-Biz 금융지원협약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Inno-Biz 금융지원협약보증에 관한 기술평가료는 면제

신청·접수

'18. 1. 1 ~ 12. 31 상시 접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서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신청 서류

기술사업계획서, 각종 인증서 및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이노비즈넷 홈페이지(www.innobiz.net)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처리 절차**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
(이노비즈넷)

신청기업



현장평가 및 평가결과 등록

기술보증기금



Inno-Biz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 031-628-968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Q**

이노비즈 심사시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A

Inno-Biz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차 온라인 자가진단 후 2차 현장평가를 통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Inno-Biz기업으로 선정됩니다.

2차 현장평가에서는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자체 평가했던 내용에 대하여 기업이 사실대로 평가를 했는지의 신뢰성 유무를 확인하며,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에 대한 현황과 보유기술에 대한 혁신성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므로 심사기업은 이에 따른 검증자료와 기술에 대한 일련의 서류 및 설명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3-16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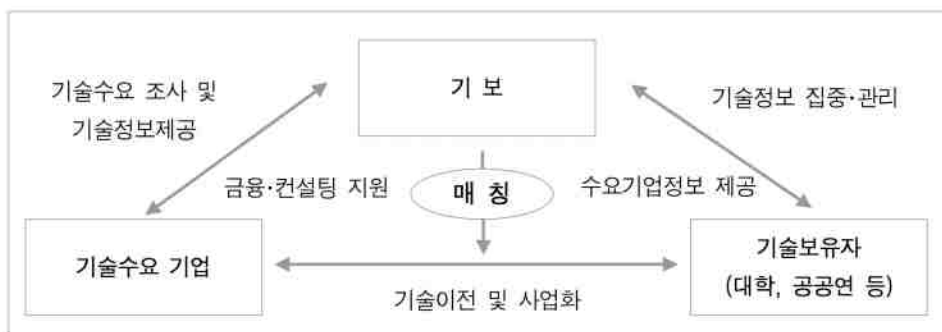
I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자하는 기업에 관련 산업재산권 등의 정보 제공, 기술보유자-기술수요자 간 거래 알선, 협상 및 기술사업화에 필요 자금을 기술금융을 통해 One-stop으로 지원

지원 대상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R&D성과 등 우수기술을 도입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 기술수요 진단 및 필요기술 매칭지원
- 공공연구기관 및 신청기업 간 기술이전 중개지원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 및 컨설팅 지원

신청·접수

연중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기술융합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위한 포털인 테크브릿지(URL: tb.kibo.or.kr)를 통해 신청

처리 절차



○ 상담 및 신청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 전국 모든 영업점(기술융합센터 포함) 또는 테크브릿지(tb.kibo.or.kr)를 통해 신청

○ 기술수요조사, 예비검토 (기보 기술융합센터)

- * 도입희망기술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거래조건, 기술거래 성사가능성 등 검토

○ 기술탐색 (기보 기술융합센터, 공공연구기관)

- * 기업·기술매칭 시스템인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를 이용하여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맞춤기술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 제공

○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 (신청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기보 기술융합센터, 공공연구기관)

- * 협상전략 수립 후 기술이전조건(거래금액, 계약형태 등)에 대해 협상·중재

○ 자금지원 (기보 기술융합센터)

- * IP인수보증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료, 추가개발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사후관리, 컨설팅 (기보)

- * 기술경영지도 등을 통해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지원

제출 서류

- 기술이전 신청서
- 기타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IP인수보증을 위한 서류(필요시 별도 안내)
 -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용어설명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 : 키워드 추출 및 유사도 측정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맞춤형으로 탐색하여 매칭하는 IT분석 모듈

IP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IP인수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자금을 Package방식으로 단계별 보증지원하는 제도

3-17 보증연계투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하는 보증·투자 복합상품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창업초기·R&D·미래성장 부문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2018년 307억원

* '17년 10월말 현재 지원현황 : 230원

지원 대상 보증 거래기업 또는 보증과 투자를 함께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 단, R&D기업,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력제한 적용 배제
- 투자용 기술평가등급 T15등급 이상
 - * 단,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투자와 보증의 통합한도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등급 T14등급 이상이어야 충족
- 법상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지원 내용

- 투자종류 :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투자한도 : 업체당 30억원(보증금액 2배 이내, 보증금액 포함 100억원)

신청·접수

'18.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창업성장부(투자팀) 및 각 영업점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 1544-1120

3-18

투자옵션부보증

|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투자로 전환될 수 있는 보증을 지원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보증부대출로 Seed Money를 우선 제공한 후, 일정시점 이후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기금의 선택으로 보증부대출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보증입니다.

지원 규모

2018년 500억원

* '17년 10월말 현재 지원현황 : 224억원

지원 대상

설립후 5년 이내 법인기업으로서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
- 보증비율 : 전액보증(100%)으로 운용
- 보증료 : 0.5% 고정료를 적용
 - * 단, 옵션행사기한(5년) 도과 후에는 일반 보증료를 적용
- 옵션행사가격 결정 : 추정매출액에 의한 예상 주식가치를 산정하고 이와 연동하여 행사가격을 결정
- 옵션행사시기 및 방법 : 보증실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4년간 옵션 행사 가능
- 투자전환시 발행되는 신주 : 전환상환우선주

신청·접수

'18.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 1544-1120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 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 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투자옵션계약 체결)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투자옵션계약 체결 및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		
투자옵션 행사여부 심사 및 신주발행	영업점/투자팀	보증지원 기업중 투자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진행후, 승인된 기업에 대해 보증해지 및 신주발행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 1544-1120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www.kibo.or.kr

3-19

재창업재기지원보증제도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성실실패자의 재창업 지원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2018년 대출 100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로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재창업 예정인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재창업 신청전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지원 내용

경영자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 지원

○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한 상각채권 및 대지급일 또는 연체 기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의 원금은 최대 75% 감면

○ 재창업자금지원(대출보증: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대출:중소기업진흥공단)

- 대출한도 :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창업중소기업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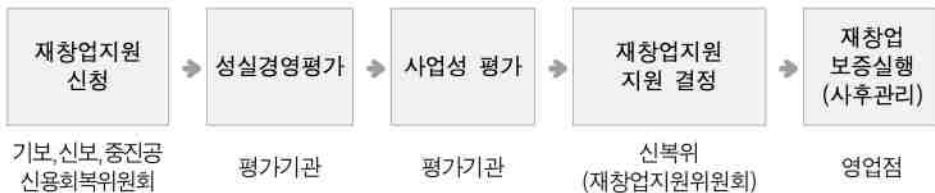
- 성실경영평가 : 도덕성평가를 위한 기업경영관련 범죄사실 등 조회하여 평가
- 사업성평가 : 사업지원 타당성 평가

제출 서류

보증신청서류,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등(자세한 내용 영업점 문의)

처리 절차

- 재창업재기지원보증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및 회생관리센터 : 1544-1120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www.kibo.or.kr



Q 신청후 평가진행시 성실경영평가 기관과 사업성 평가기관을 신청인이 지정할 수 있나요?

A 성실경영평가는 최대 채권기관(기보,신보,중진공 채무가 없을 경우는 중진공)에서 평가하며 사업성 평가기관은 기보, 신보, 중진공 및 민간평가기관(NICE, KED)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관련된 기관이 많은데 처리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채권기관의 채무조정 절차와 성실경영자를 선별하는 절차가 수반되는 지원 사업으로 처리기간은 2~3개월 가량 정도 소요됩니다,

용어설명

성실경영평가제도란 : 재기지원기관별로 운용 중이던 도덕성평가를 중기부 범죄·근로법령위반 경력조치로 성실경영평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재창업 전 기업의 부도덕성, 범죄경력 등 성실경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4부 기업은행

4-1. 2017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178
4-2. IP보유기업 보증부대출	180
4-3. IP사업화자금대출	181
4-4. IBK차세대강소기업대출	183
4-5. 기술평가기반 무보증 신용대출	185
4-6. IBK강소기업대출	186
4-7.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187
4-8. IBK문화콘텐츠대출	188
4-9.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190
4-10. IBK시설투자대출	191
4-11. IBK토지분양협약대출	193

4-1

2017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기업의 규모, 형태, 소요자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합니다.

주요 상품

구 분	주요 대출상품	상 품 개 요	비 고
우 수 기 술	IP보유기업 보증부대출	• 신보, 기보의 기술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우수 IP보유기업에 자금지원	
	IP사업화 자금대출	•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지원	
	IBK차세대강소 기업대출	• R&D과제 성공수행 기업 및 성장·기술 잠재력이 큰 중소·중견기업에게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자금지원	
	기술평가기반 무보증신용대출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동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담보부담 없이 저리로 자금 지원	
수 출 입 지 원	IBK강소기업대출	• 수출·기술·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자금 지원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대출	•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악화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문 화 콘 텐 츠	IBK문화콘텐츠 대출	•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문화 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지원	
	고부가서비스 산업 지원대출	•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영위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지원	

구 분	주요 대출상품	대 출 용 도	비 고
시 설 투 자	IBK시설투자대출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IBK토지분양협약 대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은행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산업단지 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에 대하여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또는 타행 토지분양협약대출의 대환자금을 대출	

문 의 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111

4-2

IP보유기업 보증부대출

| 우수 지식재산(IP) 보유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에게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상품 한도 2,000억원

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의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1. 기술보증기금

가.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포괄 업무협약」에 의한 지식재산(IP) 협약보증

나. 「우수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의한 특허기술가치 평가보증

2. 신용보증기금 :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의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지원 분야 운전자금 (수시로대출 포함)

대출 한도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으로 동일인당 최고 100억원 이내

대출 기간 5년 이내 (수시로대출의 경우 1년 이내)

담보 조건 보증특약이 부여된 90% 이상 부분신용보증서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5205

4-3

IP사업화자금대출

| 기업이 보유한 IP를 담보로 자금지원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상품 한도 1,500억원

지원 대상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받은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점검항목' 및 '기술등급'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지원대상 점검항목)

- ▶ 기업은행 신용평가등급 BBB+ 등급 이상 기업
- ▶ 조기경보기업(예비주의, 주의, 경보)이 아닌 기업
- ▶ 부채비율 400% 미만 기업
- ▶ 최근 2년간 계속적인 결손을 시현하지 않은 기업
- ▶ 총자산 5억원 이상 기업
-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배 이상인 기업
- ▶ 전년도 또는 분기별 과거 1년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

－ (기술등급) 기업은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의 TCB평가서 상 기술등급 T4 이상 판정 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 한도

가. 운전자금 :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당행 신용평가등급' 및 'TCB평가서 상 기술등급'에 따라 차등 운용.

나. 시설자금 :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 이내

대출 기간 운전자금(최대 5년), 시설자금(최대 15년)

* 단,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서 상 내용연수 이내에서 가능

담보 조건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의 40%를 주담보로 인정

우대 사항

- 특허기술 가치평가 비용(500만원)지원
- 최대 연 1.0%p 이내 추가 금리감면 가능

문의 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5205

4-4

IBK차세대강소기업대출

I R&D과제 성공기업 및 기술·성장잠재력 보유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자금관리 및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R&D과제 성공기업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상품 한도 6,000억원

지원 대상

- ◆ IBK차세대강소기업 : 기업은행의 'IBK차세대강소기업' 선정기업
- ◆ 성공기업 : '전문평가기관'이 추천한 R&D 성공기업, '가치·기술평가등급 우수기업', 전년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 USD 100,000불 이상 기업
- ◆ 일반기업 : IBK기업은행에서 정한 '기술력 인정기업'

* 전문평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평가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합회

** '가치·기술평가등급 우수기업' : 신용보증기금의 기업가치평가등급 FV(firm value) 1~2등급,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BB 이상, 당행 신용등급 BBB 이상이면서 당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등급 T4 이상

지원 분야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 한도

구 분	운전자금	시설자금
IBK차세대강소기업	동일인당 15억원	동일인당 100억원
성공기업	동일인당 10억원	동일인당 30억원
일반기업		

대출 기간 운전자금(최대 5년), 시설자금(최대 15년)

우대 사항

구 분	IBK차세대강소기업	성공기업	일반기업
금리감면	연 1.0%p 이내	연 0.5%p 이내	연 0.3%p 이내
소요운전자금	매출실적이 급격히 신장되거나 금차 기술사업화로 매출신장 예상 시 연간 추정매출액의 1/2 이내로 운용		
소요시설자금	100% 범위 내 운용	90% 범위 내 운용	

문 의 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5205

4-5

기술평가기반 무보증 신용대출

| 우수기술 보유창업기업에 무보증·무담보로 대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동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담보부담 없이 저리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상품 한도 2,000억원 (동일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대상 창업 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기술등급 제공기관 기술신용평가기관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등급 BBB 이상	기술등급 T4 이상
----------------------------------	------------------------	---------------

■ 창업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

-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②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창업일

- ① 법인기업이면 법인설립등기일
- ② 개인기업이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등록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7년 이상 개인기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단순 전환한 기업
- ✓ 휴·폐업 또는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지원 분야 은전자금

담보 조건 해당사항 없음 (무보증·무담보 조건)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5205

4-6

IBK강소기업대출

| 유관기관과 연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수출·기술·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

부 분	대 상 기 업
수 출	1. 수출실적이 USD 1,000,000불(연간) 이상인 수출기업 2. 상기 요건 충족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수출강소기업(IBK),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대상 기업(중기부), 코스닥 라이징스타(KRX), 글로벌 전문기업(산업부), AEO 공인 획득기업(관세청),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지원대상 기업(KOTRA)
기 술	IBK강소기업 등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강소기업'(IBK)

지원 분야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 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로 운용
- (시설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로 운용

문 의 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4

4-7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I 수출입 중소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악화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환율변동으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자금용도	수입결제자금, 수출물품의 원자재구입 및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등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기간	1년 이내. 다만, 분할상환식 신용보증서(부분신용보증서 포함) 담보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정한 대출기간 범위 이내
대출한도	동일인당 5억원 이내(본부 승인여신은 승인금액 범위 내)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4

4-8

IBK문화콘텐츠대출

|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입니다.

1. IBK문화콘텐츠 특례보증부대출

지원 대상 '문화콘텐츠 업무협약에 의한 문화콘텐츠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신용보증서(90% 이상 부분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 규모 1,600억원(보증지원 한도 기준)

판매 기간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대출 한도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 범위 내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2. IBK문화콘텐츠 완성보증부대출

지원 대상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천위원회로부터 용자추천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문화산업완성보증서(95% 부분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수시로대출 제외)

대출 기간 신용보증서 보증기간 범위 내

대출 한도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으로 최대 50억원 이내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 ✓ 보증비율 : 95% 부분신용보증서
- ✓ 보증료 : 0.2%p 우대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4

4-9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 고부가서비스산업 영위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산업 영위 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과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중 고부가서비스 용역공급(프로젝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 주요내용

*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도

용역공급(프로젝트)계약 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을 보증하는 제도

☞ 프로젝트계약 후 최종 결제대금(보통 계약대금의 50~60%)을 계약완수 시점에 지급 받는 시장관행(집중지불방식 heavy tail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수요와 대금결제 간의 금융 갭(gap) 해소

지원 분야

운전자금 (수시로대출 제외)

대출 기간

1년 (기간연장 시 최대 8년 이내)

대출 한도

신용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

담보 조건

담보의 필요 : 기술보증기금 85% 이상 신용보증서 담보

상환 방법

일시상환

* 보증서상 우선상환 보증특약 문구 부여되는 경우 프로젝트 완성 후 수령하는 수익금으로 대출금이 자동 상환

문의 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5205

4-10

IBK시설투자대출

I 시설 취득시 소요자금 지원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

지원 내용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부지자금, 사업장매입자금, 경락부동산자금, 건물자금, 기계자금, 수입기계자금, 사업장임차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사업장부지자금 : 자가사업장 마련을 위하여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 착공이 가능한 부지구입(분양포함)자금(토지정리비 및 토지조성비 포함)
- 사업장매입자금 : 기존 사업장의 매입자금 및 건설·분양중인 사업장(아파트형공장 포함)이 분양자금
- 경락부동산자금 : 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 경매(공매 포함), 부동산(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 포함) 매입자금
- 건물자금 : 건물(구축물 포함)의 신축 및 증·개축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선 또는 변경 등을 위한 개·보수자금
- 기계자금 : 기계자금(중고 기계기구 포함), 설비 및 준부동산의 구입 및 설치자금

- 수입기계자금 : 국외에서 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을 신용장방식(D/P, D/A포함) 또는 송금 방식으로 수입·결제하고자 하는 자금. 다만, 수출입공고에서 관련부처장관이 수입제한품목으로 고시한 품목은 제외
- 사업장임차자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임차(대출취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임차 사업장 입주가 가능한 경우를 말함)하는 자금

용자 조건

- 용자범위 : 소요시설자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15년 (단, 사업장임차자금은 3년 이내에서 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4-11

IBK토지분양협약대출

I 토지분양 관련 소요자금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은행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산업단지 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에 대하여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또는 타행 토지분양협약대출의 대환자금을 대출하는 여신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가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전매포함)받고, 총 분양금액(계약금 포함)중 분양기관별 소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여 동 분양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중소·중견·개인기업(예비창업자)

대출 한도

별도 한도제한 없음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대출과목	• 기업 :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일반시설자금대출
대출기간	• 기업 : 15년 이내 * 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80%이내로 분양기관 추천서상 추천금액 이내 •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본부 승인금액 이내

유의 사항

IBK기업은행과 토지분양협약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를 제외하고는 토지분양협약대출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문의 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제5부 한국산업은행

5-1.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지원

195

5-2. 온렌딩대출

219

5-1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지원

I 기업금융, 국제·투자금융 및 컨설팅서비스 지원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회사채 주선 및 인수,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

○ 기업금융 지원

- ▷ 기업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신축, 매입 등을 위해 소요되는 시설자금
- ▷ 원재료 구입 등 기업의 경상적 영업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
- ▷ 재정·기금 및 보증
- ▷ 수출입금융(수입신용장 개설, 수출환어음 매입 등)

○ 국제·투자금융 지원

- ▷ 공모회사채 주선 및 인수, 국제금융 주선
- ▷ ABS 발행 및 신용공여, M&A 업무, 주식 및 주식관련채 투자, PE업무
- ▷ 파생금융상품, 인터넷 외환거래 서비스 등

○ 컨설팅서비스 지원

- ▷ 성장지원 컨설팅, 사업타당성 검토, 해외프로젝트 컨설팅, Turn-Around 컨설팅 등

대출 조건

✓ 대출기간

- * 시설자금은 계획사업의 성격, 투자회수기간, 고객요청 등을 감안하여 통상 8년 이내 (최대 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로 결정(최장 10년)
- * 운영자금은 3년(신보서 담보의 경우 5년) 이내로 운용되며, 1년 이내 단위로 연장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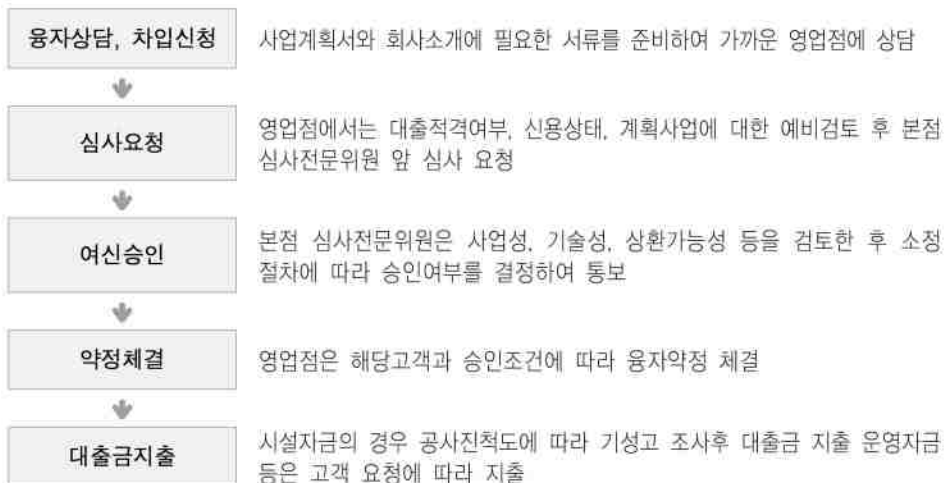
✓ 대출금리

- * 수시 고시되는 자금별, 통화별, 금리변동주기별 기준금리에 일정스프레드를 가산하여 실행금리 결정
- * 스프레드는 고객의 신용도, 거래기여도, 담보가치,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통화

- * 원화, 외화(US\$, ¥, EUR) 중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능
- * 중소기업의 대출에는 통화전환옵션이 자동 부여되고, 일정 수수료 부담후 통화전환 가능

여신 거래 절차



문 의 처

- 기업금융 지원 : 각 영업점
- 국제·투자금융 지원
 - ▷ 공모회사채 주선 및 인수 : 발행시장실
 - ▷ 국제금융 주선 : 발행시장실
 - ▷ ABS 발행 및 신용공여 : 발행시장실
 - ▷ M&A 업무 : M&A실
 - ▷ 주식 및 주식관련채 투자 : 벤처금융실
 - ▷ Private Equity 업무 : 사모펀드실
 - ▷ 파생금융상품 : 금융공학실
 - ▷ 인터넷 외환거래 서비스 : 금융공학실
- 컨설팅서비스 지원 : 컨설팅실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

한국산업은행 주요 상품안내

I. 기업금융상품

1. 시설자금 상품

□ 일반시설자금

용 도	▶ 일반시설 투자 ▪ 영업용 토지 및 건물 구입자금 ▪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자금 ▪ 기존시설의 개보수 자금 ▪ 타금융기관 상환용 시설자금 ▶ 기술개발자금 ▪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 자금 ▶ 특수용도 시설자금 ▪ 해외 직접투자자금 ▪ 공장(사업장) 인수자금(경락자금 포함) ▪ 기업인수를 위한 주식인수자금
대출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대출기간	▶ 10년 이내 (거치기간 최대 3년 이내 포함)
대출형식	▶ 일반대출, 사모사채인수
대출금리 (기준금리+스프레드)	▶ 기준금리 ▪ 원화 : CD 또는 산금채유통수익률 ▪ US\$, ¥, Euro : LIBOR

2. 운영자금 상품

□ 일반운영자금

대출대상	▶ 기업의 정상적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대출기간	▶ 3년 이내(신보서 담보의 경우 5년 이내) ▪ 단, 만기일시상환방식은 1년 이내 단위로 연장가능
대출형식	▶ 일반대출, 사모사채인수
대출한도	▶ 1회전 소요자금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타 금융기관 운영자금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 ▪ 단, 당행 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기업은 (추정매출액- 감가상각비)의 50% 적용가능

□ 단기운영자금

구 분	약 정 기 간 (개별대출기간)	대 출 대 상
당좌대월	2년 이내	▶ 신용 및 거래상태가 양호한 당좌예금 거래고객
어음할인	2년 이내 (대기업 180일, 중소기업 1년이내)	▶ 실제 상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약속어음 또는 인수필 환어음
기업구매자금 대출	2년 이내 (180일 이내)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간 거래중 사업목적에 부합 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의 구매
전자방식 외상 매출채권담보대출	2년 이내 (180일 이내)	▶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하고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판매기업(협력기업)
통장식외화 한도대출	1년 또는 2년	▶ 수출입거래 등으로 정상적인 외화수요가 있는 당행 신용 평가등급 B*이상 기업
미래채권 담보대출	2년 이내 (180일 이내)	▶ 구매기업이 추천하는 협력기업에 물품납품 이전에 생산 자금을 지원
다모아 플러스대출	2년 이내	▶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다모아 기업예금(연결계좌)에 수시 인출·상환이 가능한 원화 한도대출 연계
단기한도대출	1년 이내 (1,2,3,4,5,6개월)	▶ 단기간(6개월내에서 월단위)의 대출을 필요로 하는 기업 (인터넷을 통한 신규 및 연장 가능)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미래채권담보대출 비교

구 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미래채권담보대출
차 주	협력기업	좌동
지원자금	납품자금	생산자금
용자시기	납품완료시	발주시
용자금액	매출채권 범위내	발주금액의 80%이내
담 보	확정매출채권	신보서(장래 매출채권)

3. 특별자금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방법	금리우대
창조경제 전략부문 특별시설자금	▶ 성장동력확충 (미래성장동력, 첨단융합산업등)	대출 및 투자	원화 △0.3%P (중소·중견 △0.6%P) 외화 △0.1%P (중소·중견 △0.2%P)
	▶ 서비스산업 (지식, 유망 서비스산업 등)		원화 △0.2%P (중소·중견 △0.5%P) 외화 △0.1%P (중소·중견 △0.2%P)
	▶ 경쟁력강화 (생산성향상 투자지원 등)		원화 △0.2%P (중소·중견 △0.5%P) 외화 △0.15%P (중소·중견 △0.3%P)
	▶ 지역경제활성화 (지방 중소·중견기업 등)		
	▶ 고용창출산업 (고용우수기업지원 등)		
	▶ 사업재편 (사업구조변경 및 사업혁신 추진기업)		
파이어나이어 프로그램	▶ 미래선도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벤처 및 중소·중견기업	대출 및 투자	시설 원화 △0.6%P 외화 △0.2%P 운영 원화 △0.3%P 외화 △0.1%P
동반성장대출	▶ 대기업 협력 중소·중견기업	대출	대기업 예치금 이자 수익분을 감안하여 금리감면(대기업별 협약사항에 따름)

4. 정책성 특별자금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방법	비 고
기술평가 (TCB)기반 기술금융 프로그램	▶ 기술력 우수한 벤처·중소기업 • TCB(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등급 'T1~T4' (‘양호’이상) 보유기업	대출 및 투자	신용지원
설비 투자 펀드	안전 ▶ 중소·중견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및 안전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대출 및 투자	(금리우대) △1.0%P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 계열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 • SOC사업 등 대형투자프로젝트 • 신성장 유망분야 및 기술력 우수기업 • 전통 주력산업 • 중국진출지원	주식·주식관련채 인수 원칙 (단, 투융자 복합 금융 및 회사채, 대출 지원 가능)	건별·업체별 지원한도 제한 없음

5. 재정·기금 상품

기 금 명	차 입 처	대출기간 (거치기간)	지 원 부 문
재 정 자 금	기획재정부	10~20 (5)	선박현대화 지원사업, 복합화물터미널건설,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건설 등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3~10 (1~5)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자금, 경영안전자금, 사업전환자금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4~12 (2~5)	관광숙박시설건설 및 개보수, 국민관광시설확충, 관광사업체 운영
외국환평형기금	기획재정부	1M~10 1~10	시설채수입, 수입재구매, 해외수주지원 해외기업M&A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기업은행	5(2)	응용기술개발지원(일반,기술답보)
정보통신기반조성자금	중소기업은행	5(2)	IT설비투자, 초고속공중망구축 등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지방자치단체	3~8 (1~3)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창업지원, 경영안전지원 등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한국에너지공단	3~15 (1~5)	절약시설설치, 집단에너지공급,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
석유사업기금	한국석유공사	15(5)	도시가스배관
환경개선지원자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3)	오염방지시설설치,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산업재해예방기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3)	산업재해 예방사업
재활용산업육성자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10 (2~3)	재활용산업, 폐기물자원화, 기술개발, 유통판매지원
가스안전관리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4~8 (1~3)	도시가스시설개선, 가스유통구조 개선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기금	한국산업인력공단	10(5)	직원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5)	천연가스공급시설
전력산업기반기금	한전 전력기반조성 사업센터	8~35 (3~5)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축산발전기금	농협중앙회축산 발전기금사무국	1~10 (1~5)	가축계열화사업, 축산물 종합처리장 등

기 금 명	차 입 처	대출기간 (거치기간)	지 원 부 문
장애인고용촉진자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1)	장애인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및 편의시설 등
폐광지역대체 산업육성자금	한국광해관리공단	10(5)	시설 및 운영
환경산업육성자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7 (2~3)	시설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특정물질사용합리화자금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8(3)	특정물질(대체물질)의 제조시설자금

6. 보증 상품

채무보증	▶ 채무보증 ▪ 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KDB가 그 채무의 상환을 보증하는 업무 ▶ 사채보증 ▪ 고객이 발행하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하는 업무 ▶ 차관지급보증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차관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외채무에 대하여 KDB가 외국대주(또는 그 지정인) 앞 대외외화표시 지급보증
지급보증	▶ 지급보증 ▪ 원화 관련 지급보증 ▶ 기타외화지급보증 ▪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외화표시 지급보증 등 채무보증 및 신용장개설을 제외한 모든 외화지급보증
해외건설 보증 (이행성보증)	▶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 입찰보증(Bid Bond) ▪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 하자보수보증(Maintenance Bond) ▪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Payment Bond)
보증료율 (대여료율)	▶ 기본보증료율 + 영업마진(고객신용도, 보증상품 등에 따라 차등적용)

7. 수출입금융 상품

수입 신용장 개설	▶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물품 결제를 진행하는 고객 수요에 따라 수입신용장 발행 ▪ 일람불, 기한부신용장 ▪ 특수신용장 개설 · 미국내 농축수산물 수출제도를 활용한 분할지급신용장(최장18개월이내) (GSM-102 프로그램) : 미국 생산품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미국농무성 (USDA) 연계은행이 결제대금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
무신용장 수입금융	▶ 사후송금 결제방식으로 수출상으로부터 매매계약서, 상업송장 및 B/L사본, 수입 신고필증 등을 제시한 후 1년이내 외화 수입대금 결제용 자금대출 ▪ 승인가능통화 : US\$, ¥, € ▪ 대출기간 : 최장 1년(360일기준) 이내로 함(만기 원리금일시상환)
수출 환어음 매입	▶ 신용장, 수출계약서(D/P, D/A 조건 등)에 따라 선적 완료하고 발행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할인하여 매입(추심) ▪ 수출(내국신용장 포함)환어음 매입(추심) ▶ 수출신용장 관련 서비스 ▪ 수출신용장 통지, 양도, 확인
무역금융	▶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D/P, D/A조건 등)에 의해 물품, 용역 등을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고객 앞 선적전 무역금융(내국신용장 제도, 무역어음 대출) 지원
KDB 장점	▶ KDB는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상이 선호하는 신용장개설은행임 ▪ 양질의 Credit Line과 Global Network를 통해 유리한 조건의 기한부신용장 개설 지원 ▶ 저리의 무역금융 자금 확보로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지원 ▶ 다양한 금융수요에 적합한 대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거액 우수고객 및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및 금리 우대 ▪ Nego 및 결제대전의 F/X Deal 연계 또는 환율우대 서비스 제공 ▪ 수출입 통합한도 운용을 통해 수입한도 여유분에 의한 수출 거래 및 수출한도 여유분에 의한 수입거래 가능 ▪ 당일 접수된 신용장개설 신청건은 당일중 대외 전문발송

[문의 : 무역금융실]

II. 국제·투자금융상품

1. 공모회사채 주선 및 인수

□ 공모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장점

○ 기업의 신인도 제고

- 신용평가회사의 공인된 평가등급이 필요한 공모회사채 발행은 발행자체로 금융 시장에서 고객위상이 올라가게 됨.

○ 거액의 장기자금을 시장금리로 조달

- 다양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발행은 대출보다 유리한 금리로 거액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

○ 자금의 용도와 만기를 다양하게 정할 수 있음

- 고객의 필요에 따라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환자금 등의 자금용도와 만기를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음

○ 최적의 자금조달을 위한 맞춤발행이 가능

- 시장여건을 감안, 다양한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발행구조의 선택이 가능함

□ 공모회사채 발행 절차

발행절차	비 고	담당	시기
대표주관계약	대표주관사선정, 인수단 구성 협의	고객/당행	D-21
Due Diligence	기업실사 진행	당행	D-18~13
이사회 결의	상장사의 경우 한국거래소 통보	고객	D-8 이전
최초 인수계약서 체결 및 사채모집위탁계약 체결	주관사-발행사간 계약	고객/인수단	D-8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금융감독원 신고	고객	D-8
수요예측	기관투자자 투자 참여	당행	D-5~4
정정신고서 제출 및 최종인수 계약 체결 (수요예측 결과 반영)	변경 내용 반영	고객/당행	D-4
청약, 납입	채권 발행 및 대금 납입	인수단	D-day

2. 해외공모외화채권 주선 및 인수

□ 해외공모외화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장점

○ 장기자금 조달 용이

- 해외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형태로 발행(국내채권 : 만기 3년)

○ 투자자 Base의 확대

- 한정된 국내채권 투자자들에 비해 국제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효율적 자금 조달 가능

○ 대규모 자금 조달이 원활

-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채권발행의 기재금액은 대부분 1억불 이상

○ 국내 신용등급 향상에 긍정적 영향

- 국제채권발행을 통해 국내·외 인지도 향상, 자금력 확충, 차입원 다각화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내 신용등급에도 긍정적 효과 유발 가능

□ 해외공모의화채권 발행 절차

단계	절 차	수 행 작 업	업무파트
1단계	신용등급 획득	회사재무 추정자료 작성	기업금융실(RM), 발행시장실(DCM)
		자료수집 및 Presentation 작성	
		신용평가사와 면담	
		경영진 면담	
		신용평가사 자체 분석	
		추가자료, 보완설명 등 사후 작업	
		발행사 신용등급 부여	
2단계	실사 및 주요 계약서 작성	주간사와 협의하여 법률고문, 회계법인, Agent 등 선정	기업금융실(RM), 발행시장실(DCM)
		정밀실사를 위한 예비 질의서 회사 앞 발송	
		정밀실사 및 기재취지서 작성 개시	
		증권거래소 등록 작업 개시	
		계약서 작성	
		필요 인허가 취득	
3단계	마케팅 및 로드쇼	예비 기재취지서(Red) 인쇄	기업금융실(RM), 발행시장실(DCM), 해외점포(Sales), 조사부(Research)
		리서치 자료 배포	
		로드쇼용 Presentation 등 자료 작성	
		로드쇼 기획 및 일정수립, 투자자 면담 주선	
		로드쇼 진행 중 투자자 면담 (대면 또는 컨퍼런스 콜), Luncheon presentation 등 실시	
		발행계획 공식 발표	
		잠정 기재취지서 (Red Herring) 배포	
4단계	발행가격 결정, 채권 배분 및 결제	예산 금리 Guidance 설정	발행시장실(DCM), 해외점포(Sales), 자금운용실 (Trading Desk)
		주문접수	
		발행자와 가격조건 협의	
		투자자 앞 채권 배분(Allocation)	
		지표채권 수익률 결정 및 발행 가격 결정	
		서명식	
		채권 결제(Billing & Delivery)	
		최종 기재취지서 (Offering Circular) 배포	

[문의 : 발행시장실]

□ 해외직접투자 절차



3. ABS 발행 및 신용공여

개 요	▶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고객)가 보유자산(유동화자산)을 모아 특수목적회사(SPC)에 양도한 후 SPC가 이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Asset-Backed Securities, ABS)을 발행하는 것임 ▶ 유동화 대상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의 창출 및 시장평가가 가능하고 SPC와 양도할 수 있는 매출채권, 부동산, 유가증권, 일반채권, 주택저당채권 등임
특징 및 효과	▶ 유·무형의 자산과 현금흐름을 활용하여 상품구조를 설계함으로써, 기업 자금조달 패턴을 다양하게 구성 가능함
발행 조건	▶ ABS발행 만기구조, 금리 및 신용공여약정 기간, 금리 등의 조건은 발행구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동화계획 등록전 고객과 협의 결정

□ ABS 발행 절차

단계	절 차	수 행 작 업	시기
1단계	고객의 보유자산 분석/ 타당성 조사	고 객 / 당 행	1개월 정도 소요
2단계	ABS발행구조 설계 (당행,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당행,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 SPC 앞 양도된 자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투자자 앞 발행 가능한 선순위 채권의 규모, 만기등 결정 - 고객이 인수하는 후순위채권규모, 하자가 있는 양도 자산에 대한 고객의 담보책임 등 리스크 보완방안 결정	
3단계	신용공여 및 수탁업무 계약	당 행 - 신용공여 : 당초 설계된 ABS의 현금흐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대출실행으로 선순위채권의 원리금 상환 재원을 보강하는 조치로 유동화 계획을 등록하기 전에 신용공여한도 약정 체결이 필요 - 수탁업무 : 채권 원리금상환 등 SPC업무 대행	
4단계	금감원 앞 자산유동화 계획 등록	당 행	D-10
5단계	금감원 앞 자산양도등록 및 발행신고서 제출	당 행 - ABS채권 인수 또는 매출(당행)	D-day
6단계	ABS 발행		D+6
7단계	사후관리	- 기초자산에 의한 원리금회수 관리 - 일시적 자금부족시 신용공여(대출) 실행 등	

[문의 : 발행시장실]

4. M&A 업무

M&A 주요업무	▶ M&A 관련 자문 서비스 ▪ 국내·외 기업간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양수도, 합작사업 등을 위한 자문 서비스 제공 ▶ M&A 관련 금융주선 서비스 ▪ M&A의 목적과 형태, 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금융주선 서비스 제공
M&A 특 징	▶ 기업의 성장전략 및 구조조정전략으로 활용 ▪ 인수자의 신규시장 진입시간 단축 ▪ 피인수기업의 인력, 기술, Know-How를 단시간 내에 습득 ▪ 한계기업의 퇴출전략 등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 기업가치의 평가, 협상전략의 수립, 법률문제의 검토 등의 복잡성으로 인해 외부 자문기관의 자문용역 병행 필요
M&A 절 차	▶ M&A 의뢰 : 절차 및 수수료 협의, 자문계약 체결 ▶ M&A전략의 수립 ▪ 기업의 목표 및 전략의 규명 ▪ 업계 현황분석 및 M&A 타당성 검토 ▪ M&A 전략수립, 세부 실행계획 작성 ▶ 목표기업의 선정 및 접촉과 교섭 ▪ 대상기업 가치 평가, 가능성 타진 ▶ 기본의향서 교환 : 거래조건, 가격결정방법 등 ▶ 정밀실사 ▶ 협상 및 계약체결 ▶ 대금지급 및 사후관리 ▪ 거래대금 수수 및 정부 인허가 등 법적절차 완료 ▪ Post M&A 업무수행 등 사후관리
관련법규	▶ 상법 (주로 회사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결합 및 지주회사 관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관련)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의 국내기업 M&A 관련)

[문의 : M&A실]

5. 주식 및 주식관련채 투자

투자대상	▶ 신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본금 증자에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국내/해외기업 ▶ M&A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위한 외부 투자자를 위한 외부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국내/해외 기업 ▶ 프로젝트 형태의 단위 사업 운영을 위하여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
투자방식	▶ 주식투자 • 보통주/우선주 등 ▶ 주식관련채권 • CB, BW, EB 등 ▶ 프로젝트투자 • 특정 사업 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 기타 • 투자계약증권 형태 • 투자대상별로 최적화된 별도의 구조화 투자상품 제공
투자조건	▶ 투자대상별 개별 합의

[문의 : 벤처금융실]

6. Private Equity 업무

개 요	▶ 소수의 고액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 등에 투자하고 경영성과 개선 등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장기투자 전문기구
PEF 특징	▶ Private • 금융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능력이 충분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비공개) 자금 모집 ▶ Equity • 공모 펀드에 적용되는 규제 회피 가능, 다양한 펀드 구조 설계가능 ▶ Fund •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한 투자이익 실현을 위하여 주로 비상장 기업의 지분증권 등에 투자가 이루어짐 ▶ Fund • 간접투자, 고도의 전문가에 의한 투자로써 성과보수체계 채택 등을 통해 운용자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해소
PEF 업무 Flow	▶ 펀드설립 ▶ 투자대상 발굴 (다양한 Network를 통한 Deal Sourcing, 예비검토 및 투자여부 잠정 결정) ▶ 투자승인 및 실행 (실사(회계, 법률 등), Valuation, Deal Structuring, 투자승인, 계약체결, 실행) ▶ 기업가치 제고 (경영진 선임(최소 1명의 이사), 투자계약서에 의한 사후관리, 기업 가치 제고 컨설팅, 사업구조조정 등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실행) ▶ 투자회수 (M&A, IPO, Secondary Sale, Tag Along, Put Option 등) ▶ 펀드청산 (회수금 분배 및 법인 청산절차 진행)

[문의 : 사모펀드실]

7. 대고객 외환거래

거래 동기	▶ 수출입 결제자금의 매매 ▶ 해외송금 및 수취자금의 매매 ▶ 해외 직·간접 금융을 통한 외화자금의 조달 및 상환 관련 외환매매 ▶ 기타 영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외환의 매매 등
거래 방식	【현물환거래 Spot Transaction】 외환매매거래일(deal date)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자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고객이 원할 경우 거래일 당일 또는 거래일 익영업일 결제거래로 스왑마진(자금비용)을 반영하여 거래 가능 【선물환거래 Forward Transaction】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Value Spot)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외환매매 거래 ▶ 거래의 정산 또는 조건 변경 • 선물환 거래를 한 고객은 결제일에 인수도(delivery) 정산하거나, 반대거래를 통해 차액 정산할 수 있음 • 선물환거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손익을 그 시점에서 정산 수수하여야 함 【외환스왑거래 FX Swap Transaction】 특정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여 사용한 후 만기일에 원래 통화로 재교환하는 외환매매거래(두 통화간 일시적 과부족을 외환 스왑거래를 통해 해소)
이용 안내	▶ 거래시간 • 원/달러, 원화대 기타 통화간 거래 : 09:00 ~ 15:30 • 외화대 외화간 거래 : 24시간 거래 가능 ▶ 거래절차 • 기본거래계약 체결 :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 * 선물환거래와 외환스왑거래는 거래실행전 한도승인 절차 필요 • 외환매매거래 실행 : 전화요청 및 거래환율 결정 • 외환거래확인 : 확인서(Confirmation Slip) 교부 및 확인 • 결제일에 거래대금 수수
기타 서비스	▶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우대환율 적용

[문의 : 금융공학실]

8. 인터넷 외환거래 서비스

개 요	▶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실시간 시장환율 기준으로 시장가 또는 지정가 방식으로 현물환 거래를 하는 시스템 ▶ 거래수수료의 대폭인하로 소액의 외환거래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거래 가능																
이용안내	▶ 거래시간 : 09:00 ~ 15:20 (외환거래시장 영업일) ▶ 거래통화 ▪ 원화대 외화간 거래 : USD/KRW, JPY/KRW, EUR/KRW ▪ 외화대 외화간 거래 : USD/JPY, EUR/USD ▶ 거래금액 ▪ USD기준 1,000불이상 100만불 이하 ▶ 거래수수료 (1 U\$당) <table data-bbox="342 808 806 1204"> <thead> <tr> <th>거래금액 (U\$)</th><th>수수료</th></tr> </thead> <tbody> <tr> <td>1천~1만</td><td>2.1원</td></tr> <tr> <td>1만~5만</td><td>1.8원</td></tr> <tr> <td>5만~10만</td><td>1.4원</td></tr> <tr> <td>10만~20만</td><td>1.1원</td></tr> <tr> <td>20만~30만</td><td>0.7원</td></tr> <tr> <td>30만~50만</td><td>0.5원</td></tr> <tr> <td>50만~100만</td><td>0.4원</td></tr> </tbody> </table> ▶ 거래절차 ▪ 인터넷뱅킹 가입 및 인터넷외환거래서비스 이용 신청 ▪ 거래한도 부여 ▪ 이용약정 체결 (전자서명) ▪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실행 ▪ 현금인출시 인출 수수료 1% 추가 ※ 거래 금액 및 수수료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거래금액 (U\$)	수수료	1천~1만	2.1원	1만~5만	1.8원	5만~10만	1.4원	10만~20만	1.1원	20만~30만	0.7원	30만~50만	0.5원	50만~100만	0.4원
거래금액 (U\$)	수수료																
1천~1만	2.1원																
1만~5만	1.8원																
5만~10만	1.4원																
10만~20만	1.1원																
20만~30만	0.7원																
30만~50만	0.5원																
50만~100만	0.4원																

[문의 : 금융공학실]

9. 파생금융상품

주요고객	▶ 수출입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 수출 또는 수입에서 발생하는 환리스크 헤지 • 원자재, 원유 등 상품가격의 변동리스크 헤지 ▶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 외화 차입시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 원화 차입시 금리리스크 헤지 및 금리절감 ▶ 기관투자자(보험사,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 구조화 채권 및 예금을 통한 Yield Pick-Up (금리, 환율, 지수 및 상품연동 채권 및 예금) • 보유증권 외화자산의 금리 및 환리스크 헤지 • 보유증권 주식의 주가변동 리스크 헤지
기본상품	▶ 통화파생상품 • 장기선물환 (Long-Term Forward) • 통화스왑 (Cross Currency Interest Rate Swap) • 통화옵션(Vanilla Option, Exotic Option) ▶ 금리파생상품 • 선도금리계약(FRA), 금리스왑(IRS) • 금리옵션(Cap/Floor, Swaption) ▶ 개별주식(주가지수)파생상품 • 개별주식(주가지수)관련 선도계약 및 옵션거래 • Equity Linked Swap ▶ 상품(Commodity)파생상품 • 상품(원유, 금속 등)관련 선도계약 및 옵션거래 • Commodity Linked Swap
구조화상품	▶ 선물환보다 유리한 조건의 환리스크 헤지상품 • Range Forward, Enhanced Forward 등 Zero Cost 상품 ▶ Yield Pick-Up을 위한 투자상품 • 구조화 산금채, 예금 판매 (Callable, CMS 등) • 구조화채권 발행기관 및 투자자 대상 헤지상품 판매 ▶ 주식을 활용한 Equity Finance 제공 • 보유 주식매각, EB/CB/BW 발행을 통한 Financing • 주식관련채의 주식과 채권부분 strip 및 매매 ▶ 상품(Commodity)가격 리스크의 헤지상품 • 환율, 금리 등과 연계한 헤지상품

[문의 : 금융공학실]

Ⅲ. 컨설팅 서비스

1. 성장지원 컨설팅

내 용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영전략, 재무전략 컨설팅 서비스 제공
서비스 영 역	▷ 비전 및 중장기경영전략 수립 ▷ 제품/사업별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 기업 운영방안 및 기업발전 전략(조직, 프로세스 개선, 수익성 향상 등) 수립 ▷ 사업 및 재무상태 진단
사 례	▷ D사 인수금융 관련 재무전략 수립 ▷ A사 대출 및 주식인수 관련 컨설팅 ▷ G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증설 타당성 검토 ▷ D건설 기업가치제고 컨설팅 ▷ B공사 자금조달 전략 컨설팅 ▷ P사 기업가치제고 컨설팅 ▷ D사 구매절차 및 내부감사시스템 개선 컨설팅 외 다수

2. 사업타당성 검토

내 용	▷ 신규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비롯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서비스 영 역	▷ 신규 사업 및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 ▷ 시장분석 및 시장진입전략 수립 ▷ 자금계획 등 재무전략 수립 ▷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제공
사 례	▷ J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대한 사업성 검토 ▷ D사 공장신축을 통한 신사업진출 가능성 검토 ▷ T사 호텔 인수에 대한 사업성 검토 ▷ E사 호텔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 B사 선박 신조 등에 대한 사업성 검토 ▷ N사 외국기업 2차전지 사업부 인수타당성 검토 외 다수

[문의 : 컨설팅실]

3 해외프로젝트 컨설팅

내 용	▶ 해외진출 타당성 검토, 전략 수립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서비스 영 역	▶ 국내 공공기관, 기업의 해외진출 및 Global 전략 수립 지원 ▶ 국제기구, 외국기업 등 해외 Client의 국내진출전략 수립 지원 ▶ Global Project의 전략적 개발 및 금융지원 컨설팅 수행
사 례	▶ 한국형 병원 해외진출을 위한 사우디 현지 Financing전략 수립 ▶ N사 2차전지 관련 해외사업인수 컨설팅 ▶ K사 중국 진출 관련 사업성 검토 ▶ N사 중국 진출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컨설팅 ▶ A사 미얀마 목재사업 컨설팅 ▶ 뉴욕 A부동산 개발프로젝트 컨설팅 ▶ S사 카자흐스탄 유전광구 탐사사업 타당성 검토 외 다수

4. Turn-Around 컨설팅

내 용	▶ 성장정체 및 한계에 봉착한 기업의 경영실태 진단 ▶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 제시
서비스 영 역	▶ 기업의 경영개선 및 가치제고 등 Turn-Around 전략 수립 ▶ Debt Restructuring, 자본구조 개선 등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수립 ▶ 사업분할·매수, 사업 재구조 등 핵심역량강화 전략 수립
사 례	▶ U사 재무건전성 제고 및 경영개선방향 수립 ▶ D사 재무구조 개선방안 도출 ▶ C사 Turn-Around 전략 수립 ▶ H사 Turn-Around 전략 수립 ▶ D사 Turn-Around 전략 수립 ▶ I사 Turn-Around 전략 수립 ▶ S계열 Turn-Around 전략 수립 외 다수

[문의 : 컨설팅실]

[참고]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 국내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본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02)787-4000	
본점영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02)787-5717	02)787-5791~2
가산지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STX V-Tower 2층	02)2081-3500	02)857-7598~9
강남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08 영보빌딩 1,2층	02)560-0300	02)565-8417
금천지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88 혜전빌딩 1,2층	02)3282-8900	02)851-0360
노원지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7 교보생명빌딩 1,2층	02)950-9500	02)934-7700
대치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7 대원빌딩 5층	02)2193-4100	02)2193-4198~9
도곡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4 아카데미스위트A동 2층	02)3498-3800	02)579-0247
마포지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7 첨단빌딩 1,2층	02)3140-0400	02)3140-0460
양천지점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203 목동로데오빌딩 6층	02)3219-8500	02)3219-8598~9
반포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7 레미안퍼스티지상가 5층	02)3488-8500	02)594-7998
서소문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5 한산빌딩 1층	02)398-9500	02)398-9597~9
서초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대각빌딩 1,2층	02)3488-7500	02)581-1036~7
동대문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89 무궁화회관 2층	02)2192-7100	02)564-4398~9
성동지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0길 3 세종빌딩2,3층	02)3408-9600	02)3408-9697~8
신문로지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대우건설빌딩 1,2층	02)398-9600	02)398-9698~9
압구정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78 중산빌딩 1,3층	02)3218-0900	02)511-0822
여의도지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2층	02)2000-0600	02)782-8321
이수지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89 2층	02)2182-8700	02)2182-8798~9
이촌지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66 한석빌딩 1층	02)2125-8000	02)2125-8099
종로지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삼일빌딩 1,2층	02)398-6700	02)735-0136
잠실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시그마타워 1층	02)2240-8200	02)2240-8298
잠원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65 미래빌딩 2층	02)2240-1500	02)2240-1598~9
한티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8 디마크빌딩 3층	02)3469-2300	02)3469-2398~9
◎ 경기지역			
김포지점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 15 청담메디칼센터빌딩 1,2층	031)980-8800	031)997-5112
동탄지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솔빛로 51 인창프라자 2층	031)350-1200	031)350-1298~9
부천지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88 산업은행빌딩 1,2층	032)620-1200	032)325-4761~2
부평지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엘림타워 1,2층	032)363-5300	032)361-1198~9
분당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00 삼성생명빌딩 1,2층	031)789-1500	031)707-4152~3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송도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 애니오션빌딩 1층	032)540-8300	032)540-8398~9
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 경기새마을회빌딩 1,2층	031)220-7300	031)226-7330
시화지점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188 산업은행빌딩 1,2층	031)496-4400	031)498-2934
안산지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 산업은행빌딩 1층	031)412-0600	031)487-6942
안양지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42 산업은행빌딩 1,2층	031)380-0900	031)388-0551~2
용인지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69 뽕스타빌딩 2층	031)280-6100	031)280-6197~8
의정부지점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1 네오타워빌딩 6층	031)850-8400	031)850-8498~9
인천지점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 42 코아루파크드림 2층	032)450-3400	032)437-6028~9
일산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1 모아나빌딩 1,2층	031)920-4000	031)920-4099
정자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93 분당두산위브빌리온 B동 2층	031)789-4900	031)789-4998~9
판교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28 마크시티그린빌딩 2층	031)779-8100	031)779-8198~9
평택지점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20번길 39 합정동 타임스퀘어빌딩 2층	031)659-0500	031)654-8198
산본지점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43-6 한숲스포츠허브 3층	031)420-9500	031)420-9598~9
반월지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15 위너스타워 2층	031)481-0400	031)481-0498~9
화성지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7 태성프라자 1,2층	031)350-3700	031)8059-0599
◎ 충청, 강원지역			
당진지점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2로 211-15 서해빌딩 1층	041)359-2600	041)356-3691
대덕지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05 대덕테크노지빌딩 1,2층	042)939-8600	042)939-8698~9
대전지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 산업은행빌딩 1층	042)600-6200	042)489-7494~5
아산지점	충청남도 아산시 변영로234번길 2 메디포스빌딩 2층	041)537-2300	041)537-2398~9
오창지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47 오창리치아노 2층	043)249-2400	043)249-2497
천안지점	충청남도 천안시 민남로 82 소암빌딩 1,2층	041)559-2600	041)562-8364
청주지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 16 산업은행빌딩 1층	043)229-2900	043)255-9001
충주지점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1,2층	043)850-7700	043)852-2194
춘천지점	강원도 춘천시 방송길 104 스카이원빌딩 1,2층	033)240-1400	033)240-1498~9
원주지점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502 골드플라자 1,2층	033)760-3800	033)765-1897~8
◎ 호남, 제주지역			
광주지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1 산업은행빌딩 1,2층	062)958-1000	062)953-7984~5
금남로지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68 대우증권빌딩 3층	062)519-8100	062)519-8198~9
목포지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06 산업은행빌딩 1,2층	061)280-5400	061)285-0353~4
여수지점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30 산업은행빌딩 1층	061)690-8500	061)682-0165
군산지점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06, 2층	063)440-3600	063)442-5245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전주지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18 산업은행빌딩 1층	063)230-6600	063)230-6626
제주지점	제주도 제주시 관덕로 44 대우증권빌딩 1층	064)720-1700	064)759-9015
◎ 영남지역			
마산지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 한화생명빌딩 3층	055)290-3500	055)290-3598~9
경산지점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33 도륜빌딩 1층	053)819-1900	053)819-1998~9
구미지점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07 산업은행빌딩 1층	054)450-4700	054)453-5805
금정지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비엔빌딩 1,2층	051)510-4700	051)510-4798~9
김해지점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81 동화선프라자 2층	055)310-2220	055)310-2299
녹산지점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12-5 JH빌딩 3,4층	051)974-4100	051)974-4128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1,2층	053)606-2500	053)255-1460
경주지점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경주KT빌딩 1층	054)750-8300	054)750-8398~9
남울산지점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62 나인파크 2층	052)290-8400	052)290-8498~9
부산지점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36 산업은행빌딩 1,2층	051)240-1600	051)240-1700~1
성서지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4 산업은행빌딩 1층	053)605-4600	053)584-6871~2
양산지점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역6길 9 BYC빌딩 2층	055)380-8500	055)380-8598~9
울산지점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6 산업은행빌딩 1,2층	052)270-4900	052)271-0484~5
진주지점	경상남도 진주시 항교로 3 롯데인벤스 1,2층	055)749-4300	055)747-3407
창원지점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로 25 산업은행빌딩 1,2층	055)268-2700	055)285-0187
포항지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6 산업은행빌딩 1층	054)288-4500	054)272-1655~6
해운대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5 대우월드마크센텀상가 2층	051)749-8300	051)746-1797

□ 국외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토쿄지점 (KDB Tokyo Branch)	GranTokyo North Tower 36F 1-9-1, Marunouchi, Chiyoda-ku, Tokyo, 100-6736, Japan	81-3)3214-4541	81-3)3214-6933
베이징지점 (KDB Beijing Branch)	27th Floor, West Tower, Twin Towers, B-12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2, PRC	86-10)6568-8858	86-10)6568-6978
상하이지점 (KDB Shanghai Branch)	Room 3810, 38th Floor, Shanghai World Financial Center, No.100, Century Avenue, Pudong New Area, Shanghai 200120, PRC	86-21)6887-1234	86-21)6877-5556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광저우지점 (KDB Guangzhou Branch)	Suite 1702, 17th Floor, International Finance Place, No.8 Huaxia Road, Pearl River New Town, Guangzhou 510623, PRC	86-20)8550-6008	86-20-8550-6010
선양지점 (KDB Shenyang Branch)	31F, CR Building, No.286 Qingnian Street, Heping District, Shenyang, Liaoning Province 110004, PRC	86-24)3125-9988	86-24)3125-5096
싱가폴지점 (KDB Singapore Branch)	138 Market Street, #35-02/03, Capita Green, Singapore 048946	65)6320-7400	65)6320-7413
런던지점 (KDB London Branch)	16th Floor, 99 Bishopsgate, London, EC2M 3XD	44-20)7426-3550	44-20)7426-3567
뉴욕지점 (KDB New York Branch)	320 Park Ave. 32nd Floor, New York, NY 10022	1-212)688-7686	1-212)758-3296
칭다오지점 (KDB Qingdao Branch)	Room 01-06, 43th Floor, The HNA Center, No.234 Yan'an 3rd Road, Shinan District, Qingdao, Shandong Province, China 266071	86-532)8288-7700	86-532)8288-7318
KDB홍콩 (KDB Asia Limited)	Suite 2005-10, Two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8 Finance Street, Central, Hong Kong	852)2524-7011	852)2810-4447
KDB아일랜드 (KDB Ireland Limited)	Ground Floor, Russell House, Stokes Place, St. Stephen's Green, Dublin 2, Ireland	353-1)4753-644	353-1)4753-658
KDB유럽 (KDB Bank Europe Limited)	H-1054 Budapest V., Bajcsy-Zsilinszky ut 42-46.	36-1)374-9903	36-1)328-5454
KDB브라질 (Banco KDB do Brasil S.A.)	Av.Brigadeiro Faria Lima, 3400 Ed. Faria Lima Financial Center 15 andar Conj.152 Itaim Bibi, Sao Paulo, SP, Brasil CEP:04538-132	55-11)2138-0000	55-11)2138-0150
KDB우즈베키스탄 (KDB Bank Uzbekistan)	3 Bukhoro street, Mirobod district, Tashkent, Uzbekistan 100047	998-71)120-8000	998-71)120-6970
프랑크푸르트사무소 (KDB Frankfurt Representative Office)	Bockenheimer Landstrasse 51-53, 60325 Frankfurt am Main, Germany	49-69)920713-00	49-69)920713-99
호치민사무소 (KDB Hochiminh Representative Office)	Unit 604, Kumho Asiana Plaza Saigon, 39 Le Duan Street, District 1, HCMC, Vietnam	84-8)6291-7870	84-8)6291-7672
아부다비사무소 (KDB Abu Dhabi Representative Office)	Unit 1302, Etihad Towers 3, Abu Dhabi, U.A.E. PO Box 63057	971-2)666-3374/ 971-2)666-7173	-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양곤사무소 (KDB Yangon Representative Office)	#1808 18th Floor, Sakura Tower, No. 339 Bogyoke Aung San Road, Kyauktada Township, Yangon, Myanmar	95-1)255150~1	95-1)255152
모스크바사무소 (KDB Moscow Representative Office)	Office 804, Entrance 3, World Trade Center, Krasnopresnenskaya nab. 12, 123610, Moscow, Russia	7-495)669-4405	7-495)669-4405
방콕사무소 (KDB Bangkok Representative Office)	15th 5L Athenee Tower, 63 Wireless Road (Witthayu), Lumpini, Pathumwan, Bangkok 10330, Thailand	66-2-168-8499/ 66-92-730-0748 (c)	66-2-168-8500
마닐라사무소 (KDB Manila Representative Office)	the 18th Level, Tower 1, The Enterprise Center, 6766 Ayala Ave., Paseo de Roxas, Legaspi Village, Makati City, Philippines	63-2-556-2267	63-2-556-0912
시드니사무소 (KDB Sydney Representative Office)	Suite 3304, Level 33, MLC Centre, 19-29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61-2-9221-3638	-

□ 관계회사

구 분	주 소	대표전화
산은캐피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산은캐피탈	02)6330-0114
KDB인프라자산운용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3층	02)6333-3500
한국해양보증보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051)717-0900
KDB생명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02)6303-5000

5-2 온렌딩대출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자금 대출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한 온렌딩대출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상품별 지원요건

구 분		지 원 요 건
기본 온렌딩	원화일반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외화자금 (USD)	▶ 해외 실수요 목적의 외화자금
	리스자금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리스(승용차 제외)
특별 온렌딩	미래·신성장동력	▶ 미래성장동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기업 ▶ 녹색인증분야 기술 및 사업기업
	수출기업지원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선정 수출기업 ▶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환변동보험 가입 기업
	지방소재기업육성	▶ 본사나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지방은행우대	▶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지방소재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 벤처기업* 또는 설립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해당 중소기업
	스마트공장보급	▶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인증한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견기업

구 분	지 원 요 건
투자이민펀드연계 스마트공장	▶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인증한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기업
친환경기업지원 (팩토링 등)	▶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구 분	대출기간	거치기간
시설자금	1년 이상 10년 이내	3년 이내
운영자금	1년 이상 3년 이내	6개월 이내
리스자금*	1년 이상 5년 이내	6개월 이내

* 리스자금 온렌딩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산은캐피탈, 효성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를 통해서만 취급

신청·접수

중개금융기관의 가까운 영업점 문의

○ '17.11월 현재 온렌딩 약정체결 중개금융기관

- 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SC은행, 씨티은행
- 여신전문금융회사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산은캐피탈, 효성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지원 절차



문 의 처

○ 한국산업은행 온렌딩금융실 : 02-787-0573~0582



제6부

한국수출입은행

6-1. 2018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222
6-2.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223
6-3.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225
6-4. 기술금융 프로그램	227
6-5.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229
6-6.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231
6-7.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233
6-8.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235
6-9.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237
6-10.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240
6-11.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242
6-12. 해외사업금융	244
6-13. 수입금융(수입자금)	247
6-14. 이행성보증	249
6-15. 무역금융(수출관련)	251
6-16. 해외온렌딩	253

6-1

2018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전문적 지원 확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을 지속실시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 실현을 위한 상생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문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주요 우대프로그램

- *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 * 히든챔피언 육성프로그램
- * 기술금융 프로그램
- * 상생금융 프로그램
- *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 중소기업 주요 금융상품

분 야		상 품 명
대 출	수 출	수출촉진자금, 수출성장자금, 수출이행자금
	수 입	수입자금
	해외사업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보 증	이행성보증	수출이행성보증,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외국환	수 출	수출환어음매입,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신용장확인
	수 입	수입신용장, 수입팩토링

6-2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연간 해외 직수출 1백만불 이하의 수출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1월~12월) 직수출 규모가 1백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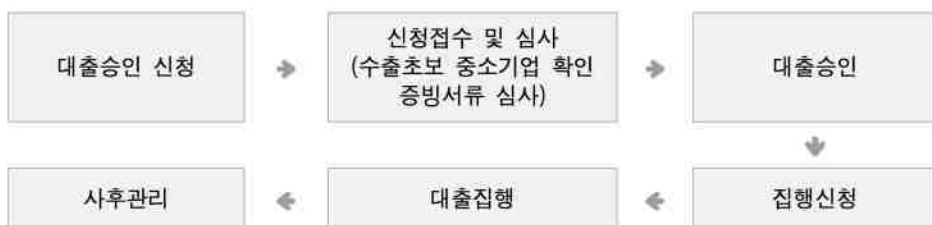
지원 내용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금융서비스 및 경영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등의 비금융서비스 제공

우대사항

- 대출금리 : 최대 0.3%p 인하
- 대출한도 : 수출성장자금 대출시 수출실적의 100%까지 한도 확대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5-5322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8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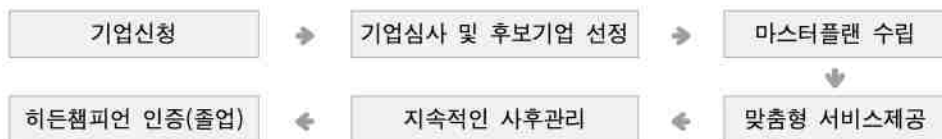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히든챔피언 육성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금융·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를 지원하여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중견기업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

실행 절차



○ 기업신청

- 신청자격 :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수출액 20억원 이상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단, 외감법에 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 SW개발·공급 기업 및 SI기업 등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및 15개 중소여신부점 및 출장소
- 선정기간 : 매년 당행 홈페이지 게시

○ 심사 및 후보기업 선정

- 선정기준 : 히든챔피언 적합도(80%) + 재무안정성(20%)
- 선정절차 : 1차심사(60점) → 2차심사(40점) →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

○ 히든챔피언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

- 최종 선정 기업이 제출한 중장기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해당기업의 니즈(Needs)와 역량에 맞추어 수출입은행이 제공할 금융·맞춤형 경영정보 서비스 플랜을 수립

○ 맞춤형 서비스제공

■ 금융서비스

- “제품개발 → 생산 → 해외판매”에 이르는 기업의 글로벌화 가치사슬(value chain) 전 범위에 걸쳐 필요한 맞춤형 금융 제공
- 금리우대 및 신용여신한도 확대

■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 기업의 성장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 전문 기관과 협업하여 제공
- 히든챔피언 카페, 히든챔피언 아카데미, 환위험컨설팅, 국제계약 법률자문,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산학협력 등

○ 지속적인 사후관리

- 매년 후보기업의 경영성과 및 사업참여도를 평가하여 부진기업에 대해서는 마스터 플랜수정 또는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선정 취소

○ 히든챔피언 인증(졸업)

- 히든챔피언 인증가능기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다면평가(EPIC)**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히든 챔피언으로 인증(우대지원 5년간 유지)

* ①수출액 3억/1억/0.5억달러 이상, ②육성기간 3년이상, ③회사존속 10년이상, ④신용등급 P4+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다면평가(EPIC) : 탁월한 성과(Excellence), 성장잠재력(Potential), 독립도(Independency), 국가경제기여도(Contribution)를 다면적으로 평가

평가 영역		평가 지표
1	Excellence 탁월한 성과	·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 기업의 매출액 성장률 · 해당산업의 수출 경쟁력
2	Potential 성장 잠재력	· 매출액대비 R&D 투자 비중 · 글로벌 특허 보유 여부
3	Independence 독립적 자생력	· 국내 대기업 의존도
4	Contribution 국가경제 기여도	· 신규 고용창출 기여 · 매출 대비 수출 비중

문의처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히든챔피언팀 : 02-6255-5293

6-4

기술금융 프로그램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과 시장성을 평가하여 여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이 기술금융 지원 신청시 적격 기술신용평가기관(TCB)*에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하여 산출한 해당 기업의 기술평가등급으로 신용등급 평가를 대체하거나, 신용등급평가지 기술력을 적극 반영하여 여신지원

* 적격 기술신용평가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술신용조회업' 인가를 받은 기관 및 기술보증기금 중,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공신력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데이터(KED), 나이스평가정보, 기술보증기금, 이크레더블)

① 기술신용제도

- 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지원대상거래 :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기술력 평가등급 양호 이상(SA)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수출이행능력 점수 70점 이상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 '차세대 수출거래', '수출초보 중소기업'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상품 :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신용등급평가 생략 가능
 - 정책조정률에 따른 우대금리 제공(최대 0.3%p)

6-5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현지진출 대기업(공공기관 포함)의 추천을 받아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중견기업 앞으로 필요한 자금을 수출입은행이 직접 또는 간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해외진출 대기업의 추천을 받은 동반진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① 직접 지원

○ 개요

- 상생협약을 체결한 현지진출 대기업의 추천을 받아 수출입은행이 직접 해당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또는 패키지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지 공장 및 설비 증설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현지 생산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 현지 대기업 앞 납품 후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한 팩토링 등으로 지원

- 지원상품 : 해외투자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해외사업금융보증, 해외사업 이행성보증, 수출팩토링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 및 고객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해외투자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 * 운영자금 : 3년 이내
 - * 시설자금 : 30년 이내
- 수출팩토링 : 6개월 이내

② 간접 지원

○ 개요

- 수출입은행이 현지은행 앞으로 신용한도(credit line)을 설정하고 현지은행이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에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은 현지은행 앞으로 Support Letter를 제공하는 등 협력기업에 대해 현지영업활동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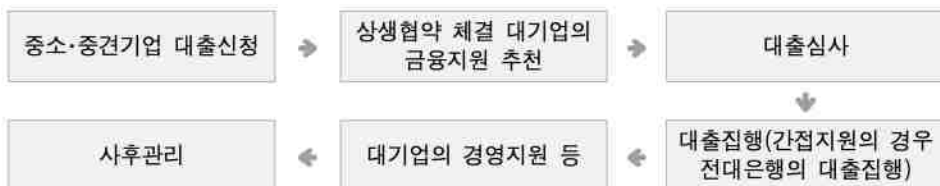
* 현지영업활동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현지화로 제공하여 환위험관리 지원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322
-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8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6-6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대기업이 추진하는 수출 프로젝트에 지원 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추천을 받아 수출입은행이 생산 및 수출에 필요한 자금 또는 이행성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상생대기업이 당행 여신지원을 추천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개요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추천을 받은 수출 중소·중견협력기업 앞으로 수출용 물품의 제작자금 또는 수출이행을 위한 이행성 보증을 지원
- * 대기업의 지원은 수출입은행과 체결하는 상생협력약정 내용에 따름

○ 지원대상거래

- 상생대기업의 현지법인에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상생대기업의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상생대기업의 해외수주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는 거래
- 상생대기업 중 공공기관이 법률 및 마케팅 등 경영지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물자나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지원상품 :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 및 고객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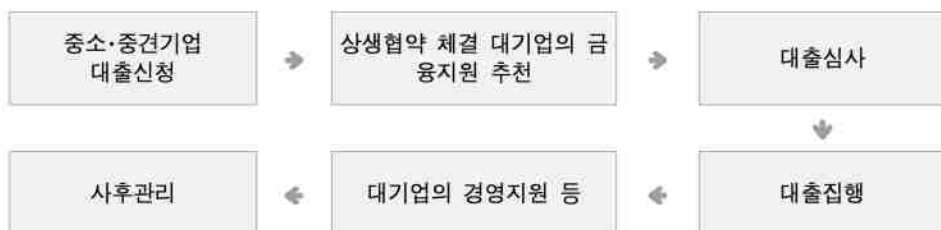
○ 대출기간

- 수출성장자금대출 : 6개월,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이행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322
-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 | |
|------------------------|-------------------------|
| ○ 부산지점 : 051-817-5050 | ○ 창원지점 : 055-287-6830 |
| ○ 대전지점 : 042-489-9715 | ○ 대구지점 : 053-260-4100 |
| ○ 수원지점 : 031-259-6600 | ○ 광주지점 : 062-232-6944 |
| ○ 울산지점 : 052-274-5276 | ○ 인천지점 : 032-235-6114 |
| ○ 청주지점 : 043-237-0475 | ○ 전주지점 : 063-271-6134~8 |
|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

6-7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수출입은행과 상생협약을 맺은 대기업을 차주로 하여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 앞으로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즉시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을 대신하여 중소·중견기업 앞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수출입은행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원청 대기업으로서 수출 및 외화가득효과가 큰 업종을 영위하며 국내 중소·중견협력기업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실질수혜기업 :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개요

- 원청 대기업의 수출용 원자재 구매자금을 중소·중견협력기업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신용도 및 담보제공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를 지원

○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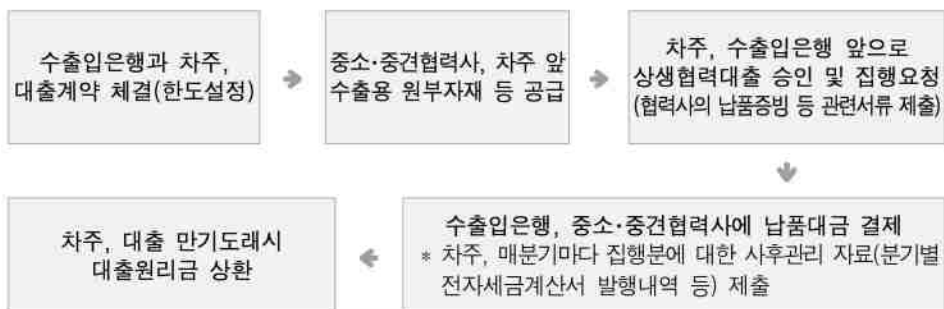
- 지원대상거래 : 상생대기업에 대한 중소·중견협력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
- 대출한도설정금액 : 대출신청전월기준 과거 1년동안 중소·중견협력사의 차주앞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실적의 1/2 이내에서 설정
 - * 단, 한도설정시 개별대출기간을 1년으로 운용기로 약정한 경우, 1년간 납품실적 범위내 설정 가능
- 대출한도사용기간 : 한도설정일로부터 1년
 - * 단, 수출목적물의 제작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출입은행과의 거래기간이 2년 이상인 차주사의 경우, 한도사용기간 2년 가능
- 대출금액 : 중소·중견협력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에서 발생한 금액 중
 - * 대금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건으로서 차주사가 산정하여 신청한 금액

- * 대출승인신청일 직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주사가 현금결제한 금액
- 대출기간 : 건별 개별대출 취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6개월
- * 단, 차주사의 한도사용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이내 가능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322
-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 | |
|------------------------|-------------------------|
| ○ 부산지점 : 051-817-5050 | ○ 창원지점 : 055-287-6830 |
| ○ 대전지점 : 042-489-9715 | ○ 대구지점 : 053-260-4100 |
| ○ 수원지점 : 031-259-6600 | ○ 광주지점 : 062-232-6944 |
| ○ 울산지점 : 052-274-5276 | ○ 인천지점 : 032-235-6114 |
| ○ 청주지점 : 043-237-0475 | ○ 전주지점 : 063-271-6134~8 |
|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

6-8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 수출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를 위한 각종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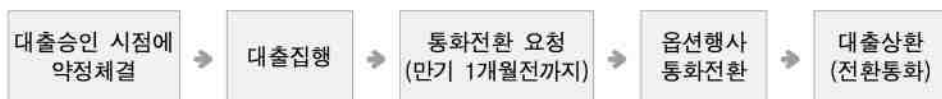
수출중소기업의 대외거래에 따른 환위험관리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융·비금융 서비스입니다.

금융 서비스

① 통화전화옵션

- 개요 : 대출 취급 후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 또는 '외화 ↔ 여타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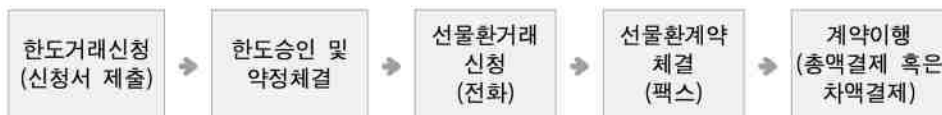
○ 실행절차



② 선물환거래

- 개요 : 수출중소기업이 별도의 수수료 부담없이 선물환 현재 시점에서 미리 확정하여 환율하락에 따라 외화의 가치하락을 방지하도록 지원

○ 실행절차



비금융 서비스

- 환위험관리 컨설팅 : 환위험관리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고객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환위험을 진단하고 맞춤형 환위험관리 방안 제시
- 환위험관리 설명회 : 지방소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환위험관리 개요, 필요성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주기적 설명회 개최

해외투자정보

- 국제지역정보 : 해외진출에 필요한 주요 신흥국의 경제, 산업 및 투자환경 등의 정보 제공
- 산업경제정보 : 조선, 플랜트, 신재생에너지, IT,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산업정보 제공
- 해외투자통계 :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현황 제공

* 관련 정보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keri.koreaexim.go.kr) 게시

문의처

- 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비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히든챔피언팀(02-6255-5293)
- 해외투자정보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02-6255-5712)

6-9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및 수출기업 인수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수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 수출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국내기업(단, 인수 이후에 수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 해외판매를 목적으로 콘텐츠의 제작·공급·유통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기업

지원 내용

자금용도

- 시설투자
-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단, 기술평가등급이 양호한 경우에 한함.)
- 해외시장개척활동
- 수출기업 인수 / 제작자금 용도 등

대출금액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 * 해외시장개척활동의 경우 대출한도 : 30억원(해외영화홍보활동의 경우 50억원)
 - * 자금용도가 수출기업 지분인수인 경우에는 실소요자금의 50% 이내(협조대출인 경우 40% 이내)

대출기간

- 시설투자, 기술개발, 수출기업 인수, 제작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그 외 자금용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단, 3년 이하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 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322
-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
-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70

지점 및 출장소

- | | |
|------------------------|-------------------------|
| ○ 부산지점 : 051-817-5050 | ○ 창원지점 : 055-287-6830 |
| ○ 대전지점 : 042-489-9715 | ○ 대구지점 : 053-260-4100 |
| ○ 수원지점 : 031-259-6600 | ○ 광주지점 : 062-232-6944 |
| ○ 울산지점 : 052-274-5276 | ○ 인천지점 : 032-235-6114 |
| ○ 청주지점 : 043-237-0475 | ○ 전주지점 : 063-271-6134~8 |
|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

6-10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우대지원산업(서비스산업, 친환경에너지산업, ICT융합산업, 미래운송기기·소재산업, 유망소비재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물품 등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대출금액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9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7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 단, 기업별 대출한도는 250억원(유예중소기업 350억원) 이내로 운용하고, 수출규모 등에 따라 400억원(유예중소기업 600억원)까지 증액가능

대출기간

- 6개월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상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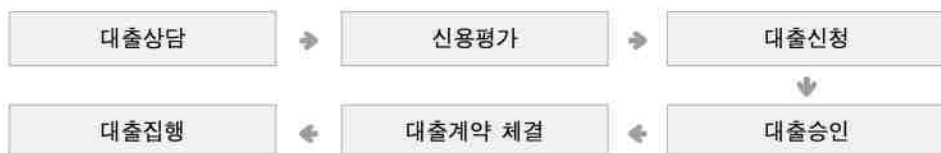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수출실적확인서류,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 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322
-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
-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70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8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6-11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해외건설공사 제외)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기업

지원 내용

대출금액

- (수출계약금액 - 이미 수령한 금액) × 90% 이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금액
- 단, 서비스산업 중 런닝로열티방식 판권수출계약의 경우, 순제작비(총제작비 - 홍보비용 등) × 50% 이내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단, 기술신용 지원으로 신용취급이 가능한 대출의 경우 6개월 이내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중복수해방지확약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 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322
-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
-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70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시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8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6-12 해외사업금융

해외자원개발, 해외 M&A, 현지법인 사업자금 및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해외투자자금 :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
- 해외사업자금 : 해외에서 사업(해외투자 제외)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현지법인)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해외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등

지원 내용

- 해외투자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관련 거래상대방인 국내기업 등 해외사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대출금액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 현지법인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단, 운영자금의 경우 별도의 대출한도 범위 이내)
- * 자원개발 사업은 100% 이내

대출기간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단, 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거치기간 5년,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거치기간 7년 가능) 이내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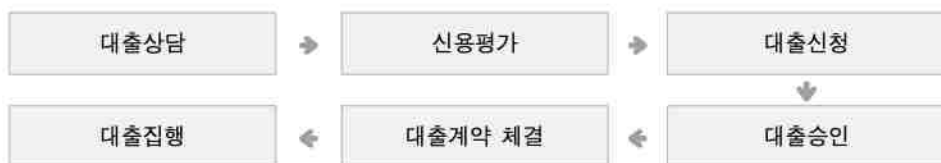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 (해외투자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해외투자신고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해외사업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현지법인사업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현지사업계획서, 국내외 관계기관 인허가서, 설립관련 증빙서류, 납품계약서 등 판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대출집행 신청서, 차입관련 결의서, 정관,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인감 및 명판 신고서 등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 제공명세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한도설정 승인신청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322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70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8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6-13 수입금융(수입자금)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수입자

지원 내용

대출금액

- 수입소요자금 총액의 90%

대출기간

-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거치 3년까지 가능)
 - 단, 시설재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이내
- 그 외 거래 : 2년 이내(거치기간 설정불가)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수입실적 확인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 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322
-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70

지점 및 출장소

- | | |
|------------------------|-------------------------|
| ○ 부산지점 : 051-817-5050 | ○ 창원지점 : 055-287-6830 |
| ○ 대전지점 : 042-489-9715 | ○ 대구지점 : 053-260-4100 |
| ○ 수원지점 : 031-259-6600 | ○ 광주지점 : 062-232-6944 |
| ○ 울산지점 : 052-274-5276 | ○ 인천지점 : 032-235-6114 |
| ○ 청주지점 : 043-237-0475 | ○ 전주지점 : 063-271-6134~8 |
|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

6-14 이행성보증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증 종류

- 입찰보증 : 국제입찰에 참여한 수출자가 입찰서상 규정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발주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보증
- 선수금환급보증 : 수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지급된 선수금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
- 계약이행보증 :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성능, 납기 등)대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발주자 또는 수입자 앞 보상
- 하자보수보증 : 수출이행 이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
- 유보금보증 :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유보해놓은 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유보금에 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 기타이행성보증 : 자재선수금환급보증 및 세금유보금환급보증 등 관련 계약서에 따라 규정한 다양한 손해를 보상
 - * 공동보증제도 : 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분담하여 신용도는 취약하나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이행성보증을 공동으로 제공
(문의 : 해외인프라수주·투자지원센터 02-6255-5947)

보증금액(기간)

보증금액(기간) 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
(기간) 범위 내

신청·접수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5-5322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 해외인프라수주·투자지원센터 : 02-6255-5947 (공동보충제도)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8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6-15 무역금융(수출관련)

수출거래를 이행한 후에(선적후) 바로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등 다양한 금융상품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수출환어음매입 :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과거 수출입실적 및 예상금액, 신용도, 담보제공 능력 등 감안)
- 수출팩토링 :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이 있는 등 동일 해외수입자와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기업
- 포페이팅 : 1년 이상의 동종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 보유기업 또는 동일 수입자와의 과거 1회 이상 거래경험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대상거래

- 수출환어음매입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방식(D/A, O/A)에 의한 수출거래
- 수출팩토링 : 장기공급계약 및 개별 Purchase Order를 기반으로 하는 사후 송금방식(Open Account방식) 외상수출거래
- 포페이팅 : 당행 기준 일정 등급 이상 소재국가의 국외은행이 개설 또는 확인한 취소불능 신용장 방식 또는 국외은행의 지급보증이 수반된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

대출금액

- 수출환어음매입 : 건당 미화 5만불 이상
- 포페이팅 : 건당 미화 1만불 ~ 5천만불

대출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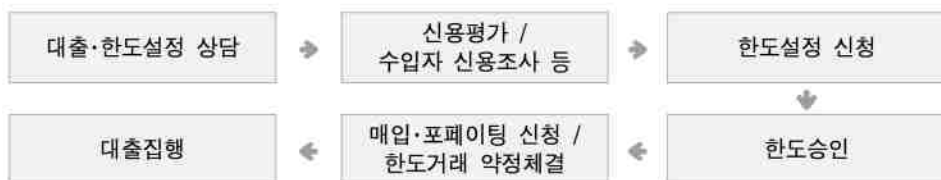
- 수출환어음매입 : 30일이상 2년미만(중소·중견기업인 경우 또는 O/A 방식에 따른 수출채권 매입의 경우에는 30일 이하도 가능)
- 수출팩토링 : 거래방식, 수입자 신용도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이내
- 포페이팅 : 30일이상 2년미만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무역금융실),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수출환어음매입/수출팩토링한도설정/포페이팅 신청서, 외국환 거래약정서, 수출실적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 명판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

처리 절차**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실 : 02-3779-6480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8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6-16 해외온렌딩

중소기업(건설·플랜트 및 해양기자재 중견기업 포함)의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중개금융기관의 지점망을 통해 공급하는 간접 대출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중소기업(건설·플랜트 및 해양기자재 중견기업 포함)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현지법인*
- *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의 경우만 가능
- '17.11월 현재 해외온렌딩 약정 체결 중개금융기관 :
 -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신한베트남은행, 신한인도네시아은행, 하나중국은행

지원 내용

대상거래

- 수출촉진자금 :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 개발,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및 수출기업 인수 등을 지원
- 수입자금 :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지원
- 해외투자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90% 이내(단, 수출촉진자금의 경우 대상기업별 대출한도 기준에 의해 별도산정)

대출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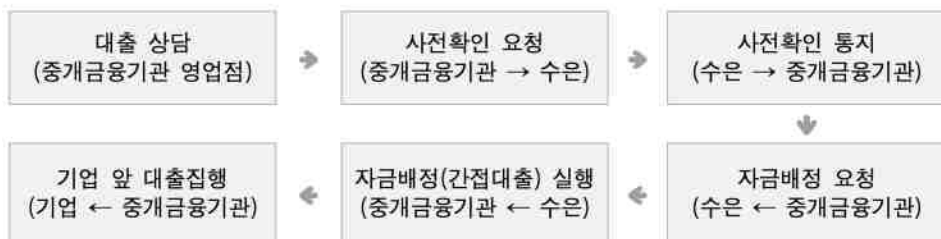
- 수출촉진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시설투자, 수출기업 인수, 제작자금, 기술개발) 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그 외 거래)
- 수입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 거래) 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그 외 거래)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운영자금) 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그 외 거래)

신청·접수

해외 온렌딩 약정 체결 중개금융기관의 가까운 지점 문의

제출 서류

중개금융기관의 제출 필요 서류와는 별개로 해외온렌딩 대상 기업 적격검토 서류(수출입 실적 확인서, 3개년간 재무제표 등)

처리 절차**문의처**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실 : 02-3779-6355

[참 고]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국내지점 현황

〈본 점〉

대표전화 : 02)3779-6114, 02)784-1030

부 서 명	업 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중소중견 금융1부	상생금융프로그램, 히든챔피언 사업, 수출초보기업 및 취약산업 지원 E-mail: smesupport@koreaexim.go.kr	(02)6255-5322	(02)3779-6725
중소중견 금융2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해외사업, 수입관련 대출 및 보증(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제외) E-mail: smallbiz@koreaexim.go.kr	(02)3779-6304	(02)3779-6744
서비스 산업금융부	서비스산업(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보건의료)에 대한 금융지원 E-mail: newgrowth@koreaexim.go.kr	(02)6255-5270	(02)3779-6779
전대금융실	국외전대은행에 대한 간접방식 대출 및 전대은행 관련 외국환 업무 E-mail: iec@koreaexim.go.kr	(02)3779-6369	(02)3779-6746
무역금융실	무역어음제할인 및 외국환업무(수출환어음매입, 포페이팅, 팩토링), 해외온렌딩 E-mail: strade@koreaexim.go.kr	(02)3779-6480	(02)3779-6764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관련 정보제공 및 금융 컨설팅 E-mail: kocc@koccenter.or.kr	(02)6255-5947	(02)3779-6770



> (150-9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빌딩
/ TEL: (02)3779-6114 / FAX: (02)784-1030

〈국내지점〉

지 점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도권	인 지 천 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 한국씨티은행 인천본부빌딩 15층 E-mail: incheon@koreaexim.go.kr	032)235-6114	032)442-6110
	수 지 원 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층 E-mail: suwon@koreaexim.go.kr	031)259-6600	031)259-6609
중부권	대 지 전 점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16층 E-mail: daejeon@koreaexim.go.kr	042)489-9715	042)489-9716
	청 지 주 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E-mail: cheongju@koreaexim.go.kr	043)237-0475	043)237-0476
영남권	부 지 산 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0층 E-mail: pusan@koreaexim.go.kr	051)817-5050	051)817-6060
	대 지 구 점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1층 E-mail: daegu@koreaexim.go.kr	053)260-4100	053)754-1020
	창 지 원 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층 E-mail: changwon@koreaexim.go.kr	055)287-6830	055)287-6831
	울 지 산 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유안타증권빌딩 4층 E-mail: ulsan@koreaexim.go.kr	052)274-5276	052)274-5278
호남권	광 지 주 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스탠다드차타드은행빌딩 7층 E-mail: gwangju@koreaexim.go.kr	062)232-6944	062)232-6946
	전 지 주 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대한교원공제회관빌딩 10층 E-mail: jeonju@koreaexim.go.kr	063)271-6134 ~8	063)271-6139
출장소	구 미 출장소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E-mail: gumi@koreaexim.go.kr	054)462-7103	054)462-7105
	여 수 출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55 여수상공회의소빌딩 4층 E-mail: yeosu@koreaexim.go.kr	061)643-7714	061)643-7716
	원 주 출장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0 금정타워 5층 E-mail: wonju@koreaexim.go.kr	033)748-0536	033)748-0538



제 7 부

한국무역보험공사

7-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258
7-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260
7-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262
7-4 단기수출보험	263
7-5 중소중견Plus+보험	267
7-6 환변동보험	268
7-7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271
7-8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273

7-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I 수입자 신용조사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수입자 신용정보를 근거로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지원 대상

- 국외기업(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전 세계 80여개의 신용조사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5만 건 이상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
-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은 공사가 제공하는 신용조사보고서를 통해 국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을 확인

유의사항

- 공사 홈페이지 방문 및 사이버영업점 회원가입 후 이용

<수수료 청구시기 및 방식>

수납방식	청구시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납부기한
후불제	당월 중 조사 완료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익월 1일자 일괄청구	수수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 함께 발급(1장/월)	세금계산서 발행 월 27일까지

- *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는 매월 초 마스터 사용자 이메일로 발송 ('10년 1월부터 시행), 사이버 영업점에서도 직접 조회·출력하여 사용 가능
- * 신용조사완료일의 익월(세금계산서 발행 월) 27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신용조사서비스 이용불가
- * 조사보고서 종류(요약, Full Report 등)에 따라 신용조사 수수료가 달라짐

<신용조사 수수료 : 중소기업>

보고서종류	가격(VAT 포함)		
	일반조사	재무제표미비	신용조사불가자 or 장기 소요(40일초과)
요약보고서	33,000원	22,000원	면제
Full Report	49,500원	33,000원	면제

- * 현지사정에 따라 재무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고서 내에 재무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는 건당 평균 7~8만원의 비용이 소요(공사부담)되는 바, 보고서의 내용이 미흡(재무자료 미비)한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 부과

신청·접수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공사 승인 후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사이버영업점 가입

- ▷ www.ksure.or.kr 접속
- ▷ 우측의 사이버영업점 메뉴 접속
- ▷ 회원사가입→사업자등록증 송부→ [승인]→회원가입

로그인

-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

신청 절차

신용조사 신청 → 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조회 → 수수료 납부의 순서로 이용

신용조사 신청

- ▷ '국외기업 신용조사-신용-신용조사 신청' 메뉴 선택
- ▷ 공사 DB검색(최근 6개월 이내 조사된 자료 있을시 시간절약)
- ▷ 조사방법 선택(구매/신규신청)
- ▷ 수입자 기본정보 입력 → 신청완료

**공사에 의한 신용조사
및 평가**

- ▷ 보고서 접수(평균 조사기간 2~4주 소요)
- ▷ 접수된 보고서 검토 후 등급평가

보고서 조회

- ▷ 사이버영업점 접속(or 신청자 E-mail로 발송)
- ▷ '국외기업 신용조사-신청-신용조사 내역 및 보고서 조회' 메뉴에서 보고서 조회

수수료 납부

- ▷ 가상계좌(신용조사 수수료 계좌)로 수수료 납부
- ▷ 공사 담당자 확인 후 수수료수납

문 의 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자금 대출시 공사가 연대보증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수출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 분야

-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 신용장(Local L/C)개설
- 중진공 수출지원자금/ 무역협회 무역기금
-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및 수출이행자금 대출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개설 포함)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 대출

지원 내용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 수출기업이 자체담보 제공 없이 수출이행 자금대출 가능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보증 방법

- 회전보증 : 근보증, Revolving방식
- 개별보증 : 개별 신용장기준 수시보증

신청 서류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보증 절차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 한도심사 → 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부 대출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수출물품 선적후, 수출채권 매입시 공사가 연대보증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 분야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L/C, D/A, D/P, T/T 등)

지원 내용 수출기업이 선적후 금융기관에 선적서류 등을 NEGO(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 서류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 증명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한도 책정 →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대출통지(기업⇒공사) → 보증료 및 보험료 납부(기업⇒공사) → 신용보증부 대출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4

단기수출보험

|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지원 대상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금미회수위험 담보
- 단기수출보험은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대량의 수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에 있어서 대금미회수위험에 대한 관리장치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지원 분야

- 신용위험 : 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 비상위험 : 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지원 내용

가입대상 거래

구 분	내 용
일반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위탁가공무역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거래

구 분	내 용
중계무역	•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방식
재 판 매	•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운영방식

- 개별보험 : 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식
- 포괄보험 : 사전에 보험계약자(수출기업)와 보험자(무역보험공사)가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
-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장단점

구 분	개 별 보 험	포 괄 보 험
장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만 선택적 보험부보 신청 가능	•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부보 용이
	공 사 • 고위험거래에 대한 인수거절 가능	• 위험분산 용이
단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 부보 곤란	• 저위험거래·부보 의무
	공 사 • 위험분산 곤란	• 고위험거래 인수 의무

○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

구 분	개 별 보 험
인수한도	- 특정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최대보험계약 체결 가능한도) ☞ 다만, 예외적으로 수출입자간 수출계약 건별로 보험계약 체결 가능
보상한도	- 포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최대 누적액 ☞ 개별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부보가 불가능하나, 포괄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보험관계는 성립되나 사고발생시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

○ 보험 조건

구 분	내 용
보험가액	수출대금
부 보 율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 중계무역 : 95% 이내 -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보험가액×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부보율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따라 결정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보험으로서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계약 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음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 서류

수출자 평가

-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서,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최근3년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사이버수출보험 미가입 업체의 경우, 마스터 대표사용자 지정(변경)신청서

수입자 신용평가

- 온라인 신청이므로, 서류제출 필요없음 (사이버영업점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용조사신청에서 수입자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기재)
- 요약보고서 선택시 수수료 33,000원(부가세 포함)

단기수출보험 청약서

- 사이버수출보험에서 온라인 청약
- 필요시 거래정위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등 첨부 가능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5

중소중견Plus+보험

I 중소기업 전용상품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합니다.

지원 내용

- 해외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지급시 수출 중소기업에게 해당 손실 보상
- 200만원 상당의 보험료로 1년간 최대 20개 수입자와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최대 중소·중견기업 50만불까지 손실 보상(개별 수입자당 최대 U\$30만 이내 보상)

담보내용 및 책임한도

담보위험	기본(필수가입)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수입자 미결제위험[신용위험]
	선택	수입국 위험 [비상위험], 클레임 위험[중소기업 限]
책임한도	기본(필수가입)	최대 U\$50만 [개별 수입자당 최대 U\$30만 이내 보상]
	선택	최대 1백만불
수 출 자	최근1년간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중소·중견기업	
수 입 자	공사 신용등급 R급 및 고위험·인수제한 국가 소재 수입자 제외 [최대 20개사]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처리 절차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 거래수입자 등록 → 책임금액 선택 보험료 납부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6

환변동보험

| 환위험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수출, 수입 및 해외투자에 따른 외화획득 또는 대금지급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을 커버하는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수출기업, 수입기업, 해외투자기업중 신용상 문제가 없는
중소중견기업

* 수입의 경우 수출용원자재 등 수입보험 지원대상 물품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 내용

-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통화 : USD, JPY, EUR, CNY)
- 시중은행을 통한 환위험 헤지가 어려운 중소수출입기업이 손쉽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축소
- 환변동보험은 기본적으로 환율하락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금을 환수 (수출형 기준)

<환변동보험 상품 안내>

구 분	내 용	특 징
일반선물환 (Forward) (수출형 기준)	환율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상승시 이익금 납부	환율하락시 보장 탁월하나, 환율상승시 이익금 부담이 큼

신청 서류

- 인수한도 책정신청서(www.k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및 해지수요 조사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www.ksure.or.kr, 재무제표 제출센터에서 파일 업로드 가능)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최근 1년간 수출입실적 증명서(무역협회 또는 은행 확인)
 - * 대표이사 공사 내방하여 약정 체결(약정서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중)
- 외환파생상품 거래내역확인서(은행연합회 또는 은행 발급) 등

처리 절차



신청·접수

사이버영업점 홈페이지(cyber.ksure.or.kr)에서 청약 및 결제신청

* 필요시 공사양식(공사홈페이지 <http://www.ksure.or.kr>에서 다운로드)이용, 팩스 신청 가능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주세요!



Q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수출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최대 100%범위내에서 수출기업의 신용등급, 실수요 헷지금액 등을 감안하여 책정됩니다.

Q 보장되는 환율과 정산의 기준이 되는 결제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A (보장환율) = 청약일의 시장평균환율 + 결제일의 월말기준 SWAP POINT
(결제환율)

- ① 결제일 월말지정 = 결제일자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 ② 결제일 월중지정 = 결제일 전영업일 시장평균환율 + 해당월 최종영업일
까지의 SWAP POINT
- ③ 조기결제 신청시 = 조기결제신청일 시장평균환율 + 만기일이 속한 월의
최종영업일까지 SWAP POINT

→ 용어설명

환헷지 : 환율변동에 따른 환손실을 없애기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환율을 확정하여 수출이나, 수입, 투자에 따른 거래금액을 사전에 고정시키는 것

7-7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 수입거래 지원

장기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을 요하는 원유, 원목, 광물, LNG 등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거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분야

- 수입자용 : 국내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 금융기관용 :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지원품목

-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의 주요자원
- 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첨단제품 (산업통상자원부 발급 '첨단제품 확인서' 필요)
- 관세법에서 정한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물품 등 관세감면대상물품
 - * 품목 해당 여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무역지원사업 → 수입보험지원물품조회

보상 한도

- 수입자용 : 선급금 비율은 수입계약금액의 30% 이내로 하며, 부보율 100%(중견기업은 97.5%, 대기업은 95%)
- 금융기관용 : 대출원금(지급보증) + 약정이자

지원 대상

- 수입자용: 선급금 지급후 2년 이내 선적되어야 하는 지원대상물품의 수입 거래(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보험계약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해외 수입계약상대방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 금융기관용 :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

준비 서류 수입보험청약서, 상사현황표, 수입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무역지원사업 → 신청서류 → 보험·보증 청약관련 → 기타보험 : 수입보험

처리 절차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8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 해외 미수채권 회수

무역보험을 이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를 도모하고자 해외채권추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채권회수 대행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내용

국내기업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미회수된 해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사 해외사무소, 현지 채권추심기관 등과 연계 채권회수 대행

유의사항

- 채권추심 의뢰시 채무자 앞 채권추심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 구비시 의뢰가 가능하며 성공수수료수준은 해당 채권소재지에 따라 상이하나 약 25% (공사수수료 4% 별도) 내외 수준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채권추심위임장(공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계약서, 선적서류 등 채권증빙서류 및 참고자료(공사 홈페이지-신청서류-채권추심 참고)

채권추심 절차

채권추심 신청 → 수입가능성 확인 → 위임 승낙 통지 → 채권 추심방향 결정 → 추심활동 착수 → 채권추심(현지회수) → 회수금 송금, 수수료 정산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발행일 : 2018년 1월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정책분석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 화 : (042)481-1669, 6859

팩 스 : (042)481-6860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